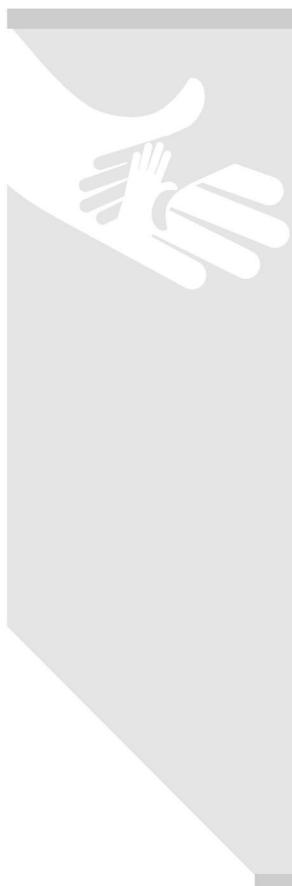


# 201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b>서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5. 4. 8(수) 14:00~17:00</li> <li>◆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31층)</li> <li>◆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li> </ul>
<b>부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5. 4. 7(화) 14:00 ~ 16:00</li> <li>◆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2층)</li> <li>◆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li> <li>◆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사)열린네트워크</li> </ul>
<b>대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5. 4. 10(금) 14:00~16:00</li> <li>◆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의실(3층)</li> <li>◆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li> <li>◆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직능단체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li> </ul>
<b>광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5. 4. 14(화) 14:00~16:30</li> <li>◆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5층)</li> <li>◆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li> <li>◆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li> </ul>
<b>대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5. 4. 10(금) 14:00 ~ 17:00</li> <li>◆ 장 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2층)</li> <li>◆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li> </ul>
<b>경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5. 4. 14. 화. 14:00~16:00</li> <li>◆ 장 소 : 성남시한마음복지관 2층 한마음홀</li> <li>◆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li> </ul>
<b>제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5. 4. 24(금) 17:00~19:00</li> <li>◆ 장 소 : 제주벤처마루 앞 광장</li> <li>◆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li> </ul>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매우 의미 있는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입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오랜 요구와 많은 이들의 지지 속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4월 11일 시행 이후에는 장애인 단체와 정부에서 법률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인식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져 왔던 장애인 차별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법령과 제도상의 여러 한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만으로 보험가입이나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고, 교육과 고용현장에서는 선입견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환경 변화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기념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 상황을 조망하고, 그동안의 장애차별시정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앞으로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보완점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한 단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외중에도 토론회에 가까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경숙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과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관계자, 그리고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뛰고 몸으로 부대끼며 만들어 낸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남 다른 의미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온 법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장애인의 문제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의 문제’로서,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위원회 진정접수 건수만 보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었던 사건 수가 이 법의 시행 이후에는 86건으로 아홉배 가량 폭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심각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법과 제도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짓고 싶어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히는 일들을 요즘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장애인 인권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부터는 단계적 적용이 전면 적용으로 확대되어 완성된 법률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발달 장애인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최근에는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좀 더 세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7주년 기념 토론회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장애인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여기에 함께 계신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 경 숙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장옥주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7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7년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크게 해소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부는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60%가 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게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음식점, 버스터미널, 시중 은행 등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도 장애인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단순히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으며, 법 시행 이후 작년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정을 하였고, 2014년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해소를 위해 교육기관, 국립도서관 등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삽입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과 합동으로 장애인 인권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지금은 그것을 법제화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올해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장애인 차별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이 최종 확대되는 4월 11일 이후 장애인 분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의식이 한 단계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8일

보건복지부 차관 **장옥주**



2015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새로 태어나는 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느덧 시행 7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장애인당사자들이 모여 차별의 이야기를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눈물지으며 쏟아낼 때에도, 이렇게 잡담같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법이 되어 우리의 삶에 깊이 함께 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차별은 늘 우리곁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하루와 같은 것이었기에, 법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줄 수 있을지 그저 모두들 조금의 기대만을 담은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었던 7년 전이나 지금 바로 오늘도 장애인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회곳곳에서 차별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시행 이후 한해 한해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억울함으로 맞서던 차별과의 싸움에 언제부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그 지원군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새로 태어나는 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범위를 넓히며 적용되어 오던 단계적 적용이 7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며, 올해 4월 전면 적용의 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작을 알리고 사회곳곳에 법의 쓰임과 적용을 고민해오던 과정들이었다면, 이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사회전반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더욱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의 7년보다 앞으로의 7년에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에 대응하는 근거로 법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차별에 대해 좀 더 실효성있는 조치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정당시 법안에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하여 반드시 담아내야 할 이야기들은 이제는 하나씩 담아가면서 진정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차별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 **박명애**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 주년 기념 토론회

# 목차

## 서울

장애인 당사자 체험사례 발표 요지 ..... 05

[세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 ..... 07

### 【발 제】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권리옹호의 길 ..... 09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토 론】

발달장애인의 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과 적용방향에 갖는 함의... 23  
김치훈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 29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지역기반의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의 운영 및 역할 ..... 39  
김예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상임변호사

## [세션 2] 장애인 정보접근권

-ICT 환경변화와 장차법 개정을 중심으로- ..... 49

### 【발 제】

장애인 정보접근권 : ICT 환경변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51  
노석준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토 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관련제언 ..... 66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실장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 ..... 70  
김정호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마케팅사업부 이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 ..... 73  
류영일 (주)헤더스 대표

## 부산

### [기조발제]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85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1]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인권증진 방안 .....	97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토 론】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	107
김철휘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사례로 살펴본 부산지역 장애인이동권 .....	113
윤정희 前 한국장애인의상연구소 디자인실장, 장애인 활동가	

### [발제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과제 .....	121
김두레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 【토 론】

장애인의 자립생활, 선택권은 당사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	135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탈시설을 중심으로 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	143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대구

### [발제1]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	151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 .....	231
박주국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토 론】**

**대구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토론** ..... 247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대구시 장애인인권기본계획 및 대구시장애인복지에 대한 토론** ..... 254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기반의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및 역할** ..... 257  
 김예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상임변호사

**광 주**

**[발제1]**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원칙 및 기준** ..... 271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제2]**

**광주지역 장애인 고용 및 고용지원 현황** ..... 283  
 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토 론】**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의 현황과 과제** ..... 306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계로서의 장애인고용** ..... 313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꿈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꾸는 것이다(직업유지 관점에서)** ..... 318  
 황현철 광주장애인인권센터장

**장애인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 ..... 326  
 정현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대전

### [기조발제]

-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 등'에 대한 시대의 요구 ..... 337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장

### [제1주제]

-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343  
나운환 대구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차별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349  
최윤영 백석대학교 교수

- 장차법시행 7주년 기념 대전지역 토론회 주요내용(요약) ..... 355

## 경기

### [장애당사자 체험사례 발표]

-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편해지면 달라져요 : 시내 이동을 중심으로 ..... 365  
김유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 여행을 떠나다 : 시외 이동을 중심으로 ..... 368  
김영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 [발제]

- 장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 및 개선방안 ..... 373  
이도건 집행위원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 론]

- 장애인 이동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391  
배용호 사무총장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경기도 교통약자 주요정책 ..... 395  
이동욱 주무관 (경기도 교통정책과)

-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397  
이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에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적 이행을 위한 과제 ..... 404  
박윤근 팀장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 제주

### “지역에 말하다” 장애인 당사자 자유발언대

#### 【자유발언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나의 작은 바람(임혜성)	413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 이동권은 기본입니다(이승훈)	415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 자립생활 환경을 구축하라(김명선)	417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 :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김태우)	420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바라며(홍길훈)	422
<b>중증장애인 5대 요구안</b>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427

## 부록 I

장애차별 진정사건 관련 통계자료	439
-------------------	-----

## 부록 II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개최(안)	48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0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
국가정보화 기본법	5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540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서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

## 행사개요

일시 : 2015. 4. 8(수) 14:00~17:00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31층)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세부일정

구분	시 간	(분)	내 용
오프닝	14:00 ~ 14:25	(25)	[문화공연] ① 노들음악대 (노들장애인야학) ② 일곱빛깔 무지개 합창단 (장애여성공감)
인사 말씀	14:25 ~ 14:40	(15)	[기념사] 국가인권위원회 이경숙 상임위원 [축 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종균 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명애 공동대표
사례 발표	14:40 ~ 15:00	(20)	[장애당사자 체험사례 발표] ① 장차법 시행 이후 아직도 경험하는 차별의 현주소 ② ICT분야에서 경험한 정보접근 차별
세션 I	15:00 ~ 16:00	(60)	[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 [좌장] 김성준 국 장(국가인권위 조사국) [발제]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김예원 변호사(서울시 장애인권리옹호시스템) 강인철 과 장(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휴 식		(10)	[음악연주] 색소폰 솔로
세션 II	16:10 ~ 17:00	(50)	[주제] 장애인 정보접근권 - ICT 환경변화와 장차법 개정을 중심으로 - [좌장] 이석준 과 장(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발제] 노석준 교 수(성신여대) [토론] 김철환 실 장(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정호 이 사([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류영일 대 표([주]헤더스)
폐 회	17:10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 당사자 체험사례 발표요지]

(사례1) 장차법 시행 이후 아직도 경험하는 차별의 현주소

- 지적장애인 피의자의 의사소통조력 지원 -

(사례2) ICT분야에서 경험한 정보접근 차별

- 모바일 이용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



# 장애인 당사자 체험사례 발표 요지

## (사례1) 장차법 시행 이후 아직도 경험하는 차별의 현주소 지적장애인 피의자의 의사소통조력 지원

사례자 : 이상수

이상수 씨는 지적장애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집회 깃발을 들고 있다가 깃발을 뺏으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이후 집회 주관단체에서 경찰서로 이상수 씨를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지적장애인 입을 밝혔음에도 의사소통조력을 위한 보조인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가 의사소통조력 지원을 요청 받고, 이튿날 의사소통조력인이 배치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재판과정에서는 경찰이 미리 의사소통조력인의 배치를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조력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가 선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진행된 검찰조사와 재판과정 모두에 의사소통조력인과 자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하였다.

**【의의】** 이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일 경우에도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또한 장애인당사자가 최대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사례2) ICT분야에서 경험한 정보접근 차별 모바일 이용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사례자 : 김준형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회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외국에 비해 국내 제품은 장애인용, 노인용 등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저사향의 제품을 따로 차별하여 만들어 상대적으로 특정집단의 제품만족도가 낮아 결과적으로 외국 제품을 선호한다.

그러나 에이에스(A/S)나 사용의 친숙도를 고려했을 때 국내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매우 많이 있다. 하지만 국내 제품은 외국 제품에 비해 기기 자체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외국 제품이 국내 제품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고 해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해마다 거듭되는 업데이트로 이 접근성은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문제는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이다. 어플이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이전에는 접근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접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플 이용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

**【의의】** 모바일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 세밀하게 차별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에스엔에스(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직접적인 간담회 등 당사자 의견수렴의 자리를 만들어서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세션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



【발 제】

##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권리옹호의 길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권리옹호 방안 및 관련법제정 속에서의 역할모색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1. 들어가는 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처음 태동을 시작해 세상 빛을 본 이후 벌써 일곱 해가 되었다.

‘모든 생활역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목적)’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얼마만큼 장애인의 삶속에서 그 의미를 담아내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삶에서 시작되어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당시 어디서부터 차별을 이야기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우리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근거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작업을 통해 찾아내기로 하였다. 차별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이론과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업을 통해 살아움직이는 법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그렇게 법에 담아내기 위해 시작된 장애인당사자들의 스토리텔링은 우리에게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차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었고, 그렇게 장애인의 사는 이야기는 50조항의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에 차별에 대한 화두를 던진지 7년이 되었다. 그시간동안 장애인당사자는 자신의 삶을 차별이라는 잣대를 통해 돌아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내어 한가지씩 해결해나가기 위해 애써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별의 이야기도 그 대응에 대한 방법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조금씩 다양화되고 그 범위도 넓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7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동안 장애인당사자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내고 적용해온 많은 권리옹호를 위한 대안들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짚어보고자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옹호 대응방안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2. 장애인차별, 권리옹호의 첫걸음 장애인차별상담

-2014년 상담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의 사는 이야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기관인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는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이 되던 해에, 장애인당사자가 실제로 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담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지역별로 상담활동을 함께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모집하여 15771330이라는 번호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차별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고, 현재 전국 50여개 상담소를 라우팅서비스(유선전화외에 핸드폰 발신자도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소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연결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통해 진행된 상담은 단순정보제공 및 1회성 상담을 제외하고 약 120여건(서울중앙상담소 기준, 지역별상담제외) 정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접수된 상담은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진행되며,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부터 소송까지 다양한 수위의 방법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아간다.

상담소를 찾은 장애인당사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상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에는 정신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상담이 골고루 증가하면서 기존의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 중심의 상담에서 각 장애유형별로 고른 상담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에 상담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던 장애유형에서도 적극적인 차별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당사자가 접한 차별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 ▲괴롭힘 ▲사법행정절차 ▲교육, 고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화용역 서비스에서 장애를 이유로 각종 금융기관이용부터 놀이공원이용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우리사회가 장애를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에서부터 비장애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모욕, 비하발언 등 괴롭힘에 대한 상담 역시 해마다 늘고있어 아직도 많은 경우에 장애인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법행정절차 분야에 대한 상담이 2013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인당사자가 사법행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고 인권침해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절차에 놓일 경우 의사소통조력을 위한 보조인 등을 요청하거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상담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많은 사례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현재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절차 종사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매우 긍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려오고 상담을 요청하신 경우가 6건이나 접수되었다.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상담은 우연한 경우에 인권침해 상황이 인지되거나 내부공익제보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설안에서의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상황에 대한 인지와 판단이 가능한 생활시설 거주인들이 우리와 같은 상담소로 직접 연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례를 접수해도 이후 대응과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상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차별에 대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옹호 방법은 우리와 같은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 또는 각 지자체의 위탁으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5771330 상담전화도 전국에 5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장애인당사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할지 알지못해 차별상황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의 상담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 3. 장애인차별,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대응방법별 사례분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에 대한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차별의 내용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상담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외에도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와 행정심판 청구 등의 방법은 주로 행정청이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차별을 가한 경우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좀더 적극적인 권리옹호 방안으로 경찰고소고발진정,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형사사법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명백한 증거와 자료수집이 병행되어야 하며, 소송의 경우 비용발생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행정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점점 다양하고 세밀화

되어 가는 사례의 성격에 따라 권리옹호에 대한 방법 또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장 일반적인 권리옹호 방법으로 법리적 판단보다는 차별이라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타 형사사법절차나 행정청의 판단에 비해 매우 폭넓게 차별의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 : 시각장애인 용인의 00랜드 놀이기구 탑승거부 (시각장애1급)

상담내용 :

용인의 00랜드의 연간회원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여 후룸라이드라는 놀이기구를 탑승하려고 하자 직원을 탑승을 막아서 가족들만 탑승하고 혼자 남아서 가족을 기다리는 상황 발생.

상담대응 :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관이 배정되자 상담전화로 상담을 요청 인권위의 조사상황에 대해서 상담소 차원에서 개입해주시기를 요청.

### 행정청에 문제제기

다른 권리옹호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빠르게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청과의 논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큰 이견이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장 효율적인 권리옹호 방안이다. 다만, 개인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담소나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례1: 무단결석 처리 및 변경요청 거부(아스퍼거증후군)

상담내용 :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장애당사자는 성적은 우수, 장애특성상 대인관계의 어려움. 중학교1학년때 학교폭력 피해자로 결석 등에 대한 배려 필요, 외고입학을 준비하던 중 1학년 당시 무단결석(부정적의미의 지각처리)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 관련하여 감점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

상담대응 :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무단결석에 대한 변경을 요청

사례2. : 공공체육시설 지체장애인 이용 거부

상담내용 :

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신청하였다가 보조인없이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하여 상담의뢰

상담대응 :

시청과 관리감독기관 등을 상대로 공문과 면담을 요청  
 내담자와 함께 면담을 통해 법적근거 제시 및 대응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고용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비용부담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지나치게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관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매우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례1. : 청각장애를 이유로 부당해고(청각6급)

상담내용 :

000생활협동조합 지역매장활동가로 입사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매장 입사 당시 청각장애를 밝히지 않고 이후에 장애인임을 밝혔으며,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함.

상담대응 :

당사자가 해고통보당시 녹음자료 갖고 있었으며, 녹취록에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인권위에 우선 진정, 처리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권유. 이후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

사례2. : 지적장애인 부당해고(지적2급)

상담내용 :

표준사업장 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의 비장애인과 함께 지적장애인이 징계해고 됨

상담대응 :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결정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에 대해서 논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징계해고했다는 사회적 지탄을 의식하여 바로 합의를 요청하고 해고이후부터의 임금과 약간의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함. 당사자가 사업장에 복직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합의로 마무리함.

### 형사사법절차지원, 민사소송진행

형사사법절차의 경우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권리옹호방법 중 가장 어려운 절차로 보여진다. 하지만, 사건이 성립된다면 어떤 권리옹호 방법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례자들이 고소고발로 사례를 해결해나가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아래 사례의 경우 경찰의 초기조사부터 이후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소를 지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가 경찰조사에서부터 전과정에 개입하여 사례진행을 돕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년째 진행중이다.

사례1. :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품 갈취사건

상담내용 :

이웃주민으로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월급, 수급비 등 각종 수당을 갈취당하고 있던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낸 이후 바로 상담소로 사건의뢰.

상담대응 :

형사조사 과정에서부터 상담소가 개입 이후 검찰조사와 형사재판 등을 모두 지원,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공판검사가 건에 대한 죄질이 나쁨을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높은 형량이 판단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재단법인 동천에서 민사소송진행

주요대응활동 :

-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조력
- 경찰조사 단계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검찰조사 단계 상담소 의견서 제출
- 검찰 대질신문 의사소통조력인으로 참여
- 재판단계 공판검사에게 의견서, 당사자탄원서 제출
- 민사소송 지원

사례대응의 의의 :

- 재단법인 동천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의 지원으로 변호사가 모든 상황을 지원, 이후 민사소송까지 무료수임진행.
-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의 개입으로 피해자에게 강력한 처벌가능(징역 1년 2개월)

기자회견, 행정청에 문제제기

사례의 성격상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사례가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사회적으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기자회견이나 일인시위, 집회 등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사례 : 장애학생 수학여행에서 부상, 교사의 방임방치

상담내용 :

특수학교 수학여행에 참여했던 학생이 밤새 손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교사없이 학생들끼리만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되어 부모가 상담의뢰

상담대응 :

학교와 교육청의 사실조사나 대책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비하여 내담자의 요청으로 기자회견과 교육청면담진행

## 4. 장애인차별, 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옹호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권리옹호 관련법 제정 현황-

차별이라는 거대한 명제를 법에 담아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법의 제정 자체가 장애인권리옹호에 가장 큰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었다.

나에게 가해진 이 불편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이 과연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알게되었고, 차별을 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대응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권리옹호활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법의 제개정은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체적이며 그 어떤 방법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응방법이다.

하지만,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후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법 제개정 활동은 2012년 장애인복지법 59조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학대행위금지 등의 내용이 간략하게 삽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니사건(광주인화원사건), 신안염전사건, 원주사랑의 집 사건 등 매년 어김 없이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고, 2014년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상담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모든 생활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장애인생활시설안에서의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화두를 법으로 담아낸 대표적인 인권법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권리옹호 활동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갖고 있다.

제정당시 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포함하는 다양한 차별상황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와 같이 차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유형에 대한 규정 또한 세밀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권리옹호활동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좀 더 세밀한 법제정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하나둘 만들어져가고 있다.

2015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지원서비스,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의 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장애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차별사례자가 발달장애인이다. 고용, 교육, 형사사법절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쉽게 피해를 입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구체적인 권리옹호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발달장애인법은 물론 올해 처음 시행되는 법만큼 아직은 구체적이 적용이나 시행의 효과 등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별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는 법의 취지가 앞으로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에 든든한 밑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대한 직접적인 시스템인 P&A(Protection&Advocacy보호와 옹호)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12월 31일 안철수 의원실을 통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옹호 제도인 P&A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내용으로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긴급하게 조치하고 이후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까지를 담아, 지금까지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옹호제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특히, 위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장애차별상담전화 사례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실제 장애인생활 시설에서 상담을 요청해도 폐쇄적인 구조와 외부와의 차단 때문에 직접 장애인당사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과 같은 구조적으로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조사와 접근의 권한으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장애인을 학대한 경우 가해자가 좀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장애인학대방지특례법」 등이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각각의 법들은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상담대응 과정중에도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관련한 부분들이 각각의 법으로 만들어져 세밀하게 규정되고 있다.

우선 장애인차별 상담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을 차지하며 생활전반에 걸쳐서 가장 많은 차별피해자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과 장애인생활시설안에서 발생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해 쉽게 상담을 접수하고도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경우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있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세밀한 법의 제정과 적용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옹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법

그렇다면 이제 시행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후 제정되는 법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하고 적용해나가야 할 것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와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의지에 힘을 주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의 의식자체를 변화시키는 단순히 적용되는 법 이상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옹호 관련 법안들 역시 그 근간에는 이러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힘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판단의 근거와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법적인 실효성을 갖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차별사안과 관련하여 처벌이나 벌칙을 주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법들의 제개정 운동 속에서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지금까지 의미를 실효성있게 담아낼 수 있는 법으로 조금씩 그 모습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관련법들의 제정상황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상충하거나 관련법들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담아내야 한다.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 차별과 인권침해의 근간을 제시하고, 제정되고 있는 관련법들의 시행에 더욱 힘을 줄 수 있는 법으로 조금씩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차별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시대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대와 인권침해 전반을 모두 세밀하게 규정해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에 관련법들에 내용에 주요한 근거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차별은 명백하게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차별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처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실효성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시정명령 등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규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차별에 대한 정의의 폭을 넓히고, 차별규정에 대한 조항은 촘촘하게 제시한다.**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련한 법들은 서로 깊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적용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모든 법들의 가장 중심에 존재하고 있으며, 가장 처음 만들어진 법으로 가장 큰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대한 정의와 차별규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정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단순차별이외에도 인권침해와 학대 등의 내용까지를 모두 포함해낼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하며, 차별에 대한 상황이나 규정은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6. 장애인의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관한 법률이다. 말 그대로 장애인차별을 어디서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렇게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법으로 만들고, 이 법의 차별기준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법을 통해 그러한 차별에 대한 권리옹호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은 법의 명칭에서 이미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다.

7년전 법이 만들어질 때 많은 사회적합의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안에 담고싶은 내용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때 이 법을 살아움직이는 법으로 만들기위해 우리가 담고싶었던 내용들을 계속 담아내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결의하였다.

2015년 4월이면 문화체육시설에서의 단계적 적용을 마지막으로 처음 약속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제 시행7년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질적인 전면 적용이 시작되는 완성된 법의 모습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제정당시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규정과 권리구제에 대한 규정이 제목에서처럼 균형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실효성있게 양쪽이 함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법은 삶의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있지만, 장애인에게 그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일은 때로는 너무 힘이든다. 장애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법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렇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토 론】

## 발달장애인의 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과 적용방향에 갖는 함의

김치훈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의 길을 연 이 기념비적인 법률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차별 없는 평등사회로 진일보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아낄 이유는 없다. 크고 작은 사회적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적어도 차별 경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의 통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이 법률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갖는 실효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한 축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달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보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달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입장을 충실히 고려하여 법률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 법률 제정이 추진되던 시기로 돌아간다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의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 1. 발달장애인 개인의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한계

먼저 발달장애인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이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차별의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의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의 제공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의 제공, 진술조력인과 같은 의사소통 보조인력의 제공 등 의사소통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행사 등 사회참여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내용적으로 보다 섬세하게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진우, 2013).

이 같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구체화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1조 목적조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정확히 부합되며, 인권의 세계사적 흐름에 비추어보면 소위 제2세대 인권이라고 불리는 사회권을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확대시키는 조치가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개인의 차원에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진 한계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법률의 목적이 발달장애인에게 실현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질적인 수단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측면 이외에 발달장애인 개인의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논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학대나 유기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장치로서의 법률 적용이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에서 발제자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에 대한 정의의 폭을 넓혀서 “단순차별 이외에도 인권침해와 학대 등의 내용까지를 포함해낼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권리옹호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유기 등의 인권침해는 근본적으로 「형법」 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용어에 개념적으로 오롯이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던 시기로 돌아가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유기 등의 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죄 발생 시의 대응 및 구제방안

까지 법률에 포함시켰다면 법률의 명칭과 내용 및 성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며, 보다 강력한 법적 제제수단을 가진 법률로 탄생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학대나 유기 등의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차별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지는 주장이 사회적 설득력을 크게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나 ‘장애인학대방지법’ 또는 ‘P&A법’ 등의 입법 추진 흐름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유기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보호체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벗어난 별도의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 2.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한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분리교육의 문제와 직결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를 사유로 분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시키거나 특수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막아내거나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백하게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생활(즉, 탈시설)이나 통합교육의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발달장애인이라 할 때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통합교육 확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엇을 기여했는다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이 줄어들지도 특수학교가 줄어들지도 않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하는 탈시설과 통합교육 담론이 형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는 복지시설 내에서의 장애인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배제나 시설 내에서의 가족 면접권이나 외부와의 소통권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사회적으로 추동해내기 보다는 오히려 집단거주시설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설 내의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이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과 분리교육이라는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대해 별다른 변화의 충격을 주지 못한 채 법 시행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 3.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과 적용방향에 갖는 함의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공포 되어 올해 11월에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의의와 그 함의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장애인법이 갖는 몇 가지 함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논의했던 발달장애인 개인의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진 한계를 발달장애인법이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측면에서 발달장애인법은 제10조(의사소통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정보를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의사소통도구와 의사소통 지침의 개발을 강제함으로써 비록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의사소통지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강제하고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을 지정하여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보호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유기와 학대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에 격리보호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제자가 제안했던 인권침해와 학대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진전시킨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탈시설의 추동이나 분리교육 철폐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하는 법적 규정을 둬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 향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도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은 각각의 권리보호 영역을 점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차별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에 비해 발달장애인법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나 유기 등의 범죄에 대한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보호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의 절차적·형식적 측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별의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권리보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의 관계는 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 쪽 기관에 동일하게 접수된 사안을 놓고 두 기관 간에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올해 11월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의 바람직한 역할 및 관계 설정이 이제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 이외에 또 하나의 변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흔히 P&A 시스템(Protection & Advocacy System)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권리보호 및 옹호체계의 수립이다. 현재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학대방지법’의 두 갈래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 P&A 시스템은 향후에 법률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발달장애인법과는 또 다른 형태의 장애인 권리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 그리고 P&A 시스템에 의한 세 겹의 사회적 권리보호 막이 형성되는 셈이다.

물론 이 세 겹의 권리보호의 막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촘촘하게 서로 보완하며 보호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률 간의 적용범위를 놓고 충돌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능이 축소·약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P&A 시스템의 법제화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의 권리보호체계는 그 역할과 적용범위를 놓고 새로운 논의의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보호체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진우(201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토 론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1. 들어가며 - 첫 적극적 조치 인용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 피해 장애인의 청구를 받아 차별 행위의 중지와 근로조건 개선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참조). 위 조항은 차별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하던 기존 권리구제 방안에 비해서 진행중인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애인 차별 시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2014년, 이 법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이 조항을 인용해 장애인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형주)는 지난해 7월 3일 김아무개(52)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서해대)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4급 이상 직책 후임자의 심사 대상에 김씨를 넣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서해대에서 근무한 지 9년 만인 2010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라는 1급 지체장애를 지니게 됐다. 1년여 동안 휴직한 뒤 일터로 돌아왔지만 학교 측은 ‘건강상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며 대기발령을 냈다. 김씨는 ‘일반 관리직 수행은 가능하며, 보조인력이 있으면 일반 행정직 수행도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향후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이에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학교 쪽이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김씨가 승소해 2012년 12월 복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차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3급 또는 4급 사무직이 임명될 수 있는 학사지원처장 후보에서 배제된 것인데, 당시 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사무직은 4급인 김씨가 유일했다. 학교 쪽은 이사회에 “김씨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교수를 학사지원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청해달라”는 총장 명의로 된 사유서를 냈고, 김씨는 결국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5급 사무직 학사운영과장 아래서 민원 업무를 맡아야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학교가 김씨를 해고한 데 대해 “설령 장애 때문에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쪽이 시설·장비의 설치나 업무 조정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해고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교가 김씨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데 대해서는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격이 부족하다는 학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조직 안에서 상위 직급자를 하위 직급자 아래 두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사지원처장이 되지 못해 김씨가 받지 못한 월급 차액 99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1,990만원을 학교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겨레, 2014. 7. 9.자 「[단독] 장애인차별금지법 6년 만에 재판정서 ‘미소’... “인사 불이익은 위법”」).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법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다른 법령 인용에 따른 문제

###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다른 법령 인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주체와 편의제공의 내용 등을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위임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다시 그 내용을 관련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관련법령의 내용이 부실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 나. 시각장애인 전철선로추락사건의 예

### 사례

1급 시각장애인인 김 아무개 씨는 인천행 열차를 타기 위하여 2012. 9. 14. 07:47경 덕정역 개찰구에 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다음 개찰구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 덕정역의 인천 방면 승강장(이하 ‘이 사건 승강장’)으로 올라갔고, 2) 07:48경 이 사건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윗부분에서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점자블록을 따라 이 사건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8-1 탑승구에 멈춰섰는데, 당시 인천행 열차가 아니라 반대쪽 승강장에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행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여 인천행 전철에 탄다는 생각으로 탑승구에서 선로 쪽 허공으로 발을 내딛으면서 이 사건 승강장 아래에 있는 선로로 추락하였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참조). 위 사례에서 김 씨가 승강장 아래 선로로 추락한 이유는 반대편 승강장에 도착한 열차를 자신이 탑승하려 한 열차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김 씨 뿐만 아니라 누구나 열차의 도착 소음만으로는 어느 선로에 열차가 도착하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김 씨와 같은 시각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어느 선로에 열차가 도착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도착한 열차의 행선지나 출입문 개방 사실을 음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음성 안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보장될 수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은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다시 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는 도시철도차량의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수직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와 함께 역사의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착한 열차의 행선지 음성 안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착 열차의 행선지 음성 안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다. 다른 법령에 대한 검토와 직접 규정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서 김 씨는 덕정역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도착한 열차에 대한 행선지 음성 안내 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나39826 판결 발췌

“덕정역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덕정역의 승강장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선로가 네 개 있는 등 열차의 도착 소음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선로에 열차가 도착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덕정역의 경우 이 사건 승강장과 반대쪽 승강장에 비슷한 시각에 인천행 열차와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덕정역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 열차가 덕정역의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하는 안내방송 외에도 열차가 덕정역의 승강장에 완전히 도착한 다음 도착한 열차의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것에 관하여도 안내방송을 하거나 열차의 운전원이나 덕정역의 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확실기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승강장의 반대쪽 승강장에는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사실에 관하여 안내방송이나 열차의 운전원 등에 의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을 다른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각각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바로 이들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등 대우를 한 경우에도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일률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을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직접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4의 해석 문제

#### 가.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4로 인한 혼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2015. 4. 11.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4 참조).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사업자(의무 주체)의 단계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은 단계적 범위를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기사 - 에이블뉴스, 2011. 11. 26.자 「300석 미만 상영관 편의제공 당장 필요」

한국농아인협회가 한나라당 이정현 국회의원과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시행령에는 2015년부터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에 자막 및 점자안내책자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행령은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스크린 수의 13.3%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시기를 지금 당장으로 앞당기고 '300석 이상 규모'를 '300석 미만 규모'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나. 적용 장소를 제한하는 해석의 문제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4(이하 ‘별표 4’라고 한다)의 내용을 보면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등 장소들이 나열되어 있어 마치 이 장소에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위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에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그 적용을 받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역시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고 하여 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예술이 행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별표 4의 이름도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주체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4조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주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의무주체가 설치·경영하는 장소의 규모에 따라 그 의무주체의 의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혼란은 별표 4에서 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엉뚱하게 박물관, 공연장, 영화상영관과 같은 장소로 표현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별표 4에서 장소로 표현했으므로 그 장소에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4에서 명시적으로 ‘문화·예술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 장소에 대한 사항을 하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적어 포괄위임그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다.

## 다. 별표 4로부터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도출

그렇다면 장소를 표현한 별표 4로부터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도출할지 문제된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이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예로 살펴 보겠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말하고,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을 말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 참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부터 도출되는 문화·예술사업자는 위의 영화상영관이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대부분의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3대 영화상영업자는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대 영화상영업자들은 그들이 설치·경영하는 모든 영화상영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라. 별표 4의 개정 필요

이런 혼란을 야기한 별표 4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개정 방향은 ‘문화·예술사업자’에 걸맞게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과 같이 단일한 장소의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규정 방식은 301석인 영화상영관 하나를 설치·경영하는 사람은 의무를 부담하는데 299석인 영화상영관 여러 곳을 설치·경영하는 사람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시설을 합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울러 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4.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문제

### 가. ○○원에서의 장애인 학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인 ○○원(이하 '○○원'이라 한다) 등에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2013. 10. 1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한다)에 접수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재단 소속시설에서 거주인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13. 11. 12.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원 생활재활교사 ○○○와 ○○○이 거주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중에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중에 장애아동(만 18세 미만)도 있었다. 또 다른 ○○○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는데, ○○○는 주로 빨간색 고무장갑을 낀 채 피해자의 손바닥을 쇠자로 10대~20대 때려 피해자들의 손바닥이 붓고 멍들기도 하였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 손바닥을 때릴 때 쇠자를 든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갈 정도로 강하게 때렸고, 때리고 나서는 상처 난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하였다.

### 나. ○○원 피해 장애인에 대한 2차 피해

2014년 1월 1일 ○○○과 ○○○은 ○○원을 퇴사하였다. ○○원 원장 및 직원들은 2014년 3월 12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인권위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발표 이틀후인 3월 14일, ○○○은 무단으로 ○○원을 방문하여 ○○○ 팀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폭력 피해를 진술한 거주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 팀장은 이를 주선하였다. ○○○은 이 자리에서 거주인들에게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때 확인서를 작성한 거주인은 거주인 ○○○, ○○○, ○○○, ○○○ 등이다.

○○○ 원장은 인권위 발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2014년 3~4월에 걸쳐 퇴사한 ○○○과 ○○○을 ○○월에 각각 두 차례씩 내원시켰다. 거주인 ○○○, ○○○, ○○○은 이들이 퇴사한 이후에 ○○월에 내원한 것을 수차례 목격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옹호관은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원 사건 사후대책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며 관계기관과 관계자에게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피해자의 일부는 여전히 ○○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가해자 측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 ○○○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진술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다. 학대 피해 장애인 분리조치

인권위를 통한 권리구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 수단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인권위 직권조사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원 사건이 하나의 예이다. ○○원 사건은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이용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가장 강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이다.

그러나 ○○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권위의 고발이 정작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반복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 수단이 가지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미흡한 부분이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권위여도 좋고 새로운 권리옹호기관이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나 권리옹호기관의 분리조치는 단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인권위나 권리옹호기관이 법원에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기적인 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심사해 장기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 사건에서 본 것처럼 피해 장애인에 대한 2차 피해와 진술 번복이 반복될 것이다.

## 5. 나가며

2014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조치가 처음으로 인용되는 등 또 하나의 진전이 있는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들이 많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인용하는 다른 법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별표4의 내용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토 론】

## 지역기반의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의 운영 및 역할<sup>1)</sup>

김예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상임변호사

### 1. 들어가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첫걸음을 뚫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 발제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권리옹호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옹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깊이 공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옹호에 대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 주장도 오랜기간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권리옹호활동을 해오던 과정에서 주장이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한다.

서울특별시는 2014.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예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서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수혜자적’관점에서‘당사자주의·권리’관점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주된 목적을 둔 동 기본계획은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지원인프라 강화)로 세분화되었다. 서울센터는 특히 그 첫 번째인‘권익보장’의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사실조사, 권리구제,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센터는 ①‘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사건 전문 상담전화(1644-0420)를

1) 2015. 4. 10.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주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토론회 토론문

운영하여 사건을 접수받고 그 중 장애인 인권침해의심사건 조사, 법률지원, 피해자 사후지원(원스톱서비스 지향), ② 서울특별시 관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피해자대리 및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및 심층조사수행, ③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사후대처방법교육 등 장애인 인권 전문교육 수행, ④ 기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인식개선 캠페인, 지침 또는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선 발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옹호시스템에 대하여 서울센터의 운영 현황을 토대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한다.

## 2. 지역사회의 재가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권리옹호 시스템 필요

장애인권리옹호기구가 장애인 복지시설내 인권침해 문제와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인권침해문제에 모두 기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서울센터도 물론 시설사건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다. 시설사건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전수조사에 대한 심층조사는 물론 인지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사법절차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개입한 조사, 법률지원, 피해자 사후지원(원스톱서비스 지향)에 관하여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의 비율보다는 재가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sup>2)</sup> 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경우는 관련법령상 공적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런 체계가 미흡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매우 적은 일종의 사각지대인 점이 그 이유이다. 즉, 서울센터는 '지역기반의 P&A기관'이 '지역밀착형 인권옹호활동'에 역할에 방점을 두고 있다.

2) 2012 등록장애인은 2,511,159명이고, 그 중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은 25,345명으로 조사되었음(보건복지부, 2012년말 장애인등록현황 및 2012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른 기능의 장애인권리옹호 필요

발제문에서는 장애인 차별사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넘어서는 권리옹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 비해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크게 기여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사기관은 압도적인 계류사건수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을 인지하는 것이 현실상 매우 어렵고, 막상 가해자가 형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장애 관련 인권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다보면 다른 강력사건에 비해 소홀히 취급당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 및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행사로 많은 차별시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계점도 있다. 진정사건의 폭증 등을 이유로 실무상 사적(私的)사건이 진정되면 주로 각하, 기각, 조사중해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사건처리 방식은 장애인 일방을 위한 옹호자의 입장보다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결정문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입장에 가깝고, 설사 간혹 장애인 차별이 맞다는 시정권고결정이 나와도 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의 옹호자로서 기능하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관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sup>3)</sup> 전반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옹호자

3) 물론 경우에 따라서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단순한 법률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건에 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실무상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인데, 결국 센터가 개입하는 사건의 기준은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곳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은 ‘조사행위’ 자체를 당사자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적 진실발견 및 채증의 과정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을 내린 이후 피해자 지원 등 후속지원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권리 옹호 시스템은 가능<sup>4)</sup>하며 이렇게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당사자와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센터도 이러한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이 판단기관이 아닌 ‘옹호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상담전화(1644-0420)·홈페이지·이메일·언론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을 접수받는다. 그 중 장애인 인권침해의심사건에 대하여 조사(1차 상담, 심층상담, 방문대면상담, 현장조사), 법률지원(소송, 자문, 공문에 첨부한 법률의견서 송부 등), 피해자 사후지원(원스톱서비스로서 가해자와 긴급분리, 피해자 쉼터로의 연계, 의료지원,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 복지시스템 매칭 및 연계)등을 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로 수렴되지 않는 장애인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실제 사건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역동성과 헌신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의 기능을 하는 장애인 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다.

#### 4. 상담 및 조사구제를 통한 실질적 권리옹호 실현

발제문에서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이외에도 행정청에 문제제기, 법률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옹호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센터는 ① 상담을 통한 조사 및 구제<sup>5)</sup>, ②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입법운동, 매 뉴얼발간, 제도연구논문게재 등) 및 정책연구(법령 등 모니터링 및 의견개진, 정책입안자들에게

4) 물론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전제로 함.

5) 개소 1년차인 2014년의 경우 2014.2.~2014.12.까지 657건의 장애인인권침해 사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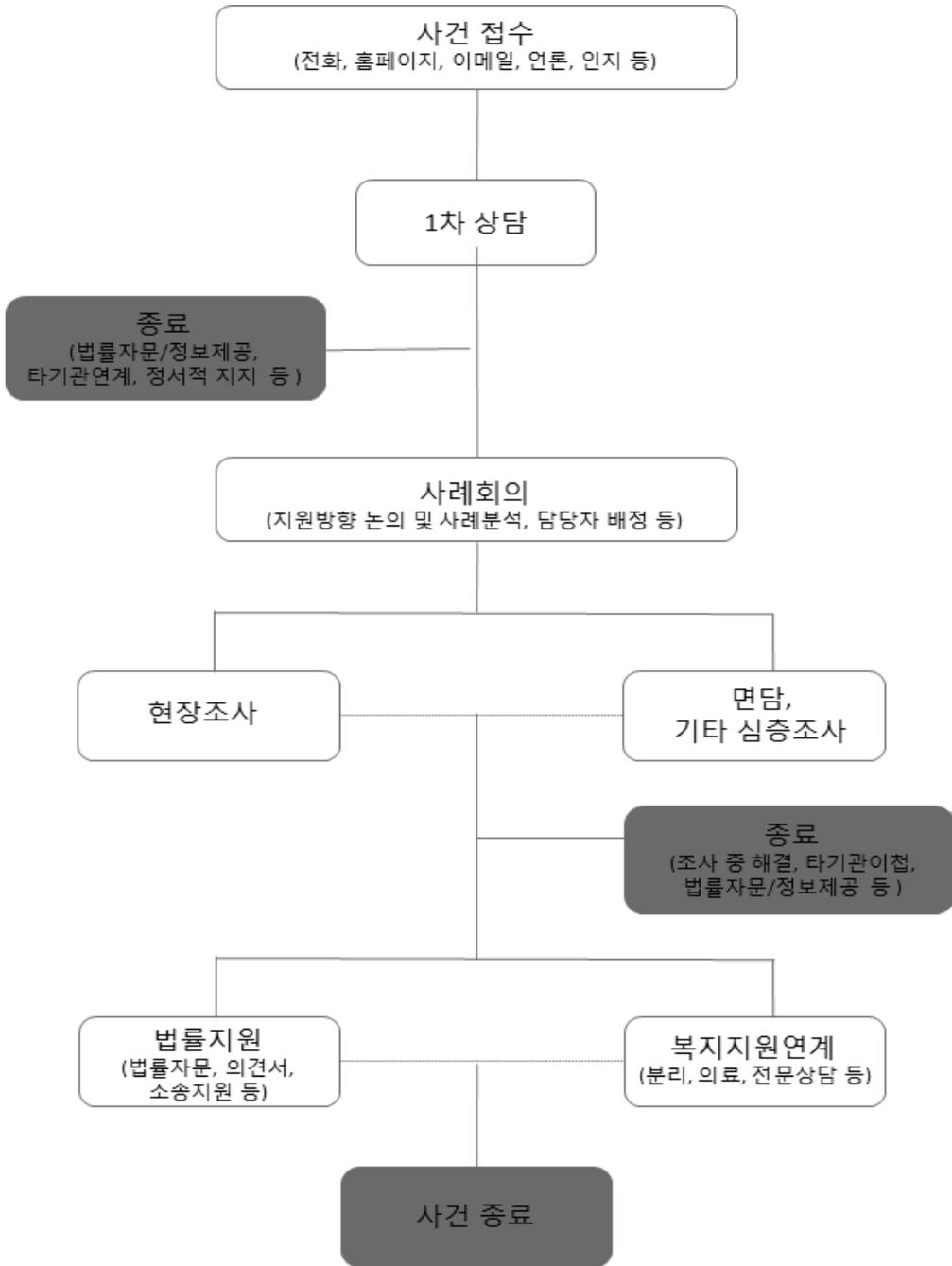
구체적 정책제안), ③ 인권교육<sup>6)</sup>(장애인거주시설 조사 시 주의사항 및 체크항목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교육, 탈시설장애인 자기결정권 교육/ 새내기입학생 대상 장애인 이해 교육/ 장애인시설 거주인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 옹호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의무사항 및 미준수 시 법령 및 사례교육, 장애유형별 응대방안교육 등) ④ 총무회계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①, ②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발제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에 기동성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법률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시설사건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 사례에 맞는 빠른 법률자문 및 법률적인 판단이 사건의 초기방향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이에 서울센터는 시설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위임받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전방위적인 권리옹호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권리옹호를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는 올바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서울센터의 상담 조사 구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6) 개소 1년차인 2014년의 경우 2014.2.~2014.12.까지 약 8,300명의 학생, 공무원, 종사자, 당사자, 공공기관직원, 특수지역(변호사 등) 대상 교육실시



서울센터는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송 뿐 아니라 신청대리 등 다양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하고 있고, 특히 소송 등의 절차로 가야 할 경우에는 헌법소송, 민사형사가사행정소송, 소년재판 및 이에 각 부수하는 보전절차, 집행절차, 소송구조, 국선대리, 피해자대리, 국선보조, 영장실질심사 등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해결을 위하여 소송 이전의 합의서, 의견서, 질의서, 신청대리, 진정절차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행정적 절차를 활용하는 법률지원으로 소청제도, 징계위원회, 공익제보, 행정심판,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등의 절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나 가사 소송대리는 지양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행청구소송과 같은 기획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활용하고 있다. ② 형사 피의자대리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등 제도적으로 구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양하나,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원인이 되어 수사절차상 심대한 방어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자대리를 수행한다. ③ 센터에서 하는 법률지원의 대부분은 형사 피해자대리이다. 초기상담, 채증, 선임계제출, 의견서제출 등 일련의 형사피해자 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등 법률조력인제도와 같이 특별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송수행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과 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이후 위임장이나 선임계 제출은 변호사 명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적절성과 센터 업무분담 고려하여 센터 법률지원단<sup>7)</sup>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 공동수행의 경우 사건의 대외비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의뢰인의 사전동의를 받고 공동수행을 의뢰하며, 사건진행의 모니터링 및 보완을 위하여 수시로 법률지원단과 회의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의뢰인을 배제하고 센터자체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 지 제도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현행 민사소송법상 병행형 제3자 소송담당<sup>8)</sup>제도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이러한 사항이 별도로 입법화되지 않으면 서울센터가

7) 센터는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동 법인 소속 변호사 27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8) 제3자 소송담당 :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또는 권리관계의 주체와 함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구별됨. 법정 소송담당 중 병행형 소송담당은 채권자대위소송

개개 사건에서 원고적격을 부여받기에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태라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적 법률지원을 통한 권리옹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의 경우 입법운동, 법률안에 대한 법률 의견송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지침마련 등 권리옹호를 위한 고유 업무범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제도개선 관련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장애인 권리옹호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법률지원과 병행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법률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옹호를 위하여 복지서비스연계 등 후속지원을 포함한 ONE-STOP사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나오며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인권옹호에 큰 기여를 하는 좋은 시도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인권옹호활동은 미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겠지만,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이 설립단계에서 다음 몇 가지 점<sup>9)</sup>은 꼭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① 서비스 제공자(장애인 복지시설 등)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공공기구로 구성되거나 공적권한을 위임 받은 전문적 민간단체에 의하여 옹호가 이루어 질 것, ②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할 것, ③ 서비스 제공기관이 권리옹호제도를 인지하고 장애인(거주인)에게 입소시 공지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알려줄 의무, 신고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 등을 통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권리구제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권리침해 징후가 있을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할 것, ⑤ 피해자를 피해 상황 또는 가해자로 부터 분리하고, 보복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를 행할 수 있을 것, ⑥ 법에 의한 조사권한이 부여될 것, ⑦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인력에 의해 운영될 것, ⑧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 ⑨ 권리옹호기관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의 채권자,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등 법정된 자만 가능함. 갈음형 소송담당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수행시 파산관재인, 유언에 관한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 등 법정된 자만 가능함.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9) 박숙경,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항상적 감시 및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하면 대부분 ‘도가니’에서 파생되는 여러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건을 떠올린다. 따라서 지난 2014년 이른바 신안염전노예사건처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게 여긴다. 장애인 인권운동의 큰 방향인 ‘탈시설 운동’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보다 재가장애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경우는 관련법령상 공적 관리감독체계(자치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런 체계가 미흡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살필 여지가 없는 일종의 인권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한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최소 시도단위 이상 마련되어, 장애인 인권침해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기능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세션2]

장애인 정보접근권

- ICT 환경변화와 장차법 개정을 중심으로 -



【발 제】

## 장애인 정보접근권

ICT 환경변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노석준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순서



▣ 인구구조 및 ICT이용 환경 변화

▣ (장애인)정보접근성 실태

▣ (장애인)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안

## 인구구조 및 ICT 이용 환경 변화

-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10% 이상) → 초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30% 이상)로 진입

연령별	인구 (만)	비율
0 - 4세	2,219,084	4.6
5 - 9세	2,394,863	5.0
10 - 14세	3,173,226	6.6
15 - 19세	3,438,414	7.2
20 - 24세	3,055,420	6.4
25 - 29세	3,538,949	7.4
30 - 34세	3,895,348	7.7
35 - 39세	4,099,147	8.5
40 - 44세	4,131,423	8.6
45 - 49세	4,073,358	8.5
50 - 54세	3,798,131	7.9
55 - 59세	2,788,895	5.8
60 - 64세	2,182,238	4.5
65 - 69세	1,812,188	3.8
70 - 74세	1,588,014	3.3
75 - 79세	1,084,387	2.3
80 - 84세	595,509	1.2
85세 이상	388,809	0.8
15세 미만	7,788,973	16.2
15 - 64세	34,779,121	72.5
65세 이상	5,424,887	11.3
계	47,990,781	100.0

출처: 2010년 인구총조사



## 인구구조 및 ICT 이용 환경 변화 (계속)

- 연도별 장애 유형, 장애인 수 변화

장애 유형	2012년						2013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인원수 (A)	%	인원수 (B)	% (B/A*100)	인원수 (C)	% (C/A*100)	인원수 (D)	%	인원수 (E)	% (E/D*100)	인원수 (F)	% (F/D*100)
지체	1,322,131	62.7	765,820	57.9	556,311	42.1	1,300,286	62.3	757,723	57.9	551,562	42.1
뇌병변	257,797	10.3	147,871	57.4	109,926	42.6	253,403	10.1	145,303	57.3	108,100	42.7
시각	252,564	10.1	150,816	59.7	101,748	40.3	253,006	10.1	151,000	59.7	102,006	40.3
청각·언어	275,332	11.0	154,836	56.0	121,496	44.0	273,220	10.9	152,862	55.9	120,357	44.1
정신	258,580	10.3	142,020	54.9	116,560	45.1	255,300	10.2	140,022	54.8	115,277	45.2
언어	17,743	0.7	12,807	72.2	4,936	27.8	17,830	0.7	12,840	72.0	4,990	28.0
지력	173,257	6.9	104,770	60.5	68,487	39.5	178,866	7.2	107,903	60.4	70,973	39.6
감각	16,906	0.7	14,370	85.0	2,536	15.0	18,133	0.7	15,438	85.1	2,695	14.9
말신	94,638	3.8	49,891	52.7	44,747	47.3	95,675	3.8	50,183	52.5	45,492	47.5
신경	53,434	2.5	36,240	67.7	17,194	32.0	55,551	2.7	38,100	68.4	17,451	31.6
심장	7,744	0.3	4,834	62.4	2,910	37.6	6,028	0.3	4,340	72.0	1,688	27.9
근골격	13,870	0.6	10,587	76.3	3,283	23.7	13,160	0.6	9,933	75.6	3,227	24.4
관	8,588	0.3	6,310	73.6	2,278	26.4	9,194	0.4	6,717	73.1	2,477	26.9
탄력	2,700	0.1	1,573	58.1	1,127	41.9	2,595	0.1	1,557	59.9	1,038	39.9
장부·요추	13,374	0.6	8,281	61.9	5,093	38.1	13,546	0.6	8,340	61.6	5,206	38.4
관골	7,806	0.3	4,283	54.9	3,523	45.1	7,271	0.3	3,900	53.6	3,371	46.4
총계	2,511,150	100.0	1,460,400	58.2	1,050,650	41.8	2,501,112	100.0	1,453,606	58.1	1,047,506	41.9

출처: 통계청자료(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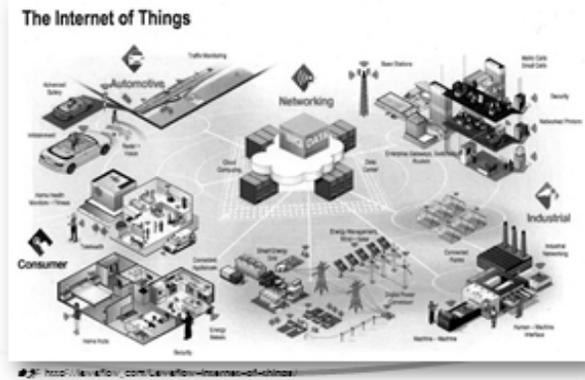


## 인구구조 및 ICT 이용 환경 변화 (계속)

### 새로운 ICT 환경 도래

#### IoT

-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 2013년에 1조 3천억, 2020년에는 3조 4백억 달러에 이자 그뒤로 매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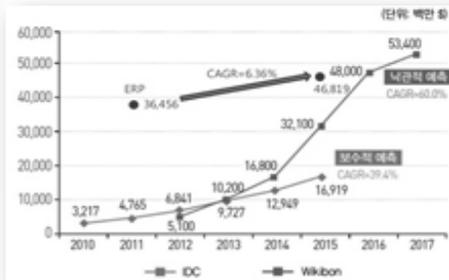


## 인구구조 및 ICT 이용 환경 변화 (계속)

### 새로운 ICT 환경 도래

#### Big Data

- 매년 약 39-60% 성장
- 2105년에는 169-321억 달러, 2017년에 500억 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 예상



## 인구구조 및 ICT 이용 환경 변화 (계속)



##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

-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 정보접근성...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안 (계속)

- 다양한 ICT 환경(예: Web, Mobile devices, IoT, Big Data, IPTV, Kiosk)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웹 접근성 → (장애인) 정보접근성 → (장애인) 정보사용성까지 편의 제공 내용 확장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도에서의 전달관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의 1(누구든지 신체적·기초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에서는 웹 접근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 도에서의 전달관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의 1(누구든지 신체적·기초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에서는 웹 접근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안 (계속)

-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주무부서 필요
  - 그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무부서로서 웹 접근성 표준과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장애인) 웹 접근성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음
  -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 인증업무 민간이관 등으로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 최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업무보다는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업무에 더 중점을 두어 왔음
  - 그러나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경우처럼, (장애인)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업무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웹 접근성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안 (지속)

-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정부·공공기관(한국정보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환경자차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평가인증기관, 전문가, 민간기관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은 정부·공공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불가능함
  - 정부·공공기관, 평가인증기관, 전문가, 민간기관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관련 정책이나 업무의 수립과 실행 등에서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빈번히,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협력체를 만들어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 확산시킬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안 (지속)

-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표준 제정 및 인증 분야 확대
  -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웹 접근성에 치중하여 왔음
  - 최근 ICT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
  -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은 제정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행정용 소프트웨어 인증 기준 개선' 논의에서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인증 기준의 '사용성'에 포함시켜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개정 준비 중
  - 이처럼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관련 표준의 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각 표준의 확산 및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장애인) 평가인증시스템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안 (지속)

-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운영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화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인력확보 방안, 교육/훈련 내용, (기초, 전문, 평가 관련)자격증 등 포함)이 조속히 구축,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외적으로 표준화에 대한 해게모니를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바,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안 (지속)

-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룬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 및 인식 제고 방안 마련·시행
  - 민간기관 등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패널티 제공 없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증진하거나 인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단순히 벌율적인 제재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최소한만을 준수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표준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한 채 미국의 접근성 표준은 보다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장애인) 정보접근성 저해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결정권자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대한 잘못되거나 낮은 인식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CIO(장애인차별금지법 관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 사소한 장애자의 접근성 등의 장애의 제거에 관한 조항) 참조) 등에게 일정 주기로(예: 매년, 매 2년마다), 일정 시간 이상(예: 15시간, 30시간) (장애인) 정보접근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연수를 이수하도록 의무화 필요

##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안 (계속)

- (장애인) 정보접근성 평가·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시행
  - 현재 웹 접근성 평가·인증기관은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정부의 규제 최소화 정책에 따라 추후 공신력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적절한 평가 및 제재방안이 거의 없음
  - 그러나 지침이나 표준, ICT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주기적으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동일한 표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평가·인증기관마다 평가결과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인증기관을 주기적으로(예: 매년, 매 2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들(예: 개선 요구, 평가·인증기관 폐쇄)을 취하며, 평가·인증기관 종사자에게 일정 주기로(예: 매년, 매 2년마다), 일정 시간 이상(예: 15시간, 30시간) (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침이나 표준 등에 대한 재교육/연수를 이수토록 의무화 필요

##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제안 (계속)

-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관한 보다 체계적·실증적인 연구 및 평가방법론 마련
  - (장애인) 정보접근성 표준이나 지침 마련, 품질마크 평가인증 등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표준 또는 지침, 평가기준 등이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도출되거나 실제 사용자(장애인, 고령자 등 포함)의 사용패턴,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임
  - 그로 인해, 실태조사나 인증받은 기관의 웹 사이트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실제 사용자 간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큼
  - 이러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가평가, 사용자 평가, 자동화된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및 평가방법론(비교 자동평가도구보다 경량하고 많은 지침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등을 포함)의 개발·활용이 요구됨
  - 이는 상당히 많은 피험자와 시간, 경비 등이 요구되는 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발제자료 한글 요약문]

## 1. 인구구조 및 ICT 이용 환경 변화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10% 이상)에서 2040년 초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30% 이상)로 진입. 2015년도는 고령인구비율 13%, 662만4천명으로 예상됨.

연도별 장애 유형, 장애인 수 변화에서 2013년도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0% 수준인 25만3천명(남성 60%, 여성 40%) 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 수 및 비율(2012년도 기준)을 보면, 20대 25%, 30대 29%, 40대 24%, 50대 10% 수준임. 가구소득별(2013년도 기준)로 보면 거의 100%의 사람들이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95.5%, 스마트패드 3% 수준임.

무선인터넷 이용률(2010년도 기준)을 보면, 남성의 57%와 여성의 56%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 86%, 30대의 64%, 40대의 40%가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2013년도 기준)을 보면, 매주 업데이트하는 비율은 국가/지자체 27%, 회사법인 6.3%, 비법인단체 16%, 개인사업체 5.6% 수준임.

### < 새로운 ICT 환경 도래 >

IoT(The Internet of Things) :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인터넷서널 데이터 코포레이션(IDC) 예측에 따르면, 2013년에 1조3천억, 2020년에는 3조4백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매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빅 데이터(Big Data) : 매년 약 39~60% 성장, 2015년에는 169~321억 달러, 2017년에 500억 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 예상됨.

장애인 정보접근성 이슈 증가 :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장애 유형, 장애인 수 변화, 공공정보 서비스 이용자 수 급증, 모바일, 인터넷 등의 정보접근 채널 다각화, 새로운 ICT 환경 도래(IoT, Big Data)

## 2. 장애인 정보접근권 실태 :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 정보접근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현황을 보면, 합격률이 2009년 16.4%에서 2013년 66.3%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인증사이트 수는 335개에 불과함.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발표한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각각 92점, 93점을 받아 높은 수준이었으나, 복지시설 70점, 의료시설 79점, 민간은 67점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보임.

## 3. 장애인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안

(1) 다양한 ICT 환경(예: Web, Mobile devices, IoT, Big Data, IPTV, Kiosk)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웹 접근성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및 장애인 정보사용성까지 편의 제공 내용을 확장할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서는 정보접근성 차원에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의 1(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는 웹 접근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2)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주무부서 필요.

그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무부서로서 웹 접근성 표준과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장애인 웹 접근성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 인증업무 민간이관 등으로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최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업무보다는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업무에 더 중점을 두어 왔음.

그러나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의 경우처럼, 장애인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업무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는 웹 접근성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3)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정부·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평가·인증기관, 전문가, 민간기관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필요.**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은 정부·공공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불가능함. 정부·공공기관, 평가·인증기관, 전문가, 민간기관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관련 정책이나 업무의 수립과 실행 등에서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빈번히,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협력체를 만들어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 확산시킬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표준 제정 및 인증 분야 확대 필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웹 접근성에 치중하여 왔음. 최근 ICT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은 제정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행정용 소프트웨어 인증 기준 개선’ 논의에서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인증 기준의 ‘사용성’에 포함시켜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개정 준비임. 이처럼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관련 표준의 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각 표준의 확산 및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통합된 평가·인증시스템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5)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운영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화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인재육성 방안, 교육/훈련 내용, (기술, 인증, 평가 관련)자격증 등 포함)이 조속히 구축, 시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대외적으로 표준화에 대한 체계모니를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바,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6)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룬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 및 인식 제고 방안 마련·시행 필요**

민간기관 등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패널티 제공 없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증진하거나 인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순히 법률적인 제재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최소한만을 준수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표준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한 채 미국의 접근성 표준은 보다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장애인 정보접근성 저해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결정권자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대한 잘못되거나 낮은 인식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CIO(‘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준용) 등에게 일정 주기로(예: 매년, 매 2년마다), 일정시간 이상(예: 15시간, 30시간)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연수를 이수토록 의무화 필요.

**(7) 장애인 정보접근성 평가·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시행 필요**

현재 웹 접근성 평가·인증기관은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정부의 규제 최소화 정책에 따라 추후 공신력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적절한 평가 및 제재방안이 거의 없음. 그러나 지침이나 표준, ICT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주기적으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동일한 표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평가·인증기관마다 평가결과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인증기관을 주기적으로(예: 매년, 매 2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들(예: 개선 요구, 평가·인증기관 해제)을 취하며, 평가·인증기관 종사자에게 일정 주기로(예: 매년, 매 2년마다), 일정 시간 이상(예: 15시간, 30시간) 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침이나 표준 등에 대한 재교육/연수를 이수토록 의무화할 필요.

**(8)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관한 보다 체계적·실증적인 연구 및 평가방법론 마련.**

장애인 정보접근성 표준이나 지침 마련, 품질마크 평가인증 등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표준 또는 지침, 평가기준 등이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도출되거나 실제 사용자(장애인, 고령자 등 포함)의 사용패턴,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임.

그로 인해, 실태조사나 인증받은 기관의 웹사이트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실제 사용자 간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큼.

이러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 자동화된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및 평가방법론(현재 자동평가도구보다 정밀하고 많은 지침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등을 포함)의 개발, 활용이 요구됨.

이는 상당히 많은 피험자와 시간, 경비 등이 요구되는 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토 론】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관련제언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실장

### 1. 21세기 통신법의 시사점

미국은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이하 21세기 통신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재활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508조가 발전하는 정보통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 이 법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통신 접근(Communication Access)과 비디오 프로그래밍 접근(Video Programming Access)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에서 통신 및 영상물<sup>10)</sup>

영역	내용	설명
통신접근 (Communication Access)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기반 통신중계서비스 보장	유선과 무선 사업자만이 아닌 신기술인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을 이용하는 통신사업자도 1년 이내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함
	고급화된 통신 서비스와 장비의 접근성 준수	규정하는 통신 서비스 4가지 :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 상호 연결되지 않은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 전자 메시지 서비스, 상호운용이 가능한 비디오 회의 서비스
	접근성 미준수시 장애인의 민원 제기 및 조사	통신중계서비스나 고급화된 통신 서비스 또는 장비의 접근, 스마트폰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장애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10) 국가인권위원회(2011).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P328

영역	내용	설명
통신접근 (Communication Access)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준수	웹브라우저가 탑재된 휴대전화기(스마트폰 등)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통신 이용 보장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게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1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여 기기 개발·보급, 연구, 서비스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난 접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고급화된 통신 서비스도 장애인이 재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 접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비디오 프로그래밍 접근 (Video Programming Access)	비디오 프로그래밍 및 재난 접근성 자문위원회 구성	비디오 프로그래밍 및 재난 접근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화면해설 및 폐쇄자막 제공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영상에 화면해설과 폐쇄자막을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디지털 방송수신 장비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지털 방송수신 장비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21세기 통신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음. 첫째, 단일 정보통신에의 접근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동되는 모든 매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정책의 기틀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임. 둘째, 스마트폰 등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매체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임. 셋째, 시각과 청각에 중복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도록 한다는 것임. 첫째, 재난정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애인들이 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고 있도록 한다는 것임.

##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의사소통권과 제한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의사소통은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임(제22조는 개인정보의 영역이

라 제외). 하지만 정보·의사소통 영역은 제20조~제23조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 교육을 비롯한 장애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음.

제20조는 정보·의사소통 이용과 접근에서 차별금지와 대리 동행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제21조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배포하는 자의 차별금지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3조는 정보·의사소통에서 정부와 정보통신제조업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음.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의사소통의 제한점은 있음. 그러한 것으로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서 통신에서의 기술성과 호환성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 환경에 대하여 취약하다는 것임. 이러다보니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제품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접근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음. 별도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영상물 접근 등임.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임의(任意)조항이라 정책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에 명시된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고려의 경우도 취약함. 이는 정보통신제품을 제조하는 관련자에 대한 규제가 임의(任意)적이라 생기는 일임. 현재 정부는 관련 지침의 제정이나 KS규격 등을 손질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이며, 민간영역에 대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 없이는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비전자정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의사소통은 전자정보로써 인터넷의 접근에 치중되어 정보로서 비전자정보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제도로서 정착된 비전자정보 정책은 수화통역 등 일부 서비스에 불과함.

정보·의사소통에서 차별금지 대상도 시각, 청각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음. 이로 한하여 이동장애인의 비전자정보나 소통권,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의 전자와 비전자 정보에의 접근권이 취약한 실정임. 더욱이 시각과 청각에 중복장애가 있는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 외로 재난과 관련한 방송통신 정부정책에서도 관련 규정들이 없어 장애인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3. 몇 가지 제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의사소통은 법의 내용 준수는 물론 미국의 21세기 통신법,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및 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입장에서 발제자의 제안 대부분 동의함. 하지만 제안되는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일부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음.

발제자의 제안 가운데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민간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식개선 노력 등은 중요한 사항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한계도 같이 개선되어야 지속성을 가지게 됨. 발제자가 제안한 정보접근 업무를 담당할 정부 부서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정보에의 차별 규정을 확대강화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함.

그 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도 필요한데, 민간사업자가 제작·배포하는 정보통신기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법률 차원의 근거를 만들어야 함.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의 정책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도 필요함. 중복장애인의 정보·의사소통 접근 문제,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문제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피의 문제 등도 법 개정에서 고려를 하여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사소통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현재 충분치 못한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발전하는 정보통신 사회를 예측하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토 론】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

김정호 (jeffreekim@gmail.com)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마케팅사업부 이사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정보 환경은 결코 접근성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접근성 분야 중 그나마 오랜 기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관련 전문가 풀 역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웹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개선보다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평가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로부터는 접근성은 전문가들끼리 논쟁하는 막연한 문제이고, 정보통신 서비스나 웹 사이트 개발자로부터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는 매우 특수한 요구를 가진 계층으로서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비용과 시간 투자가 매우 큰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접근성 보장 역시 사용자 환경의 한 요소로서 충분히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고 다수의 사용자 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며 객관화된 방법론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다만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일천하고 관련 방법론 역시 세련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으로서 사용성 중심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어떤 정보통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구성 요소들을 연속된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를 관련 접근성 지침을 적용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이나 핵심 콘텐츠를 장애인 사용자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구성요소 중 어느 것이 접근성 문제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 해당 기능 혹은 콘텐츠 이용에 얼마만큼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쉽게 객관화해 규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성 중심 접근성 평가와 사용 편의성 요구를 구분해야 한다. 즉 특정 정보통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주어진 하나의 과업을 끊임 없이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접근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과정 중에 개인의 과거 사용 경험에 비추어 발견되는 불편 사항은 사용 편의성 측면의 문제로서 엄밀히 접근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만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특정 과업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장애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와 같거나 최대한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개발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접근성 문제를 항시적으로 중요시 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최신 기술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접근성 지침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제해 나가야 한다. 즉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부터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미국 재활법 508조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해 공공부문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역시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수요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정보통신 분야 전반으로 접근성 보장 노력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접근성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때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지금보다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 기술적 속성 때문에 정보통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접근성은 기술적 관점에서 관련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기대되곤 한다. 하지만 접근성 평가가 질적 측면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의 관점에서 접근성 기능의 수준이 평가되고, 현재 갖추고 있는 접근성 기능이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는데 충분한가를 평가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접근성 기능을 보완해 나갈 때만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접근성 수준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통신 발전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접근성 보장을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과 서비스 트렌드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장애 당사자 중심 접근이 함께 요구되어진다.

【토 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

류영일 (주)헤더스 대표

### 1. 서 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느덧 7주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있겠지만 선진국 대열에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권의 수준이 성숙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있어 정보취약계층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국가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점에서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개선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 쉽게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준수대상의 범위와 목적의 문제

먼저 준수대상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법에서 명시하는 준수범위와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준수범위에서의 차이가 생깁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21조를 통해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웹 접근성 준수와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제3조 8.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1호를 보면

②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결국 ‘전자정보’란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사실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웹 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당시의 기준이 적용될 때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법과 같이 새롭게 적용될 최신의 기술까지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모든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성 의무에 있어 사각지대 없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도 웹 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준수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해석되어 홍보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웹 사이트로부터 시작된 웹 접근성은 점차적으로 모바일,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을 적용받는 기관/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행령 14조를 웹 사이트에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최신기술을 포함하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제정 당시 법률 상 해당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3차례나 영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존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해가면서 추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할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당시 제정되지 않던 서비스를 모두 확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역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미국의 장애인 법은 인터넷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199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명확한 준수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생기자 1998년에 재활법 508조를 통해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되거나 조달, 유지보수 되는 모든 전자정보를, 2010년에는 일명 ‘21세기 법’을 만들어 통신, 비디오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시기	제정된 법률명	영역
1990년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건물, 교통, 고용, 의료, 교육 등
1998년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 조달, 유지보수 및 사용되는 모든 전자정보기술의 데이터와 정보
2010년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통신 및 비디오 프로그래밍분야 (최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시)

국내도 이처럼 뭔가 방어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교육/홍보에 있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결국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문제

2011년도에 조사되어 KBS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장애인 대다수가 모른다는 내용이 언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70.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알고 있다’ 7.8%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비율이 7%대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표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알고 있다	10.4	4.3	7.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4.1	17.5	21.3
알지 못한다	65.5	78.2	70.8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2012.6)

어렵게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혜자가 이를 잘 알아야만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 자체를 모른다면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행위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해야 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나 마나…법 시행 7년 간 법원 적극구제 단 1건”이라는 기사가 난적도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공익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변호사도 법관도 제도를 잘 몰라 강제명령 대신 조정하는 방향으로 판결내리기를 선호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진정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 접근성 분야의 건수를 보면 2010년도에 많은 진정이 접수되었으나 이후로 다시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정보접근 의사소통	접수	35건	13건	506건	45건	42건	641건
	차별영역대비비율	6.0%	1.8%	29.9%	5.1%	3.1%	12.2%

[출처]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5주년 성과와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물려드는 진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를 수행하는 기구의 전문성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9년부터 웹 접근성 관련 진정을 접수해온 다양한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진정을 접수하는데도 한달이 걸리고, 처리하는데는 1년이 걸린다고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보 접근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사용자에게 있어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전문성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게임 관련 협회에서는 게임을 만들 때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이는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위원회나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21세기 통신 및 미디어 법의 경우 접근성 미준수시 장애인의 민원 제기 및 조사에 대하여 717조에서 장애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비용은 없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180일 이내에 반드시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여 공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미국 장애인 법, 재활법 508조 등 기존 법률과 달리 장애인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여 발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 또는 전문기구를 조직하여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표준과 지침을 생산할 수 있는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는 내용도 추가하여 법에 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4.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시장을 이끄는 공감대”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기관/기업 등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비율은 현재 5% 수준이고, 미국의 장애인구 비율은 12.2%에 달합니다.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p><b>한국</b>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p> <p><b>미국</b>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p> <p><b>유럽</b> : 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p> <p><b>호주</b> :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p> <p><b>캐나다</b> : 건강 및 활동에 제한(가벼운 활동에서부터 아주 힘든 활동까지)이 있는 자</p> <p><b>덴마크·노르웨이</b> :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p> <p><b>멕시코</b>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p> <p><b>네덜란드</b>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지속적인 불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직업적 장애)</p> <p><b>스위스</b>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p> <p><b>영국</b>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p>
---

[출처] 2013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보 접근성을 묶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현 법제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개념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생겨 문화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면 앞으로 늘어갈 모든 사람들의 정보화 시대에 따른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부산)

#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부산지역)

## 행사개요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사)열린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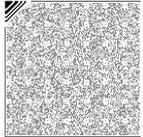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일시 : 2015. 4. 7.(화) 14:00 ~ 16:00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2층)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14:00~14:05	개회선언
14:05~14:10	기념사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10~14:15	축 사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14:15~14:20	축 사 - 부산광역시의회 김남희 의원
14:20~14:25	축 사 - (사)열린네트워크 변경택 대표
	좌장 : 김대철(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14:25~14:45	[기조발제]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45~15:20	[발제1]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인권증진 방안 -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토론) - 김철휘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 윤정희 前 한국장애인의상연구소 디자인실장, 장애인 활동가 -
15:20~15:55	[발제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과제 - 김두레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토론) -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15:55~16:1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15	폐회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기조발제]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우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 1. 들어가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내용의 포괄성과 권리구제의 체계성 등으로 매우 선진적인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장애계의 끊임없는 요구와 이에 부응한 국가기구의 적극적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법률은 구체적인 일상에서 국민들과 만난다. 그리고 국민들의 구체적인 일상은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역할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조우된다. 따라서 법률이 일상적 집행력을 갖추고 국민들의 순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어떻게 행위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차법이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참여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비장애인과 장애인 공히), 범정부적 대처의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장애인의 삶의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차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차별금지 의무 이행자로서의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행위 주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행위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의 역할이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두 번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구제의 효과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간단한 제언을 해 보기로 한다.

##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역할

장차법은 법률이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편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을 지역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지역 환경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와 내용이 지역 수준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사실에 대하여 차별받는 사람이나 이를 인지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법률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이 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법률의 존재 자체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2013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0%,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21.1%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장애인 39.9%로 전체의 1/3 정도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단지 13.8%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13년까지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중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진정이 4,030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등의 영역이 842건(12.9%)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최낙영, 2014). 이처럼 장애인차별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일상적인 거래, 보험이나 금융, 시설물 접근, 정보접근 등의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가장 근거리에서 차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거나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점에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 책임을 지고,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광이, 2010).

### 3.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먼저 장차법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개괄해 보자.

<표 1> 장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법조항	내용
법 제8조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조항	내용
제25조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7조 (참정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조항	내용
제36조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른 부산시의 책무를 살펴보자. 이 중에서도 권리구제를 다루는 직접적인 조항은 제3조(시의 책무)와 제17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표 2> 조례상의 부산시의 의무

조항	내용
조례 제3조	제3조(시의 책무) ② 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제17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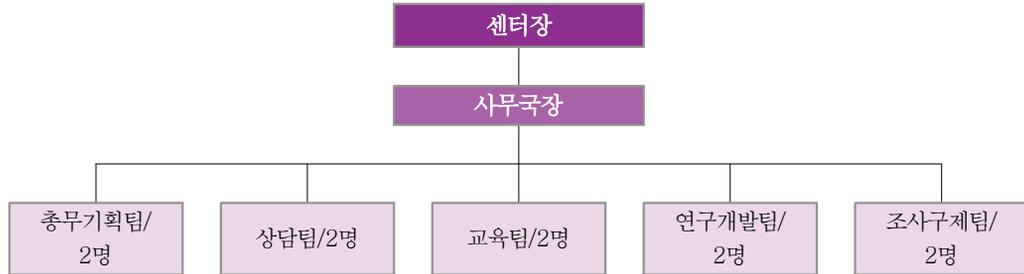
#### 4.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제언

이상에서 검토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장애인 인권센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활동
2.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7.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따라서 조례에 따라 상담, 교육홍보, 조사구제, 서비스연계를 담당할 직원이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총무와 기획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1] 장애인 인권센터 체제안

팀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무기획팀: 행정지원, 재정회계, 기획, 모니터링 등**

- 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 센터의 사업 및 상담 사례 등의 정보를 알리는 소식지 발간
-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

**상담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전문 상담**

-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접수를 받는 긴급전화 운영
-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상담서비스
- 응급 의료서비스 연결 및 지원
- 후원금품 연결 등 가족지원 사업
- 각종 상담사례 정리 및 관리
- 사이버 상담실 운영
- 변호사에 의한 법률 상담

**교육팀: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 관련 교육 및 홍보
- 지역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사업장 및 지역사회 대상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
-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 관련 자문
- 보건복지 인력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기관(초·중·고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담당자와 장애인인권보장 교육 실시를 위한 협력 업무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관기관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연계

**연구개발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담당**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세미나 및 연구사업

자립지원 프로그램, 장애아동·장애청소년·장애여성·장애노인에 대한 인권보장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보급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실태 조사

**조사구제팀: 차별상담에 대한 구제절차 등**

장애차별·인권침해 행위의 피해자 발견·등록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조치

장애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 시스템으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조치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지원

둘째, 인권센터에 상근변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핵심은 조사구제팀이다. 조사구제는 법률적 판단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변호사 인력 배치는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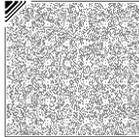
셋째, 운영주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이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활동가들이 센터에서 활동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시와의 정책협조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산시의 외압이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산시의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재위탁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장애감수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거나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고민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 마치며

부산은 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고 바탕이다. 부산시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권리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이 공고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속히 시행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졸속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함께 장애감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1]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인권증진 방안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인권증진 방안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 호 상

## 1. 저상버스 현황

[표1-9] 전국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2013.12.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일반 (대)	7,534	2,53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680	850	1,088	1,529	167
저상 (대)	2,147	329	203	240	116	168	80	1,179	158	101	52	54	72	45	384	10
비율 (%)	28	13	12	10	12	17	12	12	28	19	7	8	8	4	25	6

\* 위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국고보조금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2. 두리발 현황

부산의 두리발 택시는 중증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등 대중교통이나 일반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 2006년에 도입됐지만 차량 부족으로 인한 탑승 대기시간과 비싼 요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2013년 12월 17대가 추가되어 현재 117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법정대수인 187대에 미치지 못해 3만 5000여 명이나 되는 부산의 중증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음.

[표1-1] 전국 시도별 장애인콜택시 현황 (2013.12월말 기준)

구분	기준대수	운행대수	도입율(%)
합 계	2,748	2,026	73.7
서울시	454	433	95.4
부산시	187	117	62.6
대구시	131	92	70.2
인천시	141	135	95.7
광주시	77	68	88.3
대전시	80	39	48.8
울산시	50	29	58.0
세종시	9	4	44.4
경기도	548	401	73.2
강원도	110	17	15.5
충북도	106	91	85.8
충남도	136	46	33.8
전북도	139	110	79.1
전남도	154	50	32.5
경북도	189	58	30.7
경남도	198	309	156.1
제주도	39	27	69.2

반면, 인천시는 2006년 6월 5일, 20대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개시한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13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게 돼 법정대수의 96.4%를 보유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음.

[표1-2] 서울, 제주 및 전국6대 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세부현황 (2013년 12월 기준)

시도명	시군구명	운영주체	위탁기관	콜센터 운영여부	기사월급	운행요금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2,200,000	반납	주40시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시 택시운송 사업조합	○	940,000	반납안함	주40시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시설 관리공단	○	952,640	반납안함	주40시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	987,520	반납안함	주40시간
대전광역시		대전시 교통과	(사)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	1,305,000	반납	주40시간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협회	○	1,135,000	반납안함	주42시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	1,252,050	반납	주40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사)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체법인)	○	1,067,000	반납	주48시간, 연간휴가 10일

### 3. 법적기준에 근거한 문제제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따라 도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운전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운행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

[표1-2] 장애인 콜택시 지원 현황 ('13년 기준)

구 분	차량 도입비	월 운영비
비용 부담	서울 40%, 기타지역50% 국고 지원	운전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지자체 전액부담

부산의 경우 두리발 운영을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차량구입과 최소 수준이하의 운영비만 부담함으로써 인해 장애인 이동권의 제약과 인권침해사례까지 발생함.

[표1-3] 특별교통수단 정의에 대한 법률적 근거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8항)

특별교통수단의 책임은 시장과 군수에 있으며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가 있고, 이들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부산시에서 특별교통수단이라며 운행되고 있는 차량 중 상당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임차택시를 특별교통수단 범주 안에 포함시켜 이는 공공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음.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 법정대수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대수에 따른 도입률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해당 지자체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만, 부산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를 부풀릴 때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근거가 되는 이동편의 증진법은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음.

[표1-4]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

###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 제11조(특별교통수단)

- 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7곳 특별시 및 광역시 본청에서는 가장 먼저 부산시가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법적 도입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일정대수 이상의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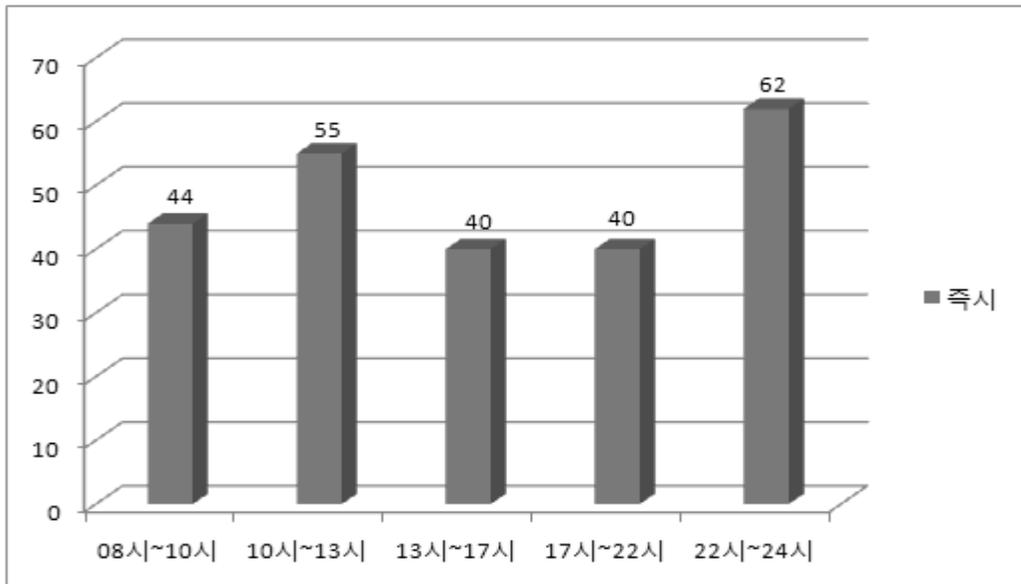
부산시도 조례에 의거하여 차츰 특별교통수단 법적 도입대수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임차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임의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산시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특별교통수단 정의("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를 명백하게 규정을 지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4. 두리발 운영체계의 문제점

### 차량부족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그래프1-1] 부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조사결과 (단위: 분)



지난 2012년 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즉시 콜 방식으로 64건, 예약 콜 방식으로 7건 등 총 71건을 탐승 조사해 보았음.

조사결과 전체 대기시간은 42.75분이었으며 예약 콜의 경우 5분, 즉시 콜의 경우 46.9분의 대기시간이 걸려 즉시 콜과 예약 콜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시 콜 방식의 시간대별 대기시간을 살펴보면 08시~10시에는 44분, 10시~13시에는 55분, 13시~17시와 17시~22시에는 각각 40분, 23시~24시에는 62분의 대기시간을 나타냈음.

차량 수가 부족한 두리발은 오전 8시 전후에 전화 예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 시간에 몰려서 차량을 타기 위해서 전화하기 때문임. 전화 예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약속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병원 진료시간 등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임.

### 비싼 두리발 요금

[표1-6] 서울 및 6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지자체	운영단체	이용요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요금의3배이내 (5km이내-1,500원,10km까지-km 당 300원, 10km이상-km 당 35원)
부산광역시	부산법인 택시운송조합	일반택시요금 35% (5km이내-2,800원,422m 당 100원)
대구광역시	대구시설관리공단	시내3,300원, 시외6,600원 한도내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2km이내-1,000원,2~10km까지-km 당 200원, 10km이상-5km 당 300원)
광주광역시	사)광주교통지원이동센터	기본요금540원, 170m당 30원
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기본요금 1,000원
울산광역시	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5km까지 1,800원

[표1-7] 동일거리로 측정한 광역지자체 장애인콜택시 요금 비교

지역	평균운행요금	출발지	도착지	거리(km)	요금
부산	일반택시의35%	구서동	정관	25	6,500
서울	일반택시의28%	수유역	상암	25	3,500
대구	시내기준 3,300원 내	계명대	영남대	25	3,300
인천	거리(km)차등	인천공항	인하대	25	2,900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낮은 요금으로 운행되지만, 부산시에서 운행하는 두리발의 요금은 다른 지역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음(표1-7 참조)

10km 이하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넘어가면 몇 배가 넘음. 특히 시간할증과 시외로 갈 경우 지역 할증이 추가로 붙기에 그 요금은 저소득장애인이 부담하기에 는 만만치 않은 금액임.

부산을 제외한 서울 및 타지자체의 경우에는 요금상한제를 두어 일정금액 이상을 받지 않아, 공공의 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기에 장거리 이동 시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시 하며 타지자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두리발 운영주체 전환

구분	방안	장점	단점
행정 직영	(1)시(市)가 직영	체계적, 책임적 운영 공공성 확보	인력, 재정적 부담 가중 전문성 미흡
	(2)구.군에 배정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	책임적 운영 공공성 확보	인력, 재정적 부담 가중 해당 구.군별 집착
대행 위탁	(3)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책임적 운영 공공성 일정 확보	인력, 재정적 부담 가중 인력 추가 필요
	(4)장애인단체에서 대행	민간 운영기법 도입	재정적 부담 가중 운영상 책임성 확보 불투명
민간 시행	(5)민간회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	인력, 재정적 부담 해소	이익추구, 공익성 미약 시(市)통제 확보 곤란
	(6)개인택시가 장애인콜택시 운영	인력, 재정적 부담 해소	이익추구, 공익성 미약 시(市)통제 확보 곤란

현행 ‘두리발’은 부산시가 택시운송 사업조합에 위탁해 90여만 원의 기본급에 운행 건수에 따라 기사들의 임금이 책정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운행건수에 열을 올려 정작 서비스 및 편의제공 등은 뒷전인 상황.

이에 두리발 운전자의 난폭운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던 점과 부당요금징수, 카드결제 거부,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등이 늘고 있음.

한편, 서울과 대구는 장애인콜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함께 민원 발생을 크게 줄이고 있음.

< 3월18일 에이블뉴스 발취 >

서울시는 교통정책의 비전을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으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추진과제로는 안전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사람 중심의 도시 교통 체계 및 보행환경 개편, 지속가능·미래 대응형 교통시스템, 소통과 협치의 교통행정 정착으로 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 종사자 등과의 소통 협치 강화, 합리적 요금 조정과 재정적 안정화 추진, 부분적 계획의 종합적 접근으로 정하였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지하철역 1동선 미확보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마련, 전체 시내버스 저상버스화, 광역버스와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계획단계부터 장애인단체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마스트플랜을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올 1월 29일 민관 합동 T/F팀을 출범시켰으며(위원장으로 장애인명예부시장과 도시교통본부장 공동)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의 2개 지원단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확정된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T/F팀은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로 정식 기구화 할 예정이다.

## 맺는말

국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이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권리는 권리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권리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장애인은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수없는 세월을 걸쳐 투쟁을 하며 법 만들기를 거듭해 왔지만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 저상버스는 어디에 몇 대나 운행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지하철은 노선의 한계도 있겠거니와 붐비는 승객들 사이로 타고, 내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조차도 떠밀려 소득수준만 높은 후진국 맛을 유감없이 느끼게 한다. 그래서 어찌 어찌하여 편의증진법에다가 차별금지법 팔아가며 자치단체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발전계획예산, 무슨 무슨 예산에 밀리고 밀려 장애인은 오늘날까지도 언제 올지 모르는 “두리발”을 기다리며 겨울엔 추위에 떨거나 두어 시간 후에 갑자기 차가 배차되면 기다리다 지쳐 먹던 밥순갈 내동댕이치고 불이 나게 달려가야 하는 일상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한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제한의 마이널티를 부여하는 이 문제에 대해 낯선 토론을 기대해 보면서 글을 마무리 할까 한다.

【발제1토론1】

##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김철휘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다.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시간의 여유가 충분할 때는 버스를 탈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 할 때는 택시를 탈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동수단의 선택권이라 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  
는다. 버스를 타고 싶어도 목적지까지 가는 저상버스가 없고, 택시를 타고 싶어도 짧으면 1  
시간 길면 2~3시간 기다려야하는 두리발 때문에 장애인들은 매일매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은 이동수단의 선택권이 없다. 이유는 과연 뭘까?

### 1. 저상버스

보통의 시내버스는 오르내리는 턱이 두 개가 있다. 일명 TWO-Step BUS라 한다.  
입구도 좁아 성인 한명 정도가 탈 수 있다. 출구도 가운데 봉을 설치해서 두 명이 한 번에 내  
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버스는 휠체어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상버  
스이다.

저상버스는 입·출구의 턱이 각각 하나씩 있다. 턱이 있어 휠체어가 탈 수 있나? 할 수 있겠지  
만 출구에 경사로가 내려와서 휠체어나 보행이 불편한 이들이 쉽게 탈수 있다. 그리고 버스 높  
이를 낮추기 위해 일부 부품들이 버스위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내버스보다 크기가 커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부산시내의 저상버스는 330대 정도 운행하고 있다. 전체 2530대의 약 13% 남짓이다. 16개 시·도 중 6번째의 저상버스 도입률 이지만 부산시에 교통사정과 인구수를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버스에 두 배의 달하는 저상버스의 가격이다. 알다시피 시내버스 회사는 개인이 운영한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준공영제가 실시되어서 시비를 보조해준다 하지만 버스구입은 사주의 몫이어서 비싼 저상버스 구입을 꺼리게 된다. 탑승인원도 일반버스보다 준다는 것도 이유 중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은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노약자 누구라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얼마 전 일본을 간적이 있는데 그곳에 버스는 대부분이 저상버스였고 일반버스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저상버스도입의 또 하나의 걸림돌을 이야기 하자면 부산시의 도로 사정이라 말한다. 부산은 타 지역의 비해 산복도로가 많다. 낮은 높이에 저상버스가 산복도로에 다니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온 저상버스는 산복도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행하고 있다. 실제로도 영도지역 산복도로를 운행하는 저상버스도 다수가 있다.

정작 문제는 정비가 미흡한 버스정류소라 할 수 있겠다. 비장애인이야 좁은 공간에도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상버스가 경사로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내 대부분 정류소들은 촘촘한 가로수 간격과 미관상 설치해 놓은 화단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매우 힘겹게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 도로에 나와서 타고 내리는 위험한 경우도 있어서 전 버스정류소에 저상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또한 시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저상버스도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저상버스 100%도입 일인시위를 부산시 전역에서 한 바 있으며, 타 지역보다 교통이 열악한 영도지역 자립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저상버스 도입 운동을 벌여서 한 노선의 전체가 저상버스이고 다른 노선들은 3~4대가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한 노선 전체가 저상버스도 좋지만 저상버스가 없는 다른 노선에도 고루 분포가 되어야 이후에 부산지역 전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에도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버스타기 1인시위

저상버스 홍보캠페인

부산시의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502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률은 전체에 20%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목표치를 크게 밀돌지도 모른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저상버스 구입보조금은 대당 1억원(국비 50%, 지자체 50%)이고 버스업체는 일반버스의 가격(약 8,500만원)을 부담함. 지원되던 국비도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441, 375, 322, 381, 282억원)이다. 한 가지 예로 경기도는 10년 내 저상버스도입 100%를 약속했으며, 서울시는 모든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하였다. 물론 지역마다 제정이 차이가 있겠지만 보다 책임 있는 장애인동편의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도 지속적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이동편의의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2. 두리발(장애인콜택시)

일반적인 콜택시는 전화를 걸어 부르면 5~10분 안에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택시를 말한다. 이런 편리함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려도 한 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콜택시가 있다. 다름 아닌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이라 한다.

두리발은 2006년에 진보적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부산시와 싸움 끝에 만들어졌다. 본인도 그 당시에 같이 한 터라 한 번씩 두리발을 탈 때면 감회가 남다르다. 처음에는 10대로 시작하여 지금은 117대가 운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법정대수 200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대 수이고 도입율은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장애인구수 200:1 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저상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두리발은 한 번씩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장애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동교통수단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편리함에 반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인고의 시간을 요구한다. 두리발을 처음 부를 때 대기자가 몇 명인지 물어보아야 되고 오랜 시간 배차가 안 되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야 되고 배차문자가 오나 싶어 봤더니 ‘지금 주위에 운행하는 차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문자를 보면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많다. 물론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배차가 될 때도 있다. 대기자는 10명이상인데 전화하자마자 바로 배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미처 준비를 못해서 기사와 실랑이를 버릴 때도 있다.

비단 들쭉날쭉한 배차문제만이 아니라 두리발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벌어진다. 장애인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애 비하발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번은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콜센터에 했는데 말을 못 알아 들으니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했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콜센터의 잦은 서버 다운으로 전화가 불통되어 두리발을 이용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타 시도 보다 비싼 요금을 들 수가 있다.

[표1-1] 서울 및 6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지자체	운영단체	이용요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요금의3배이내 (5km이내-1,500원,10km까지-km 당 300원, 10km이상-km 당 35원)
부산광역시	부산법인 택시운송조합	일반택시요금 35% (5km이내-2,800원,422m 당 100원)

대구광역시	대구시설관리공단	시내3,300원, 시외6,600원 한도내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2km이내-1,000원,2~10km까지-km 당 200원, 10km이상-5km 당 300원)
광주광역시	사)광주교통지원이동센터	기본요금540원, 170m당 30원
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기본요금 1,000원
울산광역시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5km까지 1,800원

[표1-2] 사례로 본 부산-서울 장애인콜택시 요금 비교

지역	평균운행요금	출발지	도착지	거리(km)	요금
부산	일반택시의35%	구서동	정관	25	6,500
서울	일반택시의28%	수유역	상암	25	3,500
대구	시내기준 3,300원 내	계명대	영남대	25	3,300
인천	거리(km)차등	인천공항	인하대	25	2,900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낮은 요금으로 운행되지만, 부산시에서 운행하는 두리발의 요금은 다른 지역보다 최소 2배 이상 높다.(표1-2 참조)

10km 이하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넘어가면 몇 배가 넘음. 특히 시간할증과 시외로 갈 경우 지역 할증이 추가로 붙기에 그 요금은 저소득장애인이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부산을 제외한 서울 및 타지자체의 경우에는 요금상한제를 두어 일정금액 이상을 받지 않아, 공공의 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기에 장거리 이동 시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시 하며 타지자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1-1]에서 보았듯이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주체는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나 시 교통공사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대목은 이것이다. 두리발의 공공성 확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대수의 확보, 요금의 인하,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이 모든 것이 공공성확보가 되지 않는 한 어느 한 가지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끝으로~~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하는 고민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들은 그런 고민도 할 수가 없고 선택조차도 할 수가 없다.

작년 부산시청앞에서 장애인들이 50일동안 노숙투쟁을 한 이유도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장애인이동권의 공공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삶도 더욱 더 궁핍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언제라도 싸울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

올 9월 두리발의 위탁운영이 종료가 된다.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되는 단체나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위에 열거했던 문제점이 되풀이 되거나 더 악화가 될 수 있다.

두리발의 공공성을 확보 하려면 지금의 예산에 두 배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저상버스 50%도입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제발 자본의 논리, 예산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이 편한 사회가 모두가 편한 사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윤영삼 - 부산지역 장애인교통의 실태와 개선방향 발제문 [2014]

【발제1토론2】

## 사례로 살펴본 부산지역 장애인이동권

윤정희

前 한국장애인의상연구소 디자인실장, 장애인 활동가

### 들어가면서

최근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중증 장애인은 집안에서만, 아니 자기 방 안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었다. 어렵게 집 밖으로 나와도, 장애를 이유로 배움은 입학거부, 취업은 문전박대, 보험가입은 원천봉쇄. 심지어 놀이시설, 식당조차도 쫓겨나고 거리에서 눈치를 보며 다녔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이 거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 몸으로, 어떻게.....? 장하다!”라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차별적 발언을 차별인 줄도 모르고 했다. 아무도 이를 ‘잘못된 인식’으로 여기지 않았고, 주눅든 장애인은 자신의 “잘못된 몸”만 원망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투쟁”이었던 외출이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는 이면에는 장차법과 교통약자법 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지하철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알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임산부,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기 엄마들, 고령의 어르신들,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젊고 건강해 보이지만 속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잡고, ‘이젠 장애인도 외출할 수 있네?’ 생각할 뿐, 사실 장애인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에 자신들이 편해졌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동스쿠터를 탄 중증 장애인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장차법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법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긍심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성과도 놀랍지만, 당사자가 돋보기를 들고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기에는 부족하고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깨알같은 지적과 열띤 토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날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장애인의 욕구 수준과 권리의식도 높아졌다. 높아진 눈높이에 적합한 제도를 계속 보완되어야 장차법의 이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믿으며, 그동안 지체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의 내 개인 체험과 주변 장애인 활동가들의 사례를 들어 이동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당장 시급하게 시정해야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데 작은 단초를 보태고자 한다.

## 이동권, 나에게 ‘이동’보다 큰 의미

1948년에 UN에서는 인권헌장에 ‘이동은 인간의 권리’이라고 제정했다. 이동권은 단순히 독립적 권리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추구를 위한 활동의 근간이다. “이동”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몸을 옮기는 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이동권이 제한될 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지, 잃어 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안다. 장애인들에게는 비장애인들의 경험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절실한 것이 이동권이다.

나는 이동권의 개념조차 없는 시대에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눈물겨운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이동하기 위해선 타인의 등이 필요했다. 엮는 사람에게는 등골이 휘어지는 부담이었고, 나는 1g이라도 무게를 덜고 싶어 숨도 크게 못 쉬었지만, 의지랑 상관없이 내 몸은 민폐였다. 드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커녕 내 몸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을 키울 기회조차 없었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위험이 다가올 때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늘 불안했다. 민방위 훈련과 긴급 화재 대피 훈련, 다른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대피 훈련”이 내게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훈련”이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불안이, 늘 마음 한 구석에서 소리없이 흐르고 있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자기방어기제를 과잉 작동시켰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동능력이 없는 신체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이 사회심리적 깊은 영역까지 황폐화시킨 것이다.

두 번의 수술 끝에 처음 보조기와 목발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척추를 누르며 내려앉은 내 몸무게의 느낌, 대지를 정복하고 이글거리는 태양의 기운을 받고 서있는 거인이 된 것 같았다. 오래, 멀리 걷는 것은 힘들었지만, 자력이동은 신체적 자유 이상을 의미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내 이동능력보다 커서 늘 힘들었지만, 타인의 조력없이 자력으로 학교를 다니고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건 몇 단계를 뛰어 넘는 큰 성장이었다.

핸드 컨트롤이라는 간단한 장치 하나가 자동차라는 현대문명의 편리함에 나를 합류시켜줬다. 거의 모든 문명의 이기가 편한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잘 생긴 사람 더 잘 나오게 하는 것 일뿐,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만 높였다는 억하심정이 훑~날아가버렸다. 누가 만 들었을까, 이름은 모르지만 핸드컨트롤을 만들었던 그 분에게 아직도 무한감사를 날리고 싶다. 운전하고 달리는 동안은 장애가 사라지고 비장애인과 똑같아졌다. 더군다나, 친구와 가족, 때로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동행을 권할 수 있고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한결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자신감을 회복시켰다.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내게 전동스쿠터가 꼭 필요한 것인 줄 몰랐다, 목발로 갈 수 있는 작은 영역과, 훑고 지나가는 차창 밖 세계와는 또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마트나 시장 등 근거리 이동에서 비장애인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기특한 전동스쿠터. 지하철을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심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온천천을 거닐 수 있고, 성지곡 수원지를 산책하고 감천 문화마을을 관람할 수 있는 사랑스런 전동스쿠터. 삶의 질이 높아졌다. 내 모습이 많이 행복해 보이냐? 미소를 머금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비싸죠?”

“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해줘요.”

“가다가 멈추면, 어떡해요?”

“전동스쿠터 이동해주는 특수 차량이 운행해요. 부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와 줘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니까요.”

## 믿었던 특별교통수단, 좌절의 경험

전동 스쿠터와 두리발을 알았으니까 LPG 지원도 사라진 자동차를 없애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다. 시기상조임을 금방 깨달았다. 어느 순간부터 두리발 이용이 매우 불편해졌다. 예약콜은 불과 1시간 만에 끝나고, 즉시콜은 2-3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아예 2시간 만에 배차된다고 하면, 그에 맞게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지만, 10분 후가 될지 두 시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무턱대고 기다려야 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두리발보다 지하철을, 지하철보다 자동차를 다시 이용하면서 스쿠터 사용까지 줄이게 되었다.

하지만 전동스쿠터가 가다가 멈추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리발을 불러놓고 스쿠터가 멈춘 그 자리에서 주구장창 기다릴 수밖에.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 때로는 찬바람이 썰썰 바람 부는 거리에서. 조바심에 몇 번이나 전화해서 안내원을 들볶았고 마침내 차가 도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기사님에게 짜증을 냈다. 그 분 탓이 아닌 줄 알지만, 그 순간의 답답함을 들 어줄 사람은 기사님뿐이니까. 어디 이런 승객이 한 둘일까. 기사님들도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받으며 좋은 기분을 나누어야 할 착한 시민 들어서, 자신들의 잘못 이 아닌 일로 얼굴을 붉그락거리며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만, 부산에서 는 흔히,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선진국은 개뿔!

이동권은 막힘없이 물흐르듯 해야 한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막히면, 그 효과는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 훨씬 더 절실한 사례들

### [사례1]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모(32) 씨는 아침 병원 진료를 위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인 ‘두리발’ 콜 센터에 전화를 걸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 병원 진료 예약 시간은 점점 다가올 시점에서, 겨우 콜 센터와 연결이 됐지만, 대기 차량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온다. 결국 이 씨는 병원에 전화해 진료 예약을 뒤로 미룬다.

### [사례2]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는 부산의 직장인 최모(29) 씨는 “예약 콜은 수십 번 전화를 해야 통화가 되고, 통화가 되어도 원하는 시간은 이미 다 차있다. 그래서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배차가 되기 때문에 두리발 이용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 [사례3]

지체장애 1급인 아들을 둔 김모(38) 씨는 “한 시간을 넘게 밖에서 차를 기다리다 지쳐 인상을 조금 썼더니 화를 내는 기사도 있었고, 상담원에게 위치를 설명할 때면 쉽게 하라면서 통명스럽게 다그치는 경우도 있어 상당히 불쾌했다” 친절하고 위안이 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일부의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없다고 느꼈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입히지 않도록 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사례4]

그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출근하기 위해 두리발에 전화를 걸었다. 불통이었다. 예상한 대로다. 한 번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버튼을 10분은 누르고 있어야 한다. 겨우 연결이 됐지만 두리발은 오늘도 늦게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그를 두리발에 태우고 휠체어를 고정시켰다. 단단히 고정을 시켜도 흔들릴 위험이 있지만 운전기사는 그의 휠체어를 대충 고정시킨 채 출발했다. 그는 불안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됐다.

난폭운전으로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 휠체어는 크게 흔들렸고 그는 어깨를 다치고 말았다. “어깨가 너무 아픁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개의치 않았다. “괜찮아 보이네” 그는 운전기사의 말에 어깨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상처가 가기도 전에 운전기사의 말이 이어졌다. “출발할까? 말까?” 그는 당황스러웠다. 운전기사는 그의 아픁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결국 경찰서로 갔다“.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경찰서씩이나 가야돼”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면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미안하네요” 결국 경찰의 중재에 운전기사는 비꼬는 말투로 사과를 건네왔다.

[출처-2014.12.8 ○○신문 기사발췌]

## 나오면서

편리해진 이동 환경의 수혜는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더 많다. 임신부들이, 유모차 사용자들이, 큰 짐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잠시 불편해진 사람들이,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노화되어버린 사람들이, 늘 누려왔던 일상의 정상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아니러니하게, 그것만으로 일상의 정상성이 금방 회복하는 비장애인들을 위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조차 충분히 누려보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교통약자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직도 요원한 무차별 환경을 살아생전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 중증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는 2030년 ‘초고령사회’가 될 대한민국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경보음이다. 그때는 국민의 24.3%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신체 기능의 약화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구축은 시급하다. 먼저 겪어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안다.

장애인단체에서 선도와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및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예산부족과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는 더욱 부족하고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늘어난 수명만큼 행복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은 ‘시혜와 복지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꼭 기억하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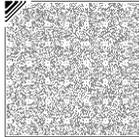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발제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과제

김두계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과제

김두례(재)부산복지개발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올해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장애인계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씩 제도를 마련해 오던 시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선진국의 장애인정책에서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제도적 틀은 모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음단계로 나아가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직접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계의 주요 정책들은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활동가의 직접적인 투쟁과 정책적 대상자로 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발전적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장애의 ‘사회성’을 인식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송성민, 2015; 유동철·김두례·이찬화·강지영,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현황이나 과제는 그동안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5). 장애인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욕구와 기준에 따라 접근을 해야 하는 기본적 정책과제와 더불어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차원의 과제가 필요하다. 최근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보여주듯이 이제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제도적 혜택을 다르게 받는 문제도 생긴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지역사회 정착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다수가 있다(남찬섭 외, 2012; 유동철 외 2013).

200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확산은 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종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이용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거주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일한 목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자립강화 및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목표로 삼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고 개별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3). 부산광역시도 지역사회재활시설과 거주시설 대상 보조금 지원방식의 서비스 접근에서 점차 중증장애인자립을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있다.

서울, 대전, 부산 등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차별금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체험홈 운영, 장애인공동생활지원단 운영 확대 등 과거와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장애인 관련단체는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의 현재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제시와 정책담당자들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현재와 과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는(송성민, 2015).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의 삶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지역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탈시설 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역사회 내 개별 서비스 기관은 전달체계의 속성상 서비스에 대한 조정 없이는 지역 내 다른 서비스 기관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김영중김두례권순애이오복, 2007). 그러나 개별기관들 간의 의도적인 기능 조정과 관련된 노력은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장애인의 자립과 이후의 사회통합에 이르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본 발제자는 2012년 부산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할 당시에는 ‘탈시설 자립’장애인 중 신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장기적이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 향후 우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전후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부산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생활이 갖는 의미와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장애인이 자립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요 문제

시설거주 혹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던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을 목표로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장애인은 자립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된다(김두레·채인숙, 2013). 주변에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장애인 동료들을 보면서 자립을 희망하게 되지만 막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독립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료 상담과 자립생활 단기캠프, 지역사회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자립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립의지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보호자 그리고 거주시설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지역사회에서 자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김성희·황주화·이민경·심석순·김동주·강민희 외, 2013) 그리고 막상 자립의지를 갖고 독립을 시도하였지만 제반 여건의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 전 뿐만이 아니라 자립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동료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탈시설 자립을 한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한 어려움이었다(김두례·채인숙, 2012).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및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영역이 장애인 주거영역이다(이선우 외, 2014). 장애인 주거 서비스가 장애인계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이유는 현재의 주거서비스 정책을 Gilbert & Terrell(2005)이 제시한 정책 분석틀로 보았을 때, 급여의 대상면, 급여의 내용면, 급여의 층분성에 있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이 주어지지 않는 주거정책은 직접적으로 서비스 접근에 제한적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는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이 소규모 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다수 연구에서

주거서비스의 다양화를 제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표 2-1]의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제한적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다양한 유형

유형	분류	세부분류	시설의 특성	시설의 모형(사례)
공동체형 거주시설	복합서비스 제공형	분리공동체	계획된 공동체형성(다양한 자원 동원하여 서비스제공, 분리된 공동체)	보호마을 혹은 공동체마을 (Intentional communities <sup>1)</sup> )
시설형 거주시설 <sup>2)</sup>	시설형태 많은 서비스 제공형	요양시설	지속적인 거주 장소+ 관리+ 식사+ 집중된 개별지원(지원인력상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생활시설	지속적인 거주 장소+ 관리+ 식사+ 개별지원(지원인 력상주)	생활시설(거주시설)
		단기보호	일시적인 거주 장소+ 관리+ 식사+ 집중된 개별지원(지원인력상주)	단기보호
	시설형태 약한 서비스 제공형	그룹홈	지속적인 거주 장소+ 관리+ 식사+ 느슨한 개별지원(지원인력상주)	그룹홈
가정형 거주시설	가정형태 많은 서비스 제공형	요양지원 (중증장애 인)	일시 혹은 지속적인 거주 장소(가정 내)+ 관리+ 식사+ 집중적 개별지원(3명 이하)	미국의 Family Home Agency 혹은 영국의 Shared Lives 제도 <sup>3)</sup>
	가정형태 약한 서비스 제공형	생활지원 (경증장애 인)	일시 혹은 지속적인 거주 장소(가정 내)+ 관리+ 식사+ 느슨한 개별지원(3명 이하)	영국 Supported Accommodation <sup>4)</sup> 등. 함께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차원 달리함)
		최소지원	거주 장소+ 주택관리 서비스+ 최소지원서비스	순회지원 자립홈 등
독립형 주거서비 스	부분 독립형	단독	주택임대, 주택관리서비스	미국의 아파트군 혹은 단일 공동거주가정 혹은 아파트 <sup>5)</sup>
		그룹	주택임대, 주택관리서비스	
	완전 독립형	단독	주택구입 지원 혹은 임대	자가
		그룹	주택구입 지원 혹은 임대	공동소유 등

1) 대표적으로 라르슈, 캠프힐과 같은 분리된 공동체 마을 등이 있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주시설 서비스의 형태이다.  
 3) 영국의 경우 보건부의 2005년 Green Paper를 통해 Shared Lives를 독립성과 삶의 질과 선택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4) 영국의 Supported Accommodation은 주로 지원만 제공하고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다.  
 5) 미국의 아파트군(apartment cluster)은 가까이 있는 몇 개의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를 말하며, 그 아파트 단위 중 한 곳에 살고 있는 지원인력의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단일 공동거주가정 혹은 아파트(single co-residence home or apartment)는 주택이나 아파트 한 채로 구성되며, 지원 인력 중 한사람이 지적장애를 지닌 한 명 이상의 룸메이트와 집을 공유한다.

한편,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고 있는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에서는 약 97%가 일반주택에 응답하였다. 반면, 2012년 부산시 장애인실태조사(n=1017)에서는 약 83.1%가 일반주택이라 응답하여 전국 조사와는 상이한 조사가 나왔는데, 전국조사와는 다르게 공동생활가정입주를 8.6%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단위: 명, %)

구분	부산(n=1,017)			전국(n=6,000)		
	중증 (1-2급)	경증 (3-6급)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계
일반주택	88.4	81.0	83.1	93.3	97.9	96.9
공동생활가정	6.0	9.7	8.6	2.8	0.7	1.2
생활시설	1.6	6.1	4.8	3.0	1.2	1.6
기타	4.0	3.2	3.4	0.9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에서 탈시설을 희망한 장애인들의 자립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시설 내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자립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거에 대한 접근이다. 체험홈에서 생활 중인 장애인의 경우 입주하자마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입주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체험홈에 머물게 된다. 시간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한진(2015)의 경우 현재의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였다.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희망을 갖고 도 포기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도 2012년 5명의 탈시설 자립을 실천한 장애인에 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과정에서, 이들이 겪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주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자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았으며, 주거마련 과정에서 주거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막상 주거를 마련하더라도

거동이 제한된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2차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역 내 탈시설 자립장애인의 증가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도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타시도의 사례 및 해외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주거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어려움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이후 2011년 제도적 변화를 한차례 맞이하였고, 2015년 현재, 활동보조 급여내용에 따른 차등수가, 서비스 단가의 조정, 급여량의 확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시기 제도적 변화를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동기 외, 2012; 김성희 외, 2013).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향후 활동지원제도의 정책효과와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뒤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편, 현재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제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 외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할 긴급활동지원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현재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보건복지부, 2015)가 되는데 그 중 한 가지 신청 가능 유형이 시설에서 갑작스럽게 퇴소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탈시설 자립을 결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간의 시설장애인의 경우 탈시설 자립을 결정하고 난 후 긴급하게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상적으로는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긴급지원 신청을 사전에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 측의 도움으로 장애재판정과 활동지원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노경수, 2015).

제도적으로 긴급활동지원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퇴소 즉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험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비에서 이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제한된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제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

분은선지원 후 후신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현주소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14년 부산지역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부산 지역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실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에 따르면, 지적장애 114명(71.2%), 뇌병변장애가 26명(16.3%), 공동생활가정은 지적장애가 40명(72.7%), 자폐성장애가 8명(14.5%), 단기보호시설은 지적장애가 60명(88.2%), 뇌병변장애가 5명(7.4%)으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 필수조건이 ‘활동보조서비스’라면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국내외 많은 사례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발달장애인서비스국과 같은 형태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심의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 온 자립생활센터에서도 지적(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정책에의 관심을 함께 하고 있다. 향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 역시도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정신장애인 역시 병원에서 퇴원 후 사회복귀시설을 거치지만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중간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막고 있다. 따라서 모토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자립을 정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장애유형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선결되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 3. 자립생활 지원 관련 그간의 과제와 향후 추진과제

2012년 발제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자립전과 자립후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민간시설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정책에 반영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개정으로 탈시설 자립전환지원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운영은 2015년부터 기존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산시에서는 매년 체험홈 확대를 하고 있다. 자립생활정착금은 2014년 도입되어 당해 15명에게 지원이 되었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민간시설 간 역할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유기적 관계 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 구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역시 2013년 하반기부터 부산시가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해 40여 가구에 대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하지만 미해결 과제도 일부 있는데 자립생활기술훈련 관련 매뉴얼 개발에 대한 것과 현재 거주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립생활기술훈련은 본 발제자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실천현장을 중심으로 향후 좋은 매뉴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체험홈 성과관리의 경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부산시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2014년에는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주거정책에서 제안한 사항을 전달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운영활성화 방안도 제시하고 현재까지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2015년 부산시의 의뢰로 본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이번 세미나의 기초발제를 맡아주신 동의대학교 유동철 교수님께서 책임연구를 맡은 ‘부산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와 본 발제자가 책임을 맡고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모델 개발’, ‘장애인고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긴 시간 투쟁을 통해 요구된 사안인 만큼 실질적 반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행정기관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24시간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반영 노력을 하고자 한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모델 연구에서는 ‘지역중심 장애인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관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중심이 아닌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기관실무자들과 함께 논의 중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이용시설로서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점과 노하우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조직과 관련된 역량강화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지역 내 장애인의 고용실태에 대한 접근으로 궁극적으로 자립장애인 가운데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정책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 하려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근로환경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장애인 근로자 지원제도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서비스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일반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에는 손상으로 인하여 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도 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보장을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일을 하고 싶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은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 장애인 고용 사례관리 등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히 많으나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정책분석이 서서히 진행되어 오지만 한걸음씩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 4. 나가면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그 자체가 최종 종착지는 아니다

이상 그 간 시행된 과제와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살펴보았다. 본 발제자는 이 외에도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정책의 필드현장에서 다수의 장애인을 만나고, 여러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로 첫째, 시설서비스 이용 적격심사와 진입과정의 체계화<sup>6)</sup>, 둘째, 앞서 언급한 거주시설 유형의 다양화,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넷째, 24시간 장애인 응급보호시스템의 마련, 다섯째,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문화 및

6) 시설서비스 진입단계 전 이용자의 사전 욕구확인을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을 통한 거주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이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여가에의 접근 등을 제안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하루빨리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의 문제임을 알고 있다. Walker and Townsend(1981)는 「영국의 장애 : 권리의 선언(Disability in Britain : manifesto of rights)」에서 장애인의 통합을 방해하는 환경적·심리적 장벽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재정적·사회적·경제적 장벽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 우리에게는 재정적·경제적 장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집행자들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아무리 필요성과 당위성에 입각해도 현실반영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따라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의 제도화와 우리가 이미 제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재정의 장벽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용자의 만족도, 그리고 제도적 결함을 스스로 자정해가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발제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이 왜 중요한지에 관하여 영국의 톰 셰익스피어의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최근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언급하였다.

*자립생활은 접근성을 갖춘 가정, 접근 가능한 환경과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한 이용가능성에 기초를 둔다. 여기에서 관심의 초점은 개인과 그들이 가진 비정상성 및 한계에서 서비스 환경,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하는가 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된다(p. 244.).*

자립생활은 지역사회 정착-사회참여와 완전통합-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언급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소득이나 보호 없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인간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장애인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Kittay(1999)는 자립생활은 그 사람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 가장 충만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일 뿐이라고 하면서, 일단 의존성-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타인-혹은 보조기구의 필요-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의존성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장애인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란 불가피한 것이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극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 독립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제자도 Kittay의 주장에서와 같이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국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자립한 장애인들 가운데에서는 1급 중증장애인들이 많지만, 이들은 신체적 장애로 인한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센터와 활동 보조서비스를 통해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지 않으면 결코 자극도 즐거움도 지역사회 내 친교·우정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고립과 사회적 단절에서 참여와 관계라는 삶이 가져다 준 변화는 더 이상 지난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인용 글을 보면 역량강화 된 장애인조차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양질의 삶을 가꾸기 위한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할 때, 그들이 아무런 선택과 대안이 없을 때, 그리고 장애인의 욕구에 반응적이지 않은 서비스나 의미 없는 자선에 의지하게 되어 사회의 주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밀려나게 될 때, 위험은 도래하게 된다. 역량강화 된 장애인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로 차 있는 세상에서보다는, 사람들 각자가 타인에 대한 자신의 책임성을 깨닫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더 양질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Tom Shakespeare: 이지수 역, 2013, p.259).*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과 통제 아래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랫동안 자립생활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막상 물리적 독립은 하였지만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이웃사이 한가운데에 있는 자기의 집 안에 고립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Tom Shakespeare: 이지수역, 2013). 현대사회는 매우 파편화되어 있고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은 자발적으로 연결망을 형성하거나 친구관계의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즉,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일부분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든 재가에서든 독립을 한 장애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내에 있는 다수의 기관과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복지관련 연구자, 실천가, 정책입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말은 인용하며 원고를 마무리할까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존재 기반 위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지구에 공존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소통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면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대가 중요하다(이지수, 2013),*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김동기·전정식·윤재영·원종필·이용·신미화 외(2012). 「장애유형, 연령 및 생활환경 등에 따른 급여이용실태조사 연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보건복지부.
- 김두례·채인숙(2012).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 김성화·변경화·황주화·이연희·오미애·이송희 외(2013).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Ⅰ)(Ⅱ)」.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화·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 외(2012). 「2011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화·황주화·이민경·심석순·김동주·강민희 외(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종·김두례·권순애·이오복(2007). 「부산시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및 서비스 분극체계 구축연구」. 부산복지개발원
- 남찬섭·김동기·남병준·박숙경·이도엽·임성태 외(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2015). 「201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2015). 「탈시설지원정책의 현재와 향후방향 토론회」 자료집.

소날리 샤마크 프레슬리 저·이지수 역(2014).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린비

유동철·김두례·이찬화·강지영(2013).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부산복지개발원.

이선우·김용득·장기성·황소진·김두례(2014). 「부산시 장애인 주거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자립생활컨퍼런스 자료집(201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자립생활컨퍼런스 자료집(201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자립생활컨퍼런스 자료집(201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톰 셰익스피어 저·이지수 역(2013). 「장애학의 쟁점」. 학지사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장애인개발원(2013). 「장애인복지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거주시설의 관점에서」. 201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황보람·이진열·배한나·김두례(20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Kittay, E. F.(1990). 「Love's Labou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Walker, A. with Townsens, P.(1981). 「Disability in Britain : a Manifesto of rights」. Oxford: Martin Rotertson.

【발제2토론1】

## 장애인의 자립생활, 선택권은 당사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송 정 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 1. 열며 :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발제자는 여러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결론부분에서 소개하였는데 첫째, 시설서비스 이용 적격심사와 진입과정의 체계화, 둘째, 앞서 언급한 거주시설 유형의 다양화,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넷째, 24시간 장애인 응급보호시스템의 마련, 다섯째,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문화 및 여가에의 접근 등이 그것이다.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며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그것도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얼까. 이 논의가 기록상 남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현재 전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16.4% 밖에 되지 않는다.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버스의 31.5%까지 도입하겠다는 정부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현 저상버스 도입률은 사실상 2016년까지 41.5%를 도입하겠다는 정부계획조차 불이행할 가능성이 큰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국가인권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법정대수<sup>7)</sup>를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 그 기한을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어떤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궁금해서 하는 물음이다.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호.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2호.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만약 이 조차도 어렵다면,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가 궁금하다. 즉 ‘거주시설 유형의 다양화’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복지부가 정책을 체계화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토론회에 참석하는 복지공무원 혹은 과장이 잘 들었다가 업무에 참고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자료 중 하나로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더 이 토론회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자립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자립지원정책에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에 관해 논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의견이나마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누가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은 바로 장애인복지법 제4장이다. 여기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은 누구일까.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살펴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뜻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15가지 장애 유형에 속하는 장애(손상)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보통 1~2급(지적3급 포함)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 칭한다. 즉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은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실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어릴 적 소아마비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한쪽 다리길이가 짧아 상당히 절뚝거리는데, 그렇다고 걷기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보니 4급장애판정을 받았다. 4급이다 보니 여러 지원서비스에서 제외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보행이 가능했기에 출산 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출산과 산후조리 과정에서 몸에 무리를 겪어 의학적으로 진단되지 않는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는 것도 아팠고, 집안일을 하다보면 온몸에 통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지내야했다. 몇 번이고

병원에 갔었지만, 이상은 없다는 결과가 나와 당사자도 미칠 노릇이라고 했다. 10년 이상 이런 상태로 살면서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어린 자녀가 집안일의 많은 부분을 맡아 하다 보니, 차라리 자신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심정으로 산다고. 그럼에도 이 여성은 활동보조도, 보장구도, 주거편의지원도 받지 못한다. 그녀가 보행가능한 4급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은 다양한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 장애 정의, 직업재활서비스에 관한 장애정의, 자립생활서비스에 관한 장애정의가 다르다. 재활법에서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의 주요 생활활동 중 하나 이상을 상당히 제한하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손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개인’을 의미한다. 즉 반드시 의학적 진단에 의하지 않아도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장차법)에서조차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의를 따르고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원칙은 ‘자기결정권’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외친 들,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준 들, 그 장애판단은 소위 의사 등 전문가의 병리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이는 인권적 측면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자립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이라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경험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필자의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일이다. 집안일 밖에 해보지 않은 주부인 여성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다. 이 여성은 비장애인이지만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것조차 해보지 않은 여성이었다. 남편없이, 아들 둘과 살아가야 한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무서워서 날마다 울고 또 울었다.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라 살 길은 더욱 막막했다. 다행이 이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른 여성의 지원이 있어 지금은 직장생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신체적 이상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도 지역사회 참여경험이 부재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찾지 못하고 헤맨다. 그런데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만 해당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자립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발제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어려움, 주거문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문제(탈시설장애인에 관한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문제 포함),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를 들었다. 분명 타당한 주장이며,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립생활서비스에 관해,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해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1년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실태조사<sup>8)</sup>가 있었다. 질문 중에 ‘시설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개인적 이용경험(일회성 견학·관람·나들이 제외)’에 관한 문항이 있었는데, 유효사례 449명 중 단 45명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설 외부의 기관이나 단체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행한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응답자의 38.4%).

8) 감정기·최복천·송정문. 2012.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편.

[표 2.36] 거주시설장애인의 '시설 외부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

구 분	빈 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정보가 없어서	122	30.2	38.4
시설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66	16.3	20.8
필요하지 않거나 흥미가 없어서	53	13.1	16.7
같이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서	25	6.2	7.9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마음에 걸려서	13	3.2	4.1
시간여유가 없어서	10	2.5	3.1
돈이 없어서	9	2.2	2.8
장애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여	8	2.0	2.5
교통편이 불편해서	6	1.5	1.9
기 타	6	1.5	1.9
유효사례 계	318	78.7	100.1
응답불능/응답거부	86	21.3	-
합 계	404	100.0	-

\*갑정기 외(2012).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 p131~132.

자립생활에 있어 다양한 자원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자원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사회 참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자립생활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조차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늘 보는 시설관계자 혹은 가족에게서 획득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경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실태조사 당시, 본인도 참여하였다. 몇몇 거주인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만나본 거주인 대부분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알지 못했다.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자립주택에 대한 정보도 전혀 몰랐다. 같은 질문을 시설측 관계자에게도 했다. 거의 모든 시설측 관계자로부터 동일한 대답을 들었는데,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정보를 제공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주인이 다수”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시설거주인 대다수가 지적장애가 심해, 혹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이는 이미 정보가 아니다.

독일의 경우, 거주시설평가 문항 중에 ‘거주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는지(장애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을 하는지)’가 있다<sup>9)</sup>.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정보제공은 중증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즉 장애특성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자립을 원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른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신세한탄으로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말로 이해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여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기관·학교·언론을 통해, 자립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모습을 담은 영상, 그리고 실제 그룹홈, 자립주택, 활동보조 서비스 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시설장애인은 누구나 일년에 1번씩은 자립생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체험의 날’을 제공한다든지, 동료상담가와의 멘토를 맺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자체도 시설측도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냥 ‘정보를 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똑같은 말을 매년 되풀이할 뿐이다.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보제공도 아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의 방식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복지부지침에 따라 거주시설에서는 이용거주인에게 자립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에게 그 장애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평가하지 않는다. 7포인트의 한자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제공만 하면 된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을 논하는데 있어 ‘어떻게 중증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장애인당사자의 알 권리는 자립생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9) Ministerium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 Westfalen. 2010. “Landesweit einheitlicher Rahmenprüfkatalog zur Überwachung von Betreuungseinrichtungen”.

‘알아야’ 자신의 삶의 방식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알 권리의 보장은 알아야 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 4. 마무리하며.

발제자는 서론에서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차별금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거주서비스 유형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단체는 매년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다.

이는 장애인 관련단체가 제시하는 의견은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것은 시설측의 반대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남도 단위 장애인단체 대다수가 모두 적극 찬성한 조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지 못했다. 이유는 관계 전문가 그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그룹이란,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였다. 물론 도의회 내에서의 정치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주요한 이유는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상임위 결정으로 인한 결과였다.

이처럼 예산지원이 가능하다해도 언제나 소위 전문가에게 의견을 다시 묻고 거기서 수렴되어야 어느 정도나마 받아들여진다.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전문가의 동의하에 주어지고 있다. 장애인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넘어선 권한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복지부의 장애관정체계 개편과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은 당사자문제에 있어 확고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가 모두 옳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각 관련분야의 협력은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자립생활에 있어 핵심이기도 한 ‘자기결정권’이란 것이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에게 얼마나 부여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장애인관련 서비스, 장애인정책, 장애인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여도 진정한 의미의 자립생활일 수 없다. 따라서 각종 서비스의 절차상, 제도상, 입법과정 등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관한 점검 또한 자립생활을 논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러한 토론 자리를 통해서나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 참고자료 >

감정가최복천·송정문. 2012.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 경남: 경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편. pp131~132.

송정문·이진숙. 2014. “독일과 한국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5: 113-135.

Ministerium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 Westfalen. 2010. “Landesweit einheitlicher Rahmenprüfkatalog zur Überwachung von Betreuungseinrichtungen” : 독일 NRW주 노동보건복지부. 2010. “요양주거시설의 감사를 위한 공식 체크리스트”.

【발제2토론2】

## 탈시설을 중심으로 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최영이(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두레 연구위원의 발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부산시는 2012년 이후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마련하고 수행해오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위탁 운영한 체험홈 사업을 통하여 이용 장애인이 자립생활 체험을 경험토록 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지역사회로의 자립생활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고, 기존의 생활시설 운영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라 하기는 어렵다. 2012년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역할 변화, 즉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의 변화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정책 등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진행되던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 전환에 대한 요구가 누적되어 드러나고,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와 투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일부 사업이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타 시도의 사업 진행과 비교하면 시기적으로 뒤쳐져 있고, 양과 질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탈시설 당사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탈시설 지원센터 등의 체계 구축 등 타 시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뒤늦게 조금씩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통해서 부산형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 지역사회이용시설 - 자립생활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양적, 질적 성과를 낸다면 부산의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정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거주시설 이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 지역사회이용시설 - 자립생활센터 간의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 부산 지역의 장애인복지 현장에서의 반향을 크지 않은 점이 아쉽다.

김두레 연구위원의 발제에 담겨있는 추진 과제에 더불어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추가로 논의되고, 심화되어 담겼으면 한다.

먼저 시설 거주가 전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거주시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한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립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어떤 형태의 거주공간에 살고 싶은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로 자립할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개인의 요구를 취합해서 그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토록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하여,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립생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뉴얼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거주시설, 각 자립생활센터 별로 다양한 방식의 지역사회 정보제공, 자립생활 기술훈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 경험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모아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기술 향상에 대한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이용시설, 자립생활센터 공동 매뉴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시설에서부터 지역사회 연계 방식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접하고, 각 기관의 협력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체험을 거쳐, 자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기관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립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거주시설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대한 심리적인 동기를 심어줄 수 있다.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 과정은 전문가 그룹이나 자립생활센터의 탈시설 지원 노력 이상의 성과를 보인다.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이용시설, 자립생활센터가

공동의 매뉴얼을 구성할 때 이러한 동료 간의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적으로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의 근거와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탈시설 - 자립생활 전환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거주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수렴하거나 자립생활 기술훈련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탈시설 - 자립생활 전환센터 구성에 대한 요구가 모이고, 역할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탈시설 - 자립생활 전환센터의 역할을 그려보자면, 거주시설 - 지역사회이용시설 - 자립생활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 자립생활기술훈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보완하는 것,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른 개별 지원을 연계하는 것, 탈시설 - 자립생활 전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것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의 역할을 탈시설 - 자립생활 전환센터에서 수행한다면 거주시설의 과제인 소규모화 및 자립생활센터의 탈시설 지원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다.

탈시설 - 자립생활 전환센터가 구축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자립생활 매뉴얼이 운영되어 활발하게 자립생활 전환 과정이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큰 산이 있는데, 바로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주거 공간 확보다. 과도한 주거 공간 마련 비용이나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의 부족 현상은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장애인이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문제나 사회문화적 이유로 이 조차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자신이 기존에 맺었던 관계망 속에서 안정적인 지역사회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현실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발제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장애인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섬과 같이 독립하는 것이 자립생활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연대하는 마음과 자세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립생활이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가 시설 수용, 분리 중심의 방법을 채택했던 이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연대하거나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공동체를 훼손하거나 부담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다. 이것을 쉽게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편견과 차별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연대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체가 함께 찾고,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델이 예전의 “골목 문화”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마음으로 연대하고, 능력만큼 기여하는 문화를 장애인운동에서 만들어보았으면 한다. 이 또한 많은 투쟁의 과정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장애인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투쟁의 과정에 앞장서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대구)

#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대구지역)

## 행사개요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장애인직능단체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일 시: 2015. 4. 10(금) 14:00~16:00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의실(3층)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14:00~14:05	개회선언
14:05~14:10	기념사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축 사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명애 대표
	좌장: 권혁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14:10~14:30	[발제1]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30~14:50	[발제2]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 박주국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14:50~15:00	휴식
15:00~15:30	(토론) 노금호 대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예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상임 변호사
15:3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회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1]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sup>1)</sup>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서론

과거에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주어지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개념은 이제 ‘당사자주의’와 ‘권리’의 관점에서 차별금지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이러한 복지 환경의 변화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의 제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대구시 의회에서도 2011년에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와 인권보장 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와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대구시 차원에서도 장애인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 발표의 목적은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동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1) 본 원고는 2014년 대구광역시 용역으로 대구대학교(책임연구원 조한진)가 수행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에서 발췌하였다.

## II. 분야별 단계별 계획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의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비 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장벽 없는 대구 만들기					
목 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철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분 야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접근권·이동 권	자립생활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문화권
기 본 과 제	<p>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견표명 보장</p> <p>장애인 차별금지·인권 보장 기반 구축</p> <p>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p> <p>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p> <p>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인권정책 발굴</p>	<p>장애인 권리 기반의 교통 환경 조성</p> <p>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인증제 확대</p> <p>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p>	<p>시설화 방지 및 시설 내 인권보장</p> <p>지역사회 전환지원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책임 강화</p> <p>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주거·활동 보조 지원 강화</p> <p>장애유형별·연령별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와 정책개발</p>	<p>기본권으로서의 의료지원 보장</p> <p>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 강화</p> <p>장애인보조기구 지원·급여·전문성 확대</p>	<p>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공공고용제 도입</p> <p>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p> <p>임금평등조치</p> <p>사업주 인식개선과 지원</p>	<p>기초교육 기회 확대</p> <p>성인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p> <p>장애유형·성별 맞춤형 교육</p> <p>장애인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접근권 강화</p> <p>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저변 확대</p>

<그림 1>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의 체계

기본계획의 비전에는 그 동안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의미로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장벽 없는 대구 만들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비전에서 기본계획은 단순히 대상자로서의 욕구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철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인권과 복지가 때려야 뗄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둘 중 하나의 개념만이 강조될 경우에 자칫 공허하거나 그 방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에 기본계획은 다시 6개 분야로 나뉘지는데, ‘권익보호와 차별시정’분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철폐’라는 목표에서, 접근권이동권, 자립생활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문화권 분야는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목표에서 각각 비롯된 것이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이 6개 분야에서 총 24개의 기본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각 분야별 기본과제에 따른 단계별 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 1) 추진 배경

1990년대 유엔 총회에서 ‘세계장애인의 해’, ‘세계장애인 10년’의 선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태 장애인 10년’의 선포 등, 장애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성취로 이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이 중심이 된 실질적인 시민권 확보 운동은 법적·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구시 역시 2006년 서울 인천에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고 200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 2012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구시대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이 만연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 사후적인 권리구제와 차별시정을 하기 위한 전문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속 ‘대구경북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장애인인권교육 네트워크,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비롯한 적지 않은 민간 장애인기관단체가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법률적 지위·권한의 부족, 열악한 지원 환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성이 높고 실효적인 장애인 권익보호·차별시정을 위한 ‘권리옹호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 2) 추진 방향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사회통합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 접근해야 하며,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표명된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장애인의 경험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뿌리 깊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집단 거주시설 등에서의 차별 등을 감시하고 예방·차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을 공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권리의 보장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소수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여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거주지역과 국적 등에 의하여 배제되어 있는 타 지역 장애인과 이주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인권적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추진 과제

<표 1> ‘권익보호와 차별시정’의 추진 과제

단기	중장기
<p><b>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견표명 보장</b></p> <p>정책의 수립·심의 시 장애인 참여 장애인단체 지원·협력 체계 구축</p>	<p><b>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반 구축</b></p> <p>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장애포괄 정책입안 원칙의 수립 장애인인권 영향평가제도 도입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p>
<p><b>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반 구축</b></p> <p>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정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 배치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위원회 강화</p>	<p><b>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b></p> <p>장애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p>

단기	중장기
<p><b>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b></p> <p>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지표 마련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p>	<p><b>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인권정책 발굴</b></p> <p>다 지방자치단체 거주 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 외국인 이주자의 권리보장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p>

**(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견표명 보장**

① 정책의 수립·심의 시 장애인 참여

가. 주요 정책 심의에 참여

대구시의 주요 정책을 검토·심의하는 시 위원회 위원으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등과 같은 직접적 연계 사안의 위원회 뿐 아니라 기획, 행정, 건설, 보건, 경제, 환경 등 시 전반의 위원회 위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권 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장애 포괄적 정책 입안·수립, 시민의식 제고를 촉진할 수 있다. 관련 자치법규로는 대구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가 있다.

나. 장애인 인권증진 참여단의 설치·운영

대구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존중을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 참여단을 설치·운영한다. 참여단은 일반적인 장애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이 아닌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일정 인원은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참여단은 2014년 대구시에서 실시한 시정 주제에 따른 500인 시민원탁회의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수 장애인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시설에 거주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장애인 참여

정부는 동 기능 전환의 확대시행 계획을 통해 동사무소 일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지역적 범위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로, 장애인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가장 빈번히 부딪히는 장이기에 가장 변화해야 할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역문제, 마을환경, 자율방재,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설 등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웃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장애인단체 지원·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의 인권침해·차별의 시정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의 안정적인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함께 이들의 의견 표명 보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장애인차별의 사례와 해결방법에 관하여 일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확대하여 협의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단계별 계획

<표 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견표명 보장'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정책의 수립·심의를 위한 장애인 참여	주요 정책 심의에 참여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이행 여부 지도·감독	정책과 평가	-	-
	장애인 인권증진 참여단의 설치·운영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이행 여부 지도·감독	정책과 평가	-	-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장애인 참여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이행 여부 지도·감독	정책과 평가	-	-
장애인단체 지원·협력 체계 구축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이행 여부 지도·감독	정책과 평가	-	-

## (2)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반 구축

### ①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이 실질적인 거주를 하는 동안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주시설, 병의원에 대한 차별금지·인권보장 매뉴얼의 개발을 포함하여야 한다. 더불어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로 인해 취약한 이들을 위한 세부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재원의 마련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의 범위를 관할 지역 내 병의원, 거주시설까지 확대하고, 주요 차별 사례와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공시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 시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당사자적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차별 상담, 관련 기관 운영, 피해자의 긴급분리 조치가 가능한 임시주거지 마련, 피해자 회복 지원, 공익소송단 운영, 법률정보 등의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조례에 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전문적인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구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과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조례상의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와 제반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시에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과 같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담당관 후보의 심의·승인은 인권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담당관이 지역 내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전반 업무를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대구시의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에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이 해촉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권익옹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촉할 수 없게 하고, 해촉의 사유를 횡령, 인권침해, 비리 등의 경력으로 판결을 받은 자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②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현행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홍보, 교육,

차별사례 실태조사 등의 간접적 예방·홍보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직접적 시정조치와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향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사업을 포함하여 차별의 접수와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 행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이 실제로 가능한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가정·시설·병원에서의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우선 분리 조치를 요하는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간 거주가 아닌 임시·일시 거주가 가능한 주거지원 공간과 함께, 피해자의 장애 정도·특성이 고려된 활동지원서비스, 최소 생계 지원 등 인적·물적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건 해결 후에도 피해자가 가해가 일어난 공간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서적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 이 외에 대구시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정보 자문 및 공익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 배치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조례의 일상적인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담당관의 역할로는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사항 이행, 인권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정책의 수립·검토·제안 등이 있다. 또한 관련 장애인단체와의 협력 등, 권리옹호를 위해 시장 혹은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 ⑤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위원회 강화

현재 연 1회 정기회의(매년 1월)의 위원회 운영 주기를 단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단체 및 관련 기관의 장이 아닌 일반 장애인 당사자들이 언제나 참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인권증진참여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위원회가 연례행사가 아니라 지역 내 장애인 차별의 실태가 드러나고 대책을 강구하는 실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공개 및 구군청, 주민센터 관련 담당자들과의 업무 연락을 원활히 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집행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 ⑥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행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1항에서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첫째, 정책과 재정 운용에 있어서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둘째, 성 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셋째, 성 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의식을 제고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지 예산의 도입처럼 예산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지 예산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대구시 조례로서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 ⑦ 장애포괄 정책입안 원칙의 수립

대구시는 복지 영역 등에서만 국한되어 특수한 계층으로서 장애인을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정에서 장애포괄 정책입안의 원칙을 수립하여 보편적 시정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구시 사업의 집행을 위한 내부 지침들에 사업별 장애인의 이용, 참여, 자격, 권한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할 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⑧ 장애인인권 영향평가제도 도입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 성별 영향평가는 현존하는 정책·프로그램·법제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모든 정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지 예산 편성, 장애포괄 정책입안 원칙 수립 등과 함께 장애인인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과 대구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제도·정책사업의 입안 등에 있어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표명을 보장할 수 있다.

⑨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인의 권리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대구시의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내용, 인권 현황, 관련 정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이 포함된 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발간자료 원문은 대구시의회 및 지역 내 등록 장애인 단체·기관 등에 보고·배포하고, 요약본을 구군청과 주민센터 등에 보급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발간 시 연령 및 발달장애, 사정각 장애 등의 유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단어, 그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⑩ 단계별 계획

<표 3>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반 구축'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정비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	-	-	-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의견 검토, 타 지역 운영사례 분석	차별 상담과 인권교육 지원 확대, 대구시 1개소 시범사업 운영	대구시 1개소 운영	구군 센터 설치 검토	구군 센터 거점별 2~3곳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의견 검토	장애여성·장애 남성 쉼터 각 1개소	-	장애여성·장애 남성 쉼터 각 2개소	-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 배치	의견 검토	인력 배치	-	-	-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위원회 강화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	-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시범실시, 이행여부지도·감독	정착
장애포괄 정책입안 원칙의 수립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시범실시, 이행여부지도·감독	정착
장애인인권 영향평가제도 도입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시범실시, 이행여부지도·감독	정착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이행여부지도·감독	정착

### (3)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①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지표 마련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실태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장애 유형, 성, 연령 등을 고려한 지표가 먼저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②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대구시 조례에는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주기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차별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를 관할 지역 내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기본으로 거주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 전반으로 명시하여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복지시설이라 함은 장애인거주시설 20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26개소, 장애인복지관 6개소, 주간보호시설 32개소, 체육시설 2개소, 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4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보호작업장 28개소, 근로사업장 5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등을 말한다. 더불어 종교시설, 교육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단속도 필요하다.

#### ③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구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지역 내 장애인 차별상담·인권

지원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기초 자치단체별, 해당 기관별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에 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적으로 장애인 차별의 사례를 접수하고 공공민간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장애인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당사자적 전문성이 보완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견된 차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상시적인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장애인이 차별금지인권증진에 대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단계별 계획

<표 4>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지표 마련	의견 검토	지표·지수 개발	수정·보완	-	-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1차 실태조사	2차 실태조사	3차 실태조사	4차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

### (4) 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

#### ① 장애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성의 원칙'(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는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보장, 아동의 의사결정과 참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와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모로부터의 분리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기 보다는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등으로부터의 양육, 보육

교육,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장애와 연령이 고려된 가운데 통합적 지원 체계의 마련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 ②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우리사회에서 오랜 세월 지속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은 자아 존중감의 저하, 사회성의 감소 등 생의 주기별로 지속적인 차별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장애여성은 여성, 장애, 빈곤이라는 중첩된 차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남성의 취업률 44.4%에 비하여 장애여성의 취업률은 22.7%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중졸 이상 학력이 32.8%로 장애남성의 63.0%에 비하여 역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 자녀 양육 등에서의 차별에 쉽게 노출되고 성·가정 폭력의 위험도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 유형, 연령, 장애 정도 등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장 방안의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 ③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대구시 장애인 인구 116,567명 중 안면장애인은 144명(0.1%), 심장장애인은 260명(0.2%), 뇌전증장애인(간질장애인)은 297명(0.3%), 간장애인은 405명(0.3%), 호흡기장애인은 494명(0.4%), 장루요루 장애인은 590명(0.5%)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이로 인해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개인적 어려움 등이 제대로 드러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연골무형성증 등으로 인한 저신장 장애인의 경우, 2000년 보건복지부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체장애로 포함되었으나 지체장애 외 다른 장애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등급인 6급 5호 또는 4호로 되어 지원이 거의 없게 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소수 장애인(또는 저출현 장애인)의 의사전달 창구, 시정 참여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고, 장애 유형·특성에 따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 장애인의 경우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등급 기준이 아닌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편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선도적인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④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그 동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주로 치료를 발미로 한 사회적 격리에 초점을 두었기에, 그들의 권리가 아닌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더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정신적 장애인들은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집단 (성)폭력, 강제 노동, 임금 착취 등 시대착오적인 차별들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다. 발달장애인들의 비자의 시설 입소,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조금씩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생활훈련·치료라는 이유로 인하여 기본적인 알 권리, 사생활·신체의 자유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장애인권리협약, MI 원칙에 기준한, 지역사회 내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의 연구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⑤ 단계별 계획

<표 5> ‘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이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의견 검토	연구용역, 정책 개발	시범사업 실시	정책 평가, 모니터링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의견 검토	연구용역, 정책 개발	시범사업 실시	정책 평가, 모니터링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의견 검토	연구용역, 정책 개발	시범사업 실시	정책 평가, 모니터링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의견 검토	연구용역, 정책 개발	시범사업 실시	정책 평가, 모니터링

(5)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인권정책 발굴

①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 장애인의 권리 보장

현행 대구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서 모든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대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원에 있어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아온 장애인들도 권리의 주체로 인정된다.

이에 장애인 차별 신고의 접수와 지원 연계를 포함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금 지급,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입주 등에 있어 지역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를 포함한 경상권역의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음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유도하고 나아가 대구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타 지역에까지 요구할 수 있다.

## ② 장애 외국인 이주자의 권리 보장

대구시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 현황(201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는 총 34,976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이는 대구 주민등록 인구 2,501,588명의 1.4%를 차지한다. 체류 목적별로 보면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혼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이며, 국적별로는 재중동포(조선족)를 포함한 중국인이 12,310명(35.2%)으로 가장 많다. 이 외에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미국 등의 국적자가 있다. 이들은 공장이 밀집한 달서구, 달성군, 북구에 비교적 많이 살고 있다.

그런데 국적과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그 동안 국가 단위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장애 외국인 이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2007년 3,967명, 2008년 5,221명, 2009년 5,231명으로 꾸준히 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이 산재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인정 판정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산재를 당한 이들은 위 수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침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들도 정부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등의 생활환경·노동환경을 포함한 인권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단계별 계획

<표 6>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인권정책 발굴’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 장애인의 권리보장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장애 외국인 이주자의 권리보장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2. 접근권·이동권 보장

### 1) 추진 배경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교통, 도로환경, 통신설비, 건물, 정보, 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은 가로막히거나 빼어놓아지거나 주류와 갈라지거나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격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제20조(개인의 이동), 제21조(표현·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국제적 기준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접근권·이동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2007년 대구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접근권·이동권, 정보환경, 의사소통 체계 등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편리하게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편의시설 등의 양적 부족함과 지원 수준의 열악함의 문제는 물론, 의사소통 기반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구시민으로서 장애인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동, 의사소통 등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접근성의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 2) 추진 방향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접근성에서 지역사회가 일차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두어 보편적인 교통 환경에서의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인증제 확대,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지역 시설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사소통 종합지원 대책이 수립되고 의사소통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3) 추진 과제

<표 7> '접근권이동권 보장'의 추진 과제

단기	중장기
<p><b>장애인 권리 기반의 교통 환경 조성</b>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와 서비스의 향상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 인프라의 확대                      도로인도의 통행보행권 보장</p> <p><b>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인증제 확대</b>                      공공·다중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구성·운영</p> <p><b>건축물의 무장애 인증제 활성화</b>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종합 지원 대책 수립</p>	<p><b>장애인 권리 기반의 교통 환경 조성</b>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확대</p> <p><b>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인증제 확대</b>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가이드라인 마련</p> <p><b>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b>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p>

### (1) 장애인 권리 기반의 교통 환경 조성

#### ①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와 서비스의 향상

가.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화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는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2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2016년까지 624대(40%)의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말 기준 대구시 전체 1,562대 시내버스 중 201대(13%)만이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법규와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준하여 2019년까지 저상버스

50%의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후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대구시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물량이 법정 대수인 141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 더불어 별 다른 근거 없이 제시된 200명당 1대 기준을 대구시 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정하고, 추가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운전자 등 인력에 대한 장애감수성·인권 교육 의무화와 정규직화

버스·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이동지원센터 내 일반택시 운전자 포함)로부터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비하, 탑승 거부 등의 사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심리적 위축과 상처를 주어 사회활동을 제약한다. 따라서 장애인 승객을 대하는 운전자의 경우 정기적인 장애감수성·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 승객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질이 높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약직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라. 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 내 정보 접근성 향상

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내 사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음성 안내, 차량 내·외부 자막표시기 등과 같은 장치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른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장치들의 설치를 대구시가 의무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②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 인프라의 확대

#### 가. 도시철도 이동편의와 안전 인프라의 확대

지하철 1호선, 2호선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음성유도기, 스크린도어의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에스컬레이터, 점자블록, 유도안내 시설 부문에서 기준 적합 설치율이 각각 57.1%, 31.1%, 32.2%, 35.0%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 2호선의 경우 통로와 점자블록에서 기준 적합 설치율이 각각 54.8%, 38.5%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에는 지상 모노레일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적절한 대피 방안 마련, 역무원 순회방식이 아닌 1개 역사 당 1인 이상의 전문 역무원 상주가 요구된다. 이밖에

기존에 설치된 난간형 스크린도어 역시 완전 밀폐형으로 전환하는 등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나.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대구시 2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변 보도 부문에서 휠체어의 진출입이 가능한 정류장이 41.5%로 절반 이하에 그치며, 점자블록은 50% 이상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시설 역시 점자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버스 정류장으로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장애 유형이 고려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류장 내 안내시설의 점자 안내, 장애인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버튼 설치, 주변 차도와 인도의 높낮이 조정, 주정차 문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 다. 시외·고속 버스터미널에 대한 장애인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조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수단에는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가 모두 포함된다. 즉,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사업이 모두 포함되지만, 현재는 시내버스만이 저상버스의 도입 범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동교통 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의 시외버스 이용은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는 그 자체로 심각한 장애인 차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관할 지역 내 시외·고속 버스터미널 사업주와의 연계를 통하여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터미널 내 매표시설, 위생시설, 소방시설, 승하차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도로·인도의 통행·보행권 보장

#### 가. 보행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강화

인도와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각 구군 등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

#### 나.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등 보조장치의 설치 확대

대구시는 현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는 전체 1,493개소 중 296개소(19.8%)에 그치며, 보행신호 등 보조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6차로 이상 횡단보도 933개소 중 730개소(78.2%)에 불과하다. 이에 음향신호기와 보조장치 등을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부터 모두 설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무장애 횡단보도 확대

대구시는 취약 도로시설물 정비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2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육교 이동편의시설은 손잡이 높이·지름 부문에서 98.1%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잡이의 접자 표시

부문에서 95.0% 이상 미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육교나 지하상가 이외에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동등한 접근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반월당네거리, 봉산육거리, 큰장네거리, 동산네거리 등을 포함한 주요 시 교차로를 무장애 횡단보도로 설치해 나가며, 기존에 설치된 육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향후에는 육교 설치를 최소화하고 지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라.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는 공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대구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장 중에는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방대하게 적치된 공사 기자재 등으로 인하여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도로 이동해야 하거나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 공사장에 대한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 ④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확대

##### 가. 운전면허 취득 지원 조례의 제정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단순 이동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의지를 높이고 생활 전반의 서비스와의 접근·교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중요하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 중 52.7%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아직 2012년 기준 5.4%(136,791명)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인 55.7%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차량 개조, 운전교육 등을 통해 면허 취득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폭넓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나. 운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전면허 연습장 확대

장애인의 면허 취득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는 개인의 의사와 장애로 인한 것도 있으나, 운전 연습이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운전교육을 시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7년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 등의 협력으로 인해 설치될 예정인 대구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지원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운전 교육, 면허 취득, 운전 정보 제공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험응시 수수료, 차량 개조 상담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

⑤ 단계별 계획

<표 8> '장애인 권리 기반의 교통 환경 조성'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와 서비스의 향상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화	의견 검토, 예산 수립, 자치법규 제개정	도입률 23%	도입률 32%	도입률 41%, 도입률 100% 확보 계획 수립	도입률 50%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25대 도입(총 117대)	24대 도입(총 141대)	수요조사, 추가 확보 계획 수립	추가 확보
	운전자 등 인력에 대한 장애감수성인권 교육 의무화와 정규직화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
	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 내 정보 접근성 향상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 인프라의 확대	도시철도 이동편의와 안전 인프라의 확대	1·2호선 의견 검토, 3호선 이동편의안전 연구	1·2호선 설치율 70%, 3호선 이동편의 조치 시행	1·2호선 설치율 100%, 3호선 이동편의 지도·감독	정착	-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의견 검토	점자블록점 자안내 설치율 50%, 진출입 이동편의 설치율 70%	점자블록점 자안내 설치율 100%, 진출입 이동편의 설치율 100%	-	-
	시외고속 버스터미널에 대한 장애인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조치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편의시설 설치율 30%	설치율 65%	설치율 100%	-

(2) 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인증제 확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도로·인도의 통행·보행권 보장	보행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강화	의견 검토	인력·장비 확대	-	-	-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등 보조장치의 설치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음향신호기·보조장치 설치율 50%	설치율 75%	설치율 100%	-
	도로시설물 정비 및 무장애 횡단보도 확대	의견 검토	대상 실태조사	시설물 정비 및 횡단보도 확대	-	-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는 공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확대	운전면허 취득 지원 조례의 제정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운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전면허 연습장 확대	-	-	운전지원센터 설치 1개소	연습장 설치 1개소	연습장 추가 설치 1개소

① 공공다중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대구시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그동안 점증하였으나 이용자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도록 행정지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대구시가 추진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의 정례적인 운영은 편의시설 설치율의 증진과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독특한 유형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조사·점검하고 지적 사항을 발굴하는 활동을 확대하여, 선거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전 점검, 편의시설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안내 등의 활동을 통해 정보 제공과 관리·감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 ③ 건축물의 무장애 인증제 활성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 개선의 기회를 만들고자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도시, 구역, 개별 시설(도로·교통·여객 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을 포함한다. 이에 대구시 달서구는 2014년 4월 ‘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본청 차원에서의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는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와의 상호보완을 통해 건축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적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사후의 시간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본격 시행은 건축물의 설계나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도시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시설물의 설계, 인허가 단계부터 시공 단계, 사용 승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편의시설 설치의 사전 협의 등 협조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증 지정 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결탁부패의 방지가 필요하다.

### ④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되는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장애화를 감안하여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지역 내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촉구할 수 있다. 공공·민간 건물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구체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등으로 인한 신규 설립 시설 및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시범 적용해 보고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⑤ 단계별 계획

<표 9> '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인증제 확대'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다중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현 적정 설치율 65%	설치율 77%	설치율 89%	설치율 100%	-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구성·운영	정착	-	-
건축물의 무장애 인증제 활성화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시범사업 운영	확대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가이드라인 마련	-	-	의견 검토	가이드라인 수립	우선적용 시설 시범 실시

(3)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①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종합 지원 대책 수립

비장애인과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 상호 간의 차별과 편견은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언어상의 대립, 의사소통의 부재, 적절한 소통 방법의 부재 등은 당사자들 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게 하며, 이는 의도와 관계없이 인권침해의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립적인 삶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있어 특히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사·청각 중복장애인,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접근성의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②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기존의 일면적인 수화통역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확대하여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사는 물론, 발달언어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인력 파견,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화통역사를 비롯한 의사소통 보조 인력의 양성, 공공민간 시설에서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의 점검·지도, 홍보자료·인쇄물의 변환 등을 담당할 수 있다.

### ③ 단계별 계획

<표 10>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종합 지원 대책 수립	의견 검토	대책 수립	-	-	-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	-	의견 검토	센터 설치	-

## 3. 자립생활권 보장

### 1) 추진 배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통합)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거주시설에서의 집단생활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한 가운데 자립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진행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연구에서는 시설화 방지,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전환 지원, 독립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들이 당사자들의 우선적 요구에 따라 소득, 활동 지원, 주거 지원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유형별, 연령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내 세부적인 지원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화 방지,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정착 초기 지원 등의 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대상·자격·급여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대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제점 개선과 보완책 마련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추진 방향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활동지원 등의 보조인력 지원,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선행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퇴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 세 가지의 불안정함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경제적 지원 부분에서 시설화 방지 및 탈시설·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 대상금액의 현실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소 생계보장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대구시도 시설 퇴소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초기 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당장에 필요한 보조기구, 생활용품,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거주시설에서의 집단생활이 아닌 이상, 장애가 중할수록 최소한의 생존 또는 일신상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면 탈시설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따라서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격의 한계, 급여의 비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권리로서(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비한 주거 지원 정책 역시 자립생활로 진입하는 데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공적 지원의 미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불안정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거 문제로 직결된다. 가족의 보호에서 또는 시설의 보호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고자 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자립생활의 시도는 굉장히 어렵다. 이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 공공주택 전체 물량 확대와 장애인 입주 물량 확대,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전환주거 공간 확충 등이 중요하다.

이런 기초적이고 물리적인 과제 외에도 장애유형, 성별, 연령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섬세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립생활 지원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3) 추진 과제

<표 11> '자립생활권 보장'의 추진 과제

단기	중장기
<p><b>시설화 방지 및 시설 내 거주인 인권보장</b> 시설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설 거주인의 인권 보장과 권한 강화</p>	<p><b>시설화 방지 및 시설 내 거주인 인권보장</b> 집단 거주시설 정책 축소와 점진적 폐기</p>
<p><b>지역사회 전환지원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책임 강화</b> 탈시설화를 위한 연차 계획의 수립·추진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과 긴급생계지원 확대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전환주거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와 권한 강화</p>	<p><b>지역사회 전환지원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책임 강화</b> 전환지원서비스 전담부서 설치 및 시설 거주인에 대한 홍보·상담·교육·육구조사 등의 정기 실시</p>
<p><b>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주거·활동보조 지원의 강화</b> 소득지원 정책의 확대·강화 주거지원 정책의 확대·강화 활동지원제도의 확대·강화</p>	<p><b>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주거·활동보조 지원의 강화</b> 소득지원 정책의 확대·강화</p>
<p><b>장애유형별·연령별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와 정책 개발</b>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모델 연구개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자립생활 지원 모델 연구개발 장애청소년부터의 자립생활 전환교육 체계 연구개발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개발</p>	

#### (1) 시설화 방지 및 시설 내 거주인 인권보장

##### ① 시설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가. 자립생활 지원 신청권의 정비와 구체화

대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신청)에 따르면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친족, 후견인 등 기타 관계인은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신청의 방법·경로, 신청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망, 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체계 등의 부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신청 권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명목상의 조례 문구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의 구체화된 형태를 체계화하여 자립생활 지원의 신청 및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심사연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급여량의 판정에 있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센터 등을 활용하여 구성된 동료위원회를 통하여 자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 나. 거주시설 퇴소 연령 설정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는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은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 입소하는 계기가 비자의적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입소하게 되면 40.9%가 20~30년, 21.4%가 30년 이상을 장기간 거주하게 되어 사실상 평생 살아가게 된다(대구경북연구원, 2012).

이에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권고하는 거주시설 퇴소 연령을 설정하고, 해당 근거를 자치법규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한 해 시설 퇴소 장애인의 수치를 예상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지원 체계의 마련과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장애아동에 대한 대안적 양육체계 개발·지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직계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거주시설로의 입소는 가장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거주시설의 입소 이유를 보면 부모 없이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가 전체 입소자의 46.2%에 달하며, 36.0%는 가족이 있지만 실제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연구원, 2012).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거주시설에서의 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대안가정의 형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안가정의 지원 목적과 방향을 자립생활로 명시하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 ② 시설 거주인의 인권 보장과 권한 강화

### 가. 시설 거주인 인권 보장의 홍보·교육

시설 거주인의 인권 감수성과 스스로의 자기주장, 자기결정권이 확보되는 가운데에서 탈시설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일회적인 자립생활 교육, 장애인 인권 교육 등의 접근으로만은 당사자가 스스로의 욕구를 발견하고 의지를 갖는 데에 한계가 있다. 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스스로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기결정이 유효해지는 경험들 속에서 의식과 의지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설 거주인이 요구할 수 있고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보장 항목(표 12)을 발표하고, 이를 당사자들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거주인의 입소 과정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와 시설 종사자 역시 기존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은 시설 자체 강사가 아니라 지역 외부 전문 교육단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검증된 이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시설 거주인의 시설 운영 직접 참여 경로의 확보

시설 거주인의 자기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설 거주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거주시설 이용인들이 자율적인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부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게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법인이 시설 운영 현황 등의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는 이사회를 비롯한 운영에 있어 주요한 회의·기구에 자치위원회와 일반 이용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2> 시설 이용인 인권 보장 항목 내용

단계	권리 항목 내용
시설 선택·입소 단계(3개)	입소 결정권, 서비스 정보 접근권, 계약 체결권

단계	권리 항목 내용
<p><b>시설 거주 단계(25개)</b></p>	<p>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7개):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자유로운 의복 선택을 위한 권리, 이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시설물에 대한 접근과 이동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적절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리</p> <p>건강하고 안전할 권리(3개):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p> <p>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4개): 하대 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성적 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연애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p> <p>사상양심종교정치적 자유(2개): 정치권, 종교의 자유</p> <p>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9개): 교육권,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사회보장수급권,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 선택권,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p>
<p><b>시설 퇴소 단계 (2개)</b></p>	<p>자립을 지원받을 권리, 퇴소 결정권</p>

출처: 유동철 · 김명연 · 박숙경 · 김정하 · 임소연 · 박영희 외(2013).

### ③ 집단 거주시설 정책 축소와 점진적 폐기

가. 집단 거주시설 정책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준과 같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기능을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하고 대신에 자립생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탈시설화 방향을 표명하고, 시설 보호 정책에 있어서 시설화 방지 및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 대구시 소재 거주시설의 총 입소 정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설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매년 기존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화 지원 목표 인원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본 계획에는 입소 인원 감소에 따른 기존 거주시설 종사자의 업무역할 전환 방향, 건물 활용 등에 대한 방향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나. 신규 거주시설의 설립 금지 및 기존 대형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 거주시설이 중앙정부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설립될 경우에 설립 당시 국고 보조와 지방비 매칭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되며(약 10억 원), 운영비 추가 지원, 종사자 수당 추가 지원 등의 예산이 매년 지방비 100%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정책 예산의 확대와 신규 정책의 시행 의지를 소극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대구시는 종합계획에 따라 대구시 거주시설 총 입소 정원 상한선을

통하여 추가적인 거주시설의 확충, 신규 설립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대신에 대구시의 재정을 통해 기존 20개소의 거주시설 중 정원이 100명이 넘는 대형시설 8개소를 소규모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④ 단계별 계획

<표 13> '시설화 방지 및 시설 내 거주인 인권보장'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자립생활 지원 신청권의 정비와 구체화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운영	추진경과 모니터링	정착	-
	거주시설 퇴소 연령 설정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도입 및 퇴소 수치 예측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장애아동에 대한 대안적 양육체계 개발·지원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기존 사업 확대	대안적 양육체계 개발	시범 운영	정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 거주인의 인권 보장과 권한 강화	시설 거주인 인권 보장의 홍보·교육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실시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시설 거주인의 시설 운영 직접 참여 경로의 확보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실시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집단 거주시설 정책 축소와 점진적 폐기	집단 거주시설 정책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계획 수립	추진경과 모니터링
	신규 거주시설의 설립 금지 및 기존 대형시설의 소규모화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신규 거주시설 설립 금지	소규모화 추진

## (2) 지역사회 전환지원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책임 강화

### ① 탈시설화를 위한 연차 계획의 수립·추진

가. 대구시 거주시설 전체 입소자 20% 탈시설화의 5개년 추진 계획과 재정 계획의 수립  
 서울시는 2014년 제1차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하여 향후 5년 내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20%(약 600명)의 탈시설화 추진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개인독립 가정(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 대책, 초기 정착금 지원, 퇴소자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확대 등 이에 필요한 세부 정책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의 권영진 시장 역시 2014년 5월 30일 지역 장애인단체들과의 정책공약 협약을 통해 “임기 내 전체 시설 입소자 20%의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9년까지 거주시설 20개소(정원 1,703명)의 현원 1,577명 기준으로 20%인 약 320명에 대한 연차적 탈시설화 지원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정책의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표 인원에 따른 세부 계획에는 시설 퇴소 및 지역 초기정착금의 확대,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 등 전환주거 공간의 확대,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신규 사업)의 실사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확대 등이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의 탈시설 지원 목표 인원의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조사·교육홍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공조 체계 마련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공공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1조(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등에 따라 대구시는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민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원의 노력에만 의지하고 있어, 포괄적인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탈시설화 추진 종합 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을 가진 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 이 센터가 민간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등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퇴소와 자립생활 희망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 서비스 연계·조정, 지역사회 인프라와의 협력 체계 구축, 사후 사례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다.

## ②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과 긴급생계지원 확대

대구시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 정착금 지원 사업은 현재 기금 이자를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의 연령과 장애 정도, 해당 연도의 물가 등을 반영한 증액이 어렵고,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재원이 불안정하다. 또한 당사자가 거주시설을 통하여 초기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 역시 시설을 통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퇴소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현재 시설 퇴소 초기정착금의 지원 금액을 1인당 최고 1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해당 연도의 물가와 당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신청·지급 방식 역시 시설을 통하지 않고 장애수당과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하고 직접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형태로 전환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탈시설 후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퇴소 후 기초생활 수급권 심사 기간 중의 소득보장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없을 경우에 초기 정착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긴급생계 급여가 규정되어 있으나 명확한 해석이 없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해석·지침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전환주거 확대

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은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지만 그

동안의 사회적 배제와 기회 박탈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과 자립 기술을 습득하기 힘들었던 이들이 한시적으로 머물며 자립 의지와 경험을 증진하는 전환주거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는 자립생활 체험홈 6개소와 자립생활가정 3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탈시설화 추진 종합 계획에 따른 목표 인원에 맞게 확대 설치될 필요가 있다.

### ④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와 권한 강화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하며(제53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54조). 이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제39조의 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명문화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설립·운영이 되기 시작한지 15년째가 되어가고 있으나, 자립생활센터는 현재 법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시설 등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 때문에 별도의 시설 운영지침이 부재하여 지역별로는 물론 지역 내에서도 서비스의 양과 질이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중앙정부에서의 법령 정비와 기준 마련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기준, 지역사회 중심 재활시설에 준하는 지원정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부분 민간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형태로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시설 및 타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를 위해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시설·복지시설로의 정기적인 방문, 이용자 상담, 욕구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역할은 추후 공적 전환 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전환지원서비스 전담부서 설치 및 시설 거주인에 대한 홍보·상담·교육

욕구조사 등의 정기 실시

현재 대구시의 장애인복지과에는 시설운영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 반면, 탈시설화 추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하고 있는 담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탈시설 수요 조사, 홍보, 교육, 상담, 연구 및 계획 수립,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⑥ 단계별 계획

<표 14> '지역사회 전환지원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책임 강화'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탈시설화를 위한 연차 계획의 수립·추진	대구시 거주시설 전체 입소자 20% 탈시설화의 5개년 추진 계획과 재정 계획의 수립	추진 계획과 재정 계획의 수립	79명 탈시설화 지원	79명 탈시설화 지원	79명 탈시설화 지원	79명 탈시설화 지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공공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립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센터 설립	정착	-	-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과 긴급생계지원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정착금 금액 확대	정착금 지원 인원 확대	정착	-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전환주거 확대		의견 검토, 예산 수립	총 20개소 확충	총 20개소 확충	총 20개소 확충	총 20개소 확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와 권한 강화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확대, 권한 강화	-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환지원서비스 전담부서 설치 및 시설 거주인에 대한 홍보·상담·교육·육구조사 등의 정기 실시	-	-	의견 검토, 예산 수립	부서 설치	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의 업무 공조

(3)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주거·활동보조 지원의 강화

① 소득지원 정책의 확대·강화

가. 장애(성인·아동)수당 지원제도 확대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

우리나라는 2010년 7월부터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의 보전이라는 두 기능을 모두 결합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대상자를 중증장애인(1급 ~ 3급 중복)으로 한정하고 급여액 역시 수급권자 기준 최대 30만원이 되지 않아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현행 장애성인 월 3만원, 장애아동 월 2만원의 수당 추가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당의 성격에 맞게 소득 기준이 아닌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보편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당 금액의 인상 기준과 대상자 기준 등을 명시한 자치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에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장애인가구 실태조사 및 최저생계 보장 대책 마련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소득보장(38.2%)이 단연 높았다. 그런데 장애인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전국 16.9%이며, 대구시 등록 장애인의 20%(약 2만 3천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제 등의 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빈곤 장애인 가구 중 43.3%는 비수급 상태로 추계된다(허선·권선진, 2009).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로 인한 만성적 빈곤에 빠져 있는 장애인 가구의 실태를 지역적으로 확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등의 기준에 따라 수급권을 신청·유지하였으나 탈락·중단된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주거지원 정책의 확대·강화

### 가. 주거취약 장애인에 대한 전월세 지원 사업 실시 및 임대주택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공공임대 보급률이 낮다. 그럼에도 영구국민임대 입주 우선권을 제외하고는 주거 빈곤 장애인에 대한 별다른 주택 공급 정책이 없다. 국토해양부의 2009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무주택 가구 중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 비중은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7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21.1%는 대출금 과 임대료의 부담이 생필품을 줄일 정도여서 일반 가구 7.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에는 현재 주거취약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주거 공급, 주거비 지원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별다른 주거실태조사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저소득 주거취약 장애인에 대한 전월세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을 공공임대 주택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나.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등은 입주하고 있는 당사자의 몸에 맞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에 대해 느끼는 편리성을 비교하였을 때,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국 평균 21.2%인데 반해, 대구시는 12.3%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현행 장애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자와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③ 활동지원제도의 확대·강화

### 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및 시 추가 지원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서비스이다. 그러나 정부의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달리 등록 장애인 1~2급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의 15% 정도만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급여 역시 취약가구와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월 최대 360시간(하루 평균 12시간)에 불과하여 제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등급 기준의 자격 제한으로 인해 실제 활동보조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의 실태를 확인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방안 마련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가구소득 기준과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2009년 최대 4만원이던 본인부담금은 2014년 최대 21만원까지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제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탈락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비용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서비스의 이용을 자진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대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단계별 계획

<표 15>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주거활동보조 지원의 강화'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득 지원 정책 의 확대 강화	장애(성인·아동)수당 지원제도 확대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정	대상자(최 저생계비 120%)·금 액 확대	대상자(최 저생계비 150%)·금 액 확대	대상자(최 저생계비 180%)·금 액 확대	대상자(최 저생계비 210%)·금 액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비수급 장애인가구 실태조사 및 최저생계 보장 대책 마련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비수급장 애인 빈곤 실태조사 실시	대구형 장애인 빈곤 최저선 개발 및 생계비 지급
	주거취약 장애인에 대한 전·월세 지원 사업 실시 및 임대주택 지원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총 10가구 지원	총 15가구 지원	총 20가구 지원	총 25가구 지원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의견 검토	총 40가구 지원	총 60가구 지원	총 80가구 지원	총 100가구 지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활동 지원 제도의 확대 강화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및 시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24시간 보장, 현행 대상자 대비 150% 확대	전년 대상자 대비 150% 확대	전년 대상자 대비 150% 확대	전년 대상자 대비 150%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방안 마련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이용자·이용희망자 자부담 실태조사	대상자 기준 수립 및 자부담 지원	정착	-

#### (4) 장애유형별·연령별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와 정책 개발

##### 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모델 연구개발

현행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정책은 많은 부분 물리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있어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덜 필요로 하는 신체적 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②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자립생활 지원 모델 연구개발

현재 대구시에는 16개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과 9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정신질환이라는 의료적 관점만이 강조되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로 접근되는 정책이 부재하다. 또한 대구시 차원의 지역 내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역 중심의 회복과 정착 지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MI 원칙 등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역사회 내의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자립생활 지원 모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③ 장애청소년부터의 자립생활 전환교육 체계 연구개발

장애청소년부터의 적절한 자립생활 전환교육이 없음으로 인해, 장애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 학교의 일반 교과과정이 그 자체로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학교, 가정, 시설 내 장애청소년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에 대한 정보와 연습이 포함된 전환 교육 체계 교육 과정·내용의 연구개발과 전환지원서비스센터와의 연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④ 고령 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개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거나 시도하고자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핵심적인 지원서비스의 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⑤ 단계별 계획

<표 16> '장애유형별·연령별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와 정책 개발'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모델 연구개발	당사자 등 의견 수렴	연구	정책 신설, 시범사업 운영	정착	-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자립생활 지원 모델 연구개발	당사자 등 의견 수렴	연구	정책 신설, 시범사업 운영	정착	-
장애청소년부터의 자립생활 전환교육 체계 연구개발	당사자 등 의견 수렴	연구	정책 신설, 시범사업 운영	정착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개발	당사자 등 의견 수렴	연구	정책 신설, 시범사업 운영	정착	-

## 4. 건강권 보장

### 1) 추진 배경

장애인에게 건강의 유지·관리는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존재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권리의 전제와 같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의료 보장(31.5%)이 소득보장(38.2%), 고용보장(8.6%)과 함께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62.2%는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호흡기장애, 간질장애, 신장장애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에서는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보건 관련 재원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2) 추진 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아닌 장애 상태에 따른 보편적인 의료보장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권의 관점으로 공공체계 내에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확대해 나가며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증진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법인의 보조기구 사업 등의 부대사업 확장과 영리화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의료 지원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는 이러한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방안의 검토와 함께 기본적인 건강 유지,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와 지원 확대, 건강의료에 관한 정보 부족의 해결, 의료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증진, 종사자의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 3) 추진 과제

<표 17> '건강권 보장'의 추진 과제

단기	중장기
<b>기본권으로서의 의료지원 보장</b>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b>기본권으로서의 의료지원 보장</b>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b>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 강화</b> 무장애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b>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 강화</b> 장애인 건강검진 강화확대
<b>장애인보조기구 지원급여·전문성 확대</b>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급여 확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센터 내실화	

### (1) 기본권으로서의 의료지원 보장

#### 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본인이 원할 때에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 58.7%의 장애인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사회적 추가비용 160.7천원 중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비중이 35.3%(월 평균 56.7천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경감 대상자였음에도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중단되는 경우에 개인소득이 사실상 없음에도 가구소득으로 인해 비수급권자가 되어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급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긴급하고 임시적인 지원 체계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②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70.0%의 장애인이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표적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등으로 조기발견과 예방, 적절한 관리가 핵심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때에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33.5%의 장애인이 병의원으로서의 교통, 예약, 대기, 방문시간대 등의 어려움 등 환경적 요인을 꼽았다. 이에 대구시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의료 전문가가 직접 정기 방문하여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③ 단계별 계획

<표 18> '기본권으로서의 의료지원 보장'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의견 검토	실태조사, 예산 수립	지원 확대	정착	-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	-	의견 검토	시범 운영	모니터링

## (2) 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 강화

### ① 무장애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등에 있어서의 관련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무장애 인증을 실시하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은 편의시설 설치 여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장애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아동과 장애여성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필요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대한

고려 역시 빼 놓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 건강검진 강화·확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 간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11.9%가 경제적 문제를, 20.4%가 대기시간 문제를, 12.3%가 교통 접근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건강검진율이 낮은 이유에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 의료기관의 장애인 접근성과 장애인 인식의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대구시는 기본적인 장애인 건강검진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과 이동 지원,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 정보 제공, 접근 가능한 의료기관의 확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단계별 계획

<표 19> ‘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 강화’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무장애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시범사업	정착	-	-
장애인 건강검진 강화·확대	-	-	실태조사	시범사업	지원 확대

(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급여·전문성 확대

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급여 확대

가.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 확대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건강보험 미적용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보조기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②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센터 내실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 ③ 단계별 계획

<표 20>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급여전문성 확대'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급여 확대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사업 확대	사업 확대	사업 확대	사업 확대
	건강보험 미적용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자체 지원 품목과 지원액 기준 마련	제도 시행	정착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센터 내실화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내실화 방안 연구	인력·예산 확보	센터 지도·감독	정착

## 5. 노동권 보장

### 1) 추진 배경

노동 참여 여부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전제일 수는 없으나, 노동은 생계수단의 의미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존재 확인과 자아 성취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등)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제21조, 제42조, 제46조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0조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3조) 등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2010년 4월 20일 제정)와 동구청의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2011년 6월 1일 제정)가 존재한다.

## 2) 추진 방향

장애인의 노동시장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경쟁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호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 핵심전략이 통합된 노동환경에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의 고용전략도 경쟁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유동철, 2008).

이에 대구시는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종합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의 고용 정책은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의 생계와 빈곤 문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의 모든 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로드맵과 함께 현재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 구제,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문제의 시정, 적절하고 평등한 임금처우로의 유도, 중증장애인을 표적화한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근로지원인 등 보조인력 지원 등의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고용제 도입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대구시가 보장하고 공공 부문과 비영리 부문에 배치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일자리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3) 추진 과제

<표 21> '노동권 보장'의 추진 과제

단기	중장기
<b>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공공고용제 도입</b>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시범 도입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장애인 고용평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b>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공공고용제 도입</b> 대구 장애인 고용평등 지수 조사  <b>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b> 장애 정도·유형별 고용지원 체계 연구  <b>사업주 인식 개선과 지원</b> 대구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 연구
<b>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b> 장애인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고용지원 인력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 확대	

단기	중장기
<b>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공공고용제 도입</b> 장애 청소년·청년 직장 인턴십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고용 확대  <b>임금 평등 조치</b> 대구 장애인 임금 최저선 도입	

###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공공고용제 도입

####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확대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과 교육청, 대구시의회, 각 구군청과 구군 의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적극적인 선도 노력을 보이고 기관 내 직무 분석·개발을 통하여 고용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률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목표 설정, 모니터링, 활성화 조치가 수립되어야 하며,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을 5%로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②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되고 있다고는 하나, 근속 연수와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참여자의 해당 기관에서 얼마나 직무 배치 및 관리 노력을 하는가에 좌우되고 있어, 경증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에서 꺼리거나 배치된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설령 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근속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참여자에게 부수적인 단순 업무 이외에는 배치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일자리라기보다 복지적 차원에서의 단순 취업 경험의 제공과 배치 기관의 실적 쌓기로 활용되기 일쑤이다. 이에 대구시는 현재의 일자리 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경력이 쌓일 수 있도록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시범 도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고용 등의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구시와 각 구군청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을 보장하여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에 맞추어진 직무가 개발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비영리단체 등에 배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다. 아울러 기관에는 인력 지원의 조건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보급을 제안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 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확대

대구시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의무구매 비율이 2011년 0.52%, 2012년 0.25%, 2013년 0.13%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홍희락 의원실, 2014). 그러므로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대구시와 각급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진을 통한 자립생활의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구시의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2019년까지 1.75%를 달성하도록 하는 등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 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제정

대구시에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구매 비율을 연차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들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 ⑤ 장애인 고용평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대구시 차원의 장애인 고용평등 지수의 개발과 실태조사, 의무고용률의 상향과 지원 방안, 인센티브와 제재조치, 장애인 고용 증진과 안정화 대책 마련, 중증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장애인 노동조합 구성, 대구시·사업주가 참여하는 고용평등위원회의 구성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평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구시의 적극적인 장애인 노동권 보장 의지를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장애인 고용 증진과 노동권 보장의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⑥ 대구 장애인 고용평등 지수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3년 정책연구로서 장애인 고용평등 지수의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남녀평등 지수, 여성권한 척도, 성격차 지수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노동 참여, 직업 안정, 노동 위상, 노동 보상, 노동 환경 등으로 구성된 고용평등 지표를 제안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를 지역의 사정에 맞게 보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평등 지수를 조사하고 이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장애인의 고용률을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⑦ 단계별 계획

<표 22>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공공고용제 도입'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3.6%	4.0%	4.5%	5.0%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총 800명	총 900명	총 1,000명	총 1,100명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시범 도입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시범사업 실시	제도 확대	정착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총 구매액의 1.00%	총 구매액의 1.25%	총 구매액의 1.50%	총 구매액의 1.7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
장애인 고용평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정착	-	-
대구 장애인 고용평등 지수 조사		-	-	지수지표 개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발표	이행여부 지도감독

## (2)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

### ① 장애인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고용지원 인력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는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업무수행 능력은 갖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부수적인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고, 지원이 가능한 장애유형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장애인의 근로 욕구에 부합할 수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근로지원인이나 직무지도원과 같은 고용지원 인력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②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로 직장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 배치함과 동시에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의 대표적인 형태가 지원고용 제도이다. 지원고용 제도는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3~7주간 사업체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훈련 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한다. 지원고용은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성인에게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제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장애 학생·성인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지원 기간 역시 충분하지 못하여 경쟁고용과 경쟁노동시장에서 적응하기에 모자란다. 이 외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체를 대상으로 연수생에게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을 지급하는 시험고용 역시 지원고용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 제도의 금액기간, 직무지도원의 배치 기간 등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③ 장애 청소년·청년 직장 인턴십 확대

장애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 인턴십을 확대하여 재학 중이나 졸업 직후 현장 적응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학교, 일반기업, 장애인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인턴십 기관을 적정한 비율로 선정하고, 장애인의 유형·특성에 맞는 직무 유형과 지도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 주도로 다양한 사업장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원고용, 시험고용, 공공고용제 등과 연계하며 조기 교육식의 취업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고용 확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수요가 많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양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공동 브랜드와 일거리의 개발, 판로 개척,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직업재활시설이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반 경쟁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장애 정도·유형별 고용지원 체계 연구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장애인의 고용 증진과 노동권 보장의 방향 역시 장애인 노동력의 일반 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적절히 갖추는 것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장애인 고용 증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고용지원 체계를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단계별 계획

<표 23>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고용지원 인력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총 100명	총 150명	총 200명	총 250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총 100명	총 150명	총 200명	총 250명
장애 청소년·청년 직장 인턴십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총 50명	총 70명	총 90명	총 110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고용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총 1,000명	총 1,200명	총 1,400명	총 1,600명
장애 정도·유형별 고용지원 체계 연구	-	-	연구 사업	정책 신설	시범사업

### (3) 임금 평등 조치

#### ① 대구 장애인 임금 최저선 도입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보장을 적용 제외할 수 있음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을 하더라도 직업훈련, 경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실제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많다.

이에 비록 최저임금법이 상위법이라고는 하나, 생활임금 등에 관하여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하여 대구시에 소재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해당 년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장애인 임금 최저선을 도입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시 공공 부문 기관과 시가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부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 ② 단계별 계획

<표 24> ‘임금 평등 조치’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구 장애인 임금 최저선 도입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도입	이행여부 지도·감독	-	-

### (4) 사업주 인식 개선과 지원

#### ① 대구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201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관할구역 안의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과 대구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인적 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사용자, 주민, 대구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이에 이를 모델로 하여 대구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노동조합, 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부, 자립생활센터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각종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 연구

고용노동부의 2013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사항으로 장애인고용 기업체는 세금 감면(46.9%), 장려금 지급액 인상(32.1%), 사업주 용자 등 금융 지원의 확대(7.7%) 등을 꼽았다. 이러한 기업체의 요구가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대구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원 체계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이에 대구시 사정에 맞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체계를 종사자 규모, 기업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연구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단계별 계획

<표 25> '사업주 인식 개선과 지원'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구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협의체 구성	시범운영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 연구	-	-	의견 검토	연구	시범사업

## 6. 교육문화권 보장

### 1) 추진 배경

교육은 그 자체로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적 권리이며, 기본적인 인권이 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권리이다.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교육기본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를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학의 장애인이 전체의 11.8%,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32.9%로,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이 99.9%인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와 비교할 때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현격히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 둔 이유는 75.3%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한 경우가 11.6%, 심한 장애로 인해서가 5.3%로, 장애인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에서의 생활의 문제점으로는 친구들의 이해 부족과 놀림이 25.0%, 수업 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가 24.6%로 가장 높았으며, 특수교사의 부족이 10.5%, 등·하교 불편이 8.5%, 학교 내 편의시설 부족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육교육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20.4%가 ‘보호자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남겨진 자녀의 대책’을 들었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가 18.0%, 고등교육 지원 강화가 15.8%, 의료비용 경감이 12.3%,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 확대가 11.2%로 나타났다.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장애아동의 전반적인 지원 대책이 보호자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형태로 확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실태조사는 장애여성의 교육에 관한 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68.5%가 무학초등학교 학력으로, 장애남성의 41.8%, 전국 여성의 29.6%와 비교하여 저학력 계층이 매우 많았다. 반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여성은 4.2%로, 장애남성(11.2%)의 37.5% 수준에 불과하고 전국 여성(20.6%)의 약 20.4% 수준에 불과하여, 장애여성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경우도 37.0%나 되고 있어서, 역시 장애남성보다도 학력이 훨씬 낮은 것은 물론 비장애 여성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이 다른 권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시작을 보여준다면, 장애인 문화여가의 수준은 한 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소외·배제의 정도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의 결과를 보여준다. 한 사회의 인간 집단이 이룬 정신적·물질적 과정의 산물이 문화라면, 동시대의 문화를 온전히 향유하고 있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권리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본주의적 노동으로부터 대다수가 배제되어 있는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참여·통합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96.0%는 단순히 TV 시청이 주된 문화여가 활동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여가에서의 접근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문화여가에 대한 불만족이 60.5%로 높았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건강이나 체력

의 부족(41.6%)을 제외하면 경제적 부담이 32.2%로 가장 높았다.

## 2) 추진 방향

대구시는 교육의 권리를 장애인에게 보장함에 있어 이용 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의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 가능성은 대구시 관할권 내의 교육기관프로그램이 충분히 이용 가능해야 하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성은 교육기관프로그램이 관할권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차별은 교육이 모든 이들에게, 특히 장애여성과 같이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률상·사실상 접근 가능해야 함을 말하고, 물리적 접근성은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 혹은 현대적 기술에 의해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경제적 접근성이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로 초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중등·고등 교육은 점진적인 무상교육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성은 교과과정, 교수법 등 교육의 형태·내용이 적절하고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학생 또는 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과 교육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성은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해야 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익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한진 외, 2012).

한편,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문화여가 실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지역 내 장애인이 접근·이용·참여 가능한 문화여가 저변이 불충분하다는 것과 시설 등으로의 물리적 접근성, 정보의 접근성 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장애인이 스스로 문화적 주체가 되는 자조활동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인의 문화여가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저변 확대,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독특한 경험과 집단적인 정체성이 함께 공유되는 당사자 문화가 창출되게끔 지원해 나가야 한다.

### 3) 추진 과제

<표 26> '교육문화권 보장'의 추진 과제

단기	중장기
<p><b>기초교육 기회 확대</b> 대구시 교육청 공동협력 사업으로의 통합교육 강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p> <p><b>성인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b> 장애성인 교육 종합지원 계획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p> <p><b>장애유형별·성별 맞춤형 교육</b> 발달장애인 전환프로그램 확대 장애여성 교육지원 사업 확대</p> <p><b>장애인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접근권 강화</b> 문화여가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시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장애포괄 원칙 수립</p> <p><b>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저변 확대</b>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사회활동에서의 발달장애인 사고 예방과 지원체계 강구 장애인 당사자 간의 자조모임 활성화</p>	<p><b>성인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b>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 장애인 평생교육비 지원</p> <p><b>장애유형별·성별 맞춤형 교육</b>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지원 확대</p> <p><b>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저변 확대</b>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위한 다목적 시설 건립</p>

#### (1) 기초교육 기회 확대

- ① 대구시 교육청 공동협력 사업으로의 통합교육 강화  
가. 일반 교육기관의 통합교육 지원환경 구축

통합교육의 이념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대해 특수교사를 지원하며,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대해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지원, 통합학급에서의 교수학습 지원의 다양화, 교육과정 보정, 보조인력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기타 편의 제공 등으로 통합교육 지원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나. 대규모 특수학교의 기능 세분화 및 소규모 특수학교의 확충

기존의 특수학교를 학교 급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유휴 공간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적극 활용한다. 일반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학교 급별 소규모 특수학교의 설립을 지원한다.

②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영아·유아 교육은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에 교육청과 공동협력으로 장애아동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등 일체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 단계별 계획

<표 27> ‘기초교육 기회 확대’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구시 교육청 공동협 력 사업으 로의 통합교 육 강화	일반 교육기관의 통합교육 지원환경 구축	의견 검토	실태조사	공동계획 수립	지원환경 구축	이행여부 모니터링
	대규모 특수학교의 기능 세분화 및 소규모 특수학교의 확충	의견 검토	실태조사	공동계획 수립	기능 세분화 및 특수학교 확충	이행여부 모니터링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의견 검토	실태조사	공동계획 수립	교육비 지원	이행여부 모니터링

## (2) 성인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

### ① 장애성인 교육 종합지원 계획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 가. 대구시 장애성인 학력·교육욕구 실태조사 실시

대구시 장애성인의 학력·교육욕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된 적이 없어 제대로 된 실태조차 과

악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교육청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시와의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의 장애성인 교육지원 성격 사업은 단순 운영비 일부 지원, 프로그램 일부 지원 등에 머무르게 되며, 거시적인 방향이 없는 가운데에서 단기적으로 시행될 뿐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무엇보다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지역 장애성인의 학력 실태와 교육욕구의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나. 장애성인 교육 종합지원 계획 수립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 제도권 교육에서 배제되어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흥 계획 속에서 비중이 낮으며, 적극적인 종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욕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령, 장애유형, 성별 등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다. 대구시 장애성인 교육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대구시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2009년 10월 제정), 평생교육 진흥 조례(2009년 5월 제정) 등이 존재하지만, 법규 내 장애성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교육 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된 내용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구시는 교육청과의 공동 지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실태조사의 실시, 종합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 장애성인 교육기관 육성, 관련 위원회 등을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체계 구축

### 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토대로 특수교육은 통합교육과 전 생애주기

교육지원을 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에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없으며, 교육청의 일부 지원을 통하여 운영되는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가 유일한 현실이다. 2013년 10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과 근거 등을 교육부에 의뢰하였으나 기준 제시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대구시 뿐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일관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기존의 인프라마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교육청과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장애성인 교육 기관과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함으로써, 지역 내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 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인력과 환경 강화

적절한 지원인력과 교육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현재 민간 장애성인 야학의 경우에 교사 대부분이 대학교 관련 전문학과의 자원봉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원봉사라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불안정하며, 이는 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제고에 크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통 접근성을 비롯하여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시설 설치,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와 보조공학 기기의 제공,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의 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과 정서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다. 지역사회 활동 중심의 대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령기를 지났다는 것은 장애성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역시 교육적 욕구의 충족과는 별개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장애성인의 학령기 기초교육은 일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령, 장애 상태, 사회적 처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성인의 연령에 대한 고려 외에도 장애의 선천·후천 여부, 장애유형,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성인에 대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 습득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지님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도 특성에 따라 입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많은 발달장애인이 시설로 보내어지거나 가정 내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비장애인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거부감과 이로 인한 위축,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통합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단순 강연 형태가 아닌 참여, 실습, 협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유대감을 회복하여야 한다.

#### ④ 저소득 장애인 평생교육비 지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평생교육비를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⑤ 단계별 계획

<표 28> '성인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성인 교육 종합지원 계획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대구시 장애성인 학력·교육욕구 실태조사 실시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실태조사 실시	-	-	-
	장애성인 교육 종합지원 계획 수립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계획 수립	-	-	-
	대구시 장애성인 교육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정	이행여부 지도·감독	-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체계 구축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	1개소 설치	운영 정착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인력과 환경 강화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 제시 및 지원 확대	정착
	지역사회 활동 중심의 대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연구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정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연구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정착	-
저소득 장애인 평생교육비 지원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평생교육 비 지원	정착

### (3) 장애유형별·성별 맞춤형 교육

#### ① 발달장애인 전환프로그램 확대

대구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전환기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가정생활에서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일회적인 행사와 단기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과 인력, 환경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 내 자립생활 기술의 습득과 훈련, 의사소통 훈련, 사회성 훈련, 직업 교육 등을 연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시가 주도한 가운데 교육청, 특수학교급, 일반학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고용 (의사가 있는) 사업주, 장애인복지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하나의 전환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 ② 장애여성 교육지원 사업 확대

장애여성에 대한 학력·교육욕구 실태조사를 통하여 연령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단순 기초교육 지원 이외에 임신과 육아, 직업 관련 교육을 장애여성에게 맞게 적합하게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③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외국어 학습교재, 외국어 도서, 음악도서, 일반도서 등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학습교재, 참고서, 필독서, 교양도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도서로 제작하여 보급하며, 학습업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도서를 녹음도서 및 저시력인 개개인의 독서환경에 맞춘 확대 도서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시설에 필요한 점자촉지도, 학습용 촉각교구 등을 제작·보급하여 시각장애인의 자료 이용을 유용하게 하고, 인자·감각 능력 향상, 여가 선용,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로 제작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학습지원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면 그 역량이 발휘되는 일자리로서 개발될 수도 있다.

④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지원 확대

대구 지역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은 160명, 유일한 농학교인 영화학교의 현원은 76명으로 전체 청각장애 학생 수의 52.5%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학교의 경우 FM 송수신기, 수화, 대필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으로, 통합교육이라고는 하나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여건의 교육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구시는 각 학교에 FM 송수신기 구비, 수화대필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하며, 청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요청 시 수화통역 서비스를 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수화통역사 상시 배치·과건)하고,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학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단계별 계획

<표 29> '장애유형별·성별 맞춤형 교육'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발달장애인 전환프로그램 확대	의견 검토	확대	정착	-	-
장애여성 교육지원 사업 확대	의견 검토	실태조사	확대	정착	-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	-	의견 검토	-	설치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지원 확대	-	-	의견 검토	실태조사	확대

(4) 장애인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접근권 강화

① 문화여가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설의 접근성이 단순 의무화목 설치 여부가 아니라 좌석 배치의 적절성, 출입구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로의 이동과 이용의 용이성 등 보다 섬세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접근(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서비스 등)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구시도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등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데, 당사자적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법률적 검토를 넘어 실제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체감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사항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

② 시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장애포괄 원칙 수립

문화여가 분야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있어 장애포괄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물리적 접근에서부터 사전 정보와 문화여가의 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③ 단계별 계획

<표 30> '장애인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접근권 강화'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여가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실태 조사	이행여부 지도·관리	-	-
시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장애포괄 원칙 수립	의견 검토, 자치법규 재개정	원칙 공표	이행여부 지도·관리	-	-

(5)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저변 확대

①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누리카드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등의 관람 및 음반·도서 구입, 여행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의 지원 내용이 최대

연 10만원(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연 5만원)으로 비현실적이다.

이에 대구시는 추가적인 바우처 사업의 신설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사회활동에서의 발달장애인 사고 예방과 지원체계 강구

장애인에 대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저변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돌봄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활동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예방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범위의 보호자 중심 사회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폭 넓은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발달장애인 등 본인의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와 가족, 타인 또는 기관 등의 물질적 손실 등을 지원하는 공적인 상해보험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③ 장애인 당사자 간의 자조모임 활성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체육시설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스스로 문화여가를 누리기 위한 자조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문화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여가를 향유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더불어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발·확대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 대상의 문화여가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문화여가를 위한 자조모임 활동비의 지원이나 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의 개발,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화 행사 확대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 ④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위한 다목적 시설 건립

광역시읍에도 불구하고 대구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이 마땅하지 않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최하거나 참석할 때에 주최기관의 의지와는 별개로 참여자와 주최자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상적인 교육문화수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회의장, 다목적 강당, 연수, 숙박, NGO 지원, 장애아동 놀이터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로서의 '(가칭) 무장애 복합 문화공간'을 설립하여, 대구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 모든 시민이 무장애 환경을 체험하고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이 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과제로서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중심거점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 전체가 언제든지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정서적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단계별 계획

<표 31>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저변 확대'의 단계별 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의견 검토	확대	이행여부 지도·관리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위한 다목적 시설 건립	-	-	의견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1개소 건립	사업효과 모니터링

### III.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계획

#### 1. (가칭)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안)

##### 1) 주요 기능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관리, 인권상담, 인권교육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신속한 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이다.

##### (1)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 데이터 수집·관리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상담·진정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보도블록 둔덕의 위치, 대중교통들 간의 이동성 연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시뮬레이션 조사, 복지서비스의 현황 조사 - 를 수행하여, 장애인 개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또는 방지하고자 하는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행정기관과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는 사례조사를 위한 조사권과 그 성격이 다르며, 다수의 장애인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 관련 사항들을 네트워크로 연계함으로써 현재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 (2) 장애인 인권차별의 상담, 사례 연구

장애인인권센터는 고용, 교육, 시설물의 이용·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통신·의사소통, 사법·행정 절차, 정치적 참여, 직장 보육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사례로 등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 사례 조사도 이에 포함된다.

상담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직면한 차별의 상황과 인권침해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인권침해의 원인인 핵심적 문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해 줄 수 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획득되는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의 자료로,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3)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사회의 인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인식의 전환은 여러 방면에서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개선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기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개념, 장애인의 자립, 사회통합, 장애인의 역량, 사회제도관습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제2항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권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 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특수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제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언론매체와 신문 등을 통한 인식 제고, 홍보 등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고등학교 단계까지의 교육과정 개발, 일반대중과 장애 관련 종사자·전문가를 위한 인식 훈련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를 포괄적 인권 문제로 볼 수 있도록 장애 주류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의 주류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훈련도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초기부터 장애유아,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인식 제고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빈번한 노출 및 생애주기별, 종사 분야별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보다 그 적실성이 제고될 수 있다. 특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의 동기를 부여하며, 전문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적실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근성의 증진도 중요하다. 차별 상태를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신속성은 인권증진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인 장벽이 없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애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권리에 대한 지식, 복지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복지서비스 제공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인권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고 유형화·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기관에 연계시키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 (5) 인권침해의 조기 발견, 신속한 구제 지원

지역 내의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사업의 자원을 연결하며 침해 행위를 당한 대상자를 발견·등록·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차별 행위를 통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발견하고 신속한 구제를 지원해야 한다.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의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이러한 직권조사 권고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기능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기능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창구로서의 센터의 역할은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장애인인권센터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직권조사권의 발동을 의뢰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법률상 장애인인권센터 자체에 대한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구제 기능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수준으로든 장애인인권센터의 구제 기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③ 피해(예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인권센터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조직 및 인력

장애인인권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최소 업무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무기획팀은 각종 행정을 지원하고 재정·회계 업무를 처리한다. 아울러 대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쟁점이나 인권 침해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센터의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한다. 또 인권센터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소식지와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배포한다.

둘째, 상담팀은 장애인이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차별 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진정을 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상담한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전화 및 응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의료 또는 구제 서비스로 연결해 준다. 또 필요할 경우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의뢰하고 각종 상담 사례도 관리한다.

셋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사업장,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 개선, 차별금지, 인권증진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한다.

또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세미나·토론회, 실태조사 사업,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한다.

넷째, 조사구제팀은 상담팀에서 수집하고 1차 정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토대로 그것이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상담한 장애인이 인권침해 피해자로 간주될 경우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고문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3팀 체계

3팀 체계는 센터장 1명과 총무기획팀 3명, 상담·교육팀 3명, 조사구제팀 3명 등 모두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각 팀의 팀장이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을 지고 센터장이 최종 책임을 진다.

### (2) 2팀 체계

대구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권센터를 2팀 체계로 구성할 경우, 센터장 1명과 총무·상담팀 3명, 조사구제팀 3명 등 모두 7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때 3팀 체계의 교육 파트는 총무·상담팀에 통합된다. 각 팀의 팀장이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을 지고 센터장이 최종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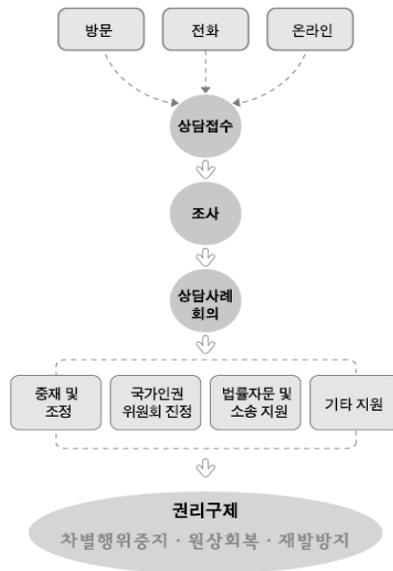
이 같은 체계를 통해 업무 분장이 이루어질 경우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 흐름도는 <그림 2>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 3) 운영 주체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유형은 대구시의 직접 운영, 민관 공동 운영, 민간위탁 운영, 민간단체 자율 운영 등이 있으며, 각 유형의 장단과 단점은 <표 32>와 같다. 이 표에서 ‘직영형’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유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민간형’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인권센터에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이므로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이다.

따라서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위탁형’과 ‘혼합형’ 둘 중 하나의 유형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 (1) 민간 위탁형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 (제1안)



<표 32>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유형

구분	직영형	혼합형	위탁형	민간형
개념	관이 직접 운영	민간단체와 관이 공동 운영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	민간단체가 자비로 자율 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성·공공성 제고</li> <li>· 예산·서비스의 안정성</li> <li>· 장기계획 수립이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의 공공성 제고</li> <li>· 거버넌스 강화(민관 협력 체제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감수성 제고</li> <li>· 신속한 업무 처리</li> <li>· 조직 내 결속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성·감수성 제고</li> <li>· 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료주의의 문제</li> <li>· 전문성·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가능성</li> <li>· 조직 내 불협화음 가능성</li> <li>· 책임 소재의 모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종결 시 서비스 연계성 부족</li> <li>· 공공성·책임성 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자원의 부족</li> <li>· 체계적·안정적 사업 운영의 한계</li> </ul>
사례	사례 없음	성남시 장애인 인권센터	서울, 경기, 전남, 대전 등 대부분의 인권센터	경기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 인권센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 실무 편람’에서는 민간 위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취지를 살려 민간 위탁형 센터를 만들려면 우선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기준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칭)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 위탁 등에 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위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탁기관 자격 요건에는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대구시 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컨소시엄을 구성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나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부설 연구기관도 위탁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혼합형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 (제2안)

제1안에서 설명한 민간위탁에 의한 센터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관의

재정, 인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인권센터에 대구시의 관련 공무원 1~2명 정도 파견하는 이른바 혼합형 인권센터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센터 직원들의 상이한 신분으로 인한 내부 갈등을 방지하고 파견 공무원(들)이 센터 활동을 주도하거나 실질적인 관리자감독자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운영 규정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인권센터 설치운영 조항의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장애인 인권 조례로서의 제 면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시의회는 장애인 인권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른 도시의 인권센터 관련 법 기술 방식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규칙으로 관련 조항들을 기술하고 있고, 광주시와 인천시는 제2장(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하나의 조항에, 그리고 부산시와 대전시는 장 구분 없이 하나의 조항으로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을 기술하고 있다. 대구시 조례의 경우에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광주시와 인천시의 사례를 따라 인권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창의적인 조례 기술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존 조례에 새로운 장을 하나 더 추가하여 관련 조항들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대구시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3장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4장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신설하여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기술적으로 무난할 것이다. 이 경우에 첫째 조는 ‘기능’, 둘째 조는 ‘설치 및 운영’, 셋째 조는 ‘예산’ 등과 관련된 조문으로 하여 제4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이상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행정상의 지원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재정상의 지원 방안과 행정상의 지원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본 발표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1. 재정상의 지원 방안

#### 1)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액

최근 5년간(2010~2014년) 대구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액과 장애인 1인당 예산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구시의 순계 예산은 87.9%가 증가하여 전국 최고이었다. 하지만 1인당 장애인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대구시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2014년의 대구시 1인당 장애인 예산은 1,654천원이며, 이는 전국 평균 1,706천원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인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간헐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예산도 극히 소규모일뿐더러 사업의 내용과 방식도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아직도 대구시에 장애인의 인권증진 사업을 관장하는 특별한 기관이 없고 체계적인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인권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에 들어가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시

는 지금보다 상당히 증가된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권증진 사업을 내실화함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3)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지 예산 개념의 도입시행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남녀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중앙정부는 2010년 예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사회의 장애인지 예산의 개념 도입에 대하여 2011년 6월 8일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장애인지 예산의 도입을 충분히 수궁하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2013년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지 예산 도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도 이 같은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선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의 총량을 별도로 집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도별 예산의 변동 추이와 분야별 예산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애인 예산의 편성·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 2. 행정상의 지원 방안

### 1) 장애인복지 업무 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당사자운동의 활성화,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조 속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제도,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구시의 장애인복지 업무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을 관할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시 자체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공무원의 높은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업무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역할 과중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처리에 방어적으로 되거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는 등 일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2014년 대구시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소폭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기는 하나, 과의 운영에 필요한 과장, 사무관, 총무 등의 인력을 제외할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적인 복지 업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복지 업무의 특성·강도를 감안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에 필요한 수당 인상,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휴게 시간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광역시청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센터 등에서도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 2)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장애유형·업무 중심의 전담 인력 구성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 수반은 물론, 수행 공무원의 전담화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기본 업무는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 사업 등 10개 내외로 사실상 일의 ‘관리’ 외에는 기능하기 어렵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 인권 분야 업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분야 업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애초부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의 사업 중심의 업무 분장 외에 특별한 업무의 집중이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3) 담당자의 자립생활인권 역량 강화

행정 속에서 담당 공무원의 일 처리에 대한 불만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도 불거지지만, 한편으로는 자립생활인권 분야에 대한 무관심 또는 경시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즉, 패러다임의 변화에 합당하지 않는 사고와 일 처리 방식에다가 이미 낡은 방식의 전문성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는 데에서 불만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 담당 인력의 자립생활인권 역량 문제와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외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합당한 처우가 요구된다.

## 4) 장애포괄 원칙을 위한 타 부서와의 공조

장애인의 인권 문제는 복지의 한 부분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를 포괄적 인권 문제로 볼 수 있도록 장애 주류화를 행정상 지원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에 장애인과 관련된 부서, 사실상 모든 부서와의 업무 교류가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아니라 각 분야별 행정에서 장애에 대한 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대구경북연구원 (2012).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연구.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유동철 (2008).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과제와 장고법 개편 방안.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곽정숙 의원, 박은수 의원, 윤석용 의원, 임두성 의원, 홍희덕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저지와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서울.
- 유동철·김명연·박숙경·김정하·임소연·박영희 외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전남장애인인권센터 (2014). 상담 절차 안내.  
[http://www.drj.or.kr/bbs/board.php?bo\\_table=B03](http://www.drj.or.kr/bbs/board.php?bo_table=B03)
- 허선·권선진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장애인 가구의 규모 추정 및 생활실태. 재활복지, 13(1), 85-109.
- 홍희락 의원실 (2014).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서울: 홍희락 의원실.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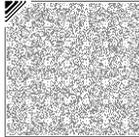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2]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박주국



#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

박주국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 1. 들어가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4.10 제정되고 2008.4.11부터 시행됨으로써 금년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이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정책이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당사자주의와 권리’의 관점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대구시는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1.5)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학술연구용역을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2014.7)하였으며, 대구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행위 및 차별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2014.10)도 함께 실시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은 대구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구시 장애인 인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

## II. 대구시 장애인 현황 및 정책

### 1. 장애인 현황

#### 1) 등록장애인 현황

대구시 등록장애인은 대구시 인구의 4.6%

대구시 인구수 2,518,467명, 대구 등록장애인 수 115,983명

대구시 등록장애인은 인구의 4.6%

대구시 등록장애인 수는 2010년 117,141명에서 2014년 115,893명으로 소폭 감소

2010년까지 증가추세, 이후 장애등록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담 한 이후 소폭 감소

<표 1> 최근 5년간 대구시 총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의 구성비 및 증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 수(명)	117,141	117,183	116,839	115,961	115,983
총 인구(명)	2,532,077	2,529,285	2,527,566	2,524,890	2,518,467
구성비(%)	4.7	4.7	4.7	4.7	4.6
전년대비 증감(%)	3.2	0.0	-0.3	-0.7	0.0

주 : 전년도말 기준

자료 : 대구월간통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자료 재구성

대구시 등록장애인 중 규모는 달서구, 출현율은 중구가 최고

대구시 등록장애인의 구·군별 분포는 달서구(22.8%), 북구(17.0%), 동구(16.0%), 수성구(15.1%), 서구(9.9%), 달성군(8.0%), 남구(7.6%), 중구(3.7%)의 순

장애인 출현율은 중구가 최고

<표 2> 대구시 등록장애인의 구군별,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합계
지체	2,108	9,010	5,922	4,150	10,234	8,222	12,960	4,501	57,107
시각	487	1,982	1,240	1,064	2,003	1,772	2,825	866	12,239
청각	412	1,769	1,076	852	1,712	1,892	2,796	900	11,409
언어	39	186	94	84	164	150	211	71	999
지적	247	1,634	774	600	1,468	1,251	1,870	860	8,704
뇌병변	509	2,029	1,269	1,029	2,176	2,220	2,946	914	13,092
자폐성	24	131	52	56	193	179	235	58	928
정신	206	994	500	467	920	813	1,256	709	5,865
신장	138	516	300	266	559	631	820	244	3,474
심장	12	34	23	21	50	55	52	9	256
호흡기	12	73	43	50	66	88	104	30	466
간	10	59	23	26	65	89	114	35	421
안면	4	18	17	11	29	18	31	16	144
장루요루	20	88	61	66	99	89	119	49	591
간질	9	39	45	23	34	43	76	19	288
합계	4,237	18,562	11,439	8,765	19,772	17,512	26,415	9,281	115,983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자료 재구성

## 2) 등급별·장애유형별 현황

대구시 1~2급 중증장애인 25,532명

대구시의 중증장애인은 25,5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22%

대구시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57,107명(49.2%)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인 13,092명(11.3%), 청각·언어장애인 12,048명(10.7%), 시각장애인 12,239명(10.6%), 지적장애인 8,704명(7.5%) 순

대구시 등록장애인 중 남성 68,157명(58.8%), 여성 47,826명(41.2%)

남성 중 1~2급 중증장애인은 14,856명으로 남성 장애인의 21.8%

여성 중 1~2급 중증장애인은 10,676명으로 여성 장애인의 22.3%

<표 3>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115,983	9,374	16,158	20,080	16,642	22,386	31,343
지 체	57,107	1,777	3,134	6,207	10,874	15,335	19,780
뇌병변	13,092	2,909	2,683	2,718	1,641	1,555	1,586
시 각	12,239	1,413	369	601	641	1,101	8,114
청 각	11,409	250	2,114	1,845	2,448	2,889	1,863
언 어	999	7	100	424	468	-	-
지 적	8,704	2,203	2,911	3,590	-	-	-
자폐성	928	371	371	186	-	-	-
정 신	5,865	203	1,843	3,819	-	-	-
신 장	3,474	160	2,435	3	21	855	-
심 장	256	4	33	200	-	19	-
호흡기	466	57	114	293	-	2	-
간	421	10	11	35	7	358	-
안 면	144	5	17	52	69	1	-
장루요루	591	-	5	33	304	249	-
뇌전증	288	5	18	74	169	22	-

주 : 2014년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자료 재구성

## 2. 대구시 장애인복지 예산 규모

장애인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의 10.7%

대구광역시 2015년 사회복지예산은 1조 6,732억원

전체 예산 6조 1,760억원의 27.1%

대구광역시 2015년 장애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의 10.7%

대구광역시 2015년 장애인복지예산은 1,792억원

2015년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예산은 2,366억원, 인천광역시는 1,634억원, 대전광역시 1,324억원, 광주광역시 1,376억원, 울산광역시 675억원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예산은 2011년 1,127억원, 2012년 1,190억원, 2013년 1,470억원, 2014년 1,619억원(130개 사업, 사회복지예산의 7.0%)에서 2015년 1,792억원(사회복지예산의 10.7%)으로 증가 추세

<표 4> 연도별 등록장애인 및 예산현황 (단위: 억원, 명)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장애인복지예산	699	909	947	1,127	1,190	1,470	1,619	1,792
등록장애인수	100,082	106,475	113,509	117,141	117,183	116,839	115,961	115,983

주 : 등록장애인수 전년도 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자료 재구성

대구시 장애인 1인당 예산 1,545천원으로 전국 평균 미달

2015년 대구광역시 1인당 장애인 예산은 1,545천원

6대 광역시 평균 1인당 장애인 예산은 1,570천원

대구광역시 1인당 장애인 예산은 6대 광역시 중 3번째

부산광역시 1,403천원, 인천광역시 1,221천원, 광주광역시 2,015천원, 대전광역시 1,860천원, 울산광역시 1,377천원

### 3.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

대구시 장애인 시설 총 136개소

대구시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20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7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26개소, 직업재활시설 35개소(근로사업장 5, 보호작업장 30), 생산품판매시설 1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등 총 136개소임.

<표 5> 6대 광역시 예산 비교

구분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인 예산현황			장애인 1인당 예산액	
	장애인수 (명)	전체인구수 대비 비율	순 위	예산 (억원)	총예산 대비 비율	순 위	예산 (천원)	순위
평균	101,167	4.58	-	1,528	3.47	-	1,570	-
대구	115,983	4.61	4	1,792	3.82	2	1,545	3
부산	168,663	4.79	1	2,366	2.80	5	1,403	4
인천	133,855	4.61	4	1,634	3.28	4	1,221	6
대전	71,198	4.65	2	1,324	5.07	1	1,860	2
광주	68,288	4.63	3	1,376	3.57	3	2,015	1
울산	49,014	4.20	6	675	2.30	6	1,377	5

주 : '15.1월 일반회계 기준

대구시 장애인 생활시설 20개소

대구시 장애인 생활시설은 20개소로 대구시 총 장애인 시설의 14.7% 차지

지체장애인 시설 3개소(15%), 지적장애인시설 7개소(35%), 중증요양시설 9개소(45%), 영·유아시설 1개소(5%)

현재 1,575명의 장애인이 20개소 생활시설에서 거주, 등록장애인의 1.33%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

<표 6> 대구시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장애유형별					단기거주	공동생활가정
		소계	지체	지적	중증요양	장애영·유아		
시설수	48	20	3	7	9	1	2	26

<표 7> 대구시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35)		생산품 판매 시설	의료 재활 (1)
		복지관	주간보호	체육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점자도서관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시설수	88	6	37	2	1	4	1	5	30	1	1

대구 장애인 법인 및 단체 총 62개소

대구시 장애인복지법인은 26개, 중앙지부 16개, 비영리단체 20개

## 4. 장애인 정책 및 목표

### 1) 장애인복지 정책

2015년 장애인복지정책 비전 :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복지정책 목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및 권익증진’

세부 추진과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상시돌봄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편의제공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 장애인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지원과 홍보

‘장애인 자립지원 및 권익증진’ :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전환 지원, 장애인 인권보호 기반 구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5. 2015년 장애인복지 주요 사업

### 1)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주간보호시설(32→38개소) 및 자립지원사업(3→4개소) 확대(4,217백만원)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6,425백만원)

부모심리상담, 공공후견, 가족휴식 등 발달장애인 지원사업(190백만원)

발달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직무지도원 파견 : 5명 78백만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1개소 300백만원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 : '15. 상반기

### 2) 중증장애인 상시돌봄 지원체계 구축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3,210명 38,571백만원

만6~65세의 1~2급 장애인,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 800명 3,636백만원

위기장애인 추가지원(792명) 및 최중증 장애인 1일 24시간 확대(8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응급알림e)제공 : 800명에 452백만원

### 3)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편의제공

장애인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61개 사업 1,756백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 7,735명 1,944백만원

장애인등록증 발급교부 편의개선 : 22,000명 71백만원

여성장애인 교육 및 출산비용 지원 : 146백만원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 교육지원(40백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대상자 확대(1~3급 장애인→모든 여성장애인)

#### 4)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

장애인 연금 지원 : 18,800명 42,289백만원 지원

‘14.7월부터 지원대상 확대

장애수당 지원 확대 : 27,688명 13,737백만원

장애수당 :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수급자(25,283명/10,982백만원)

장애아동수당 : 2,405명 2,755백만원

장애인 맞춤형주택 리모델링 및 주택개조지원사업 : 25가구 169백만원

경사로, 문턱,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조(가구당 4~8백만원)

#### 5)장애인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이행확대 : 공공부문 3%→5%이상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확대 : 718명 6,843백만원

복지일자리(380명 1,491백만원), 일반형 일자리(260명 4,303백만원)

안마사 및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78명 1,049백만원)

장애인보호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지원 : 33개소 8,316백만원

#### 6)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과 홍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구축

#### 7)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전환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전환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지원(6개소 198백만원)

자립생활가정운영(3개소 96백만원)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확대(1인 5백만원→1인 6백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 7개소 890백만원

저소득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확대(486백만원)  
 보조기구 교부(432명 86백만원), 수리지원(1,096명 200백만원)  
 대구장애인보조기구센터 운영(1개소 200백만원)

## 8) 장애인 인권보호 기반 구축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15년 상반기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2014.7~12)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시 장애인인권현황 및 실태조사(2014.10)  
 연구용역 중간보고(2014.11.3) 및 공청회(2014.11.24) 실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수립예정 (2015. 하반기)  
 장애인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 30백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 교육홍보자료 제작 등  
 장애인 인권지원 프로그램 사업 운영 : 1개소 33백만원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 2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체계 구축  
 이용자 인권교육(연1회 4시간), 종사자 인권교육(연2회 8시간)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 지원 : 3개소 1,142백만원  
 성폭력 피해 접수 및 상담, 심리치료, 긴급보호 및 입소시설 소개, 권리구제 대행 등

##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9개소 408백만원  
 설계도서 사전점검(1,169건), 현장기술지원(1,850건), 도면기술지원(1,285건) 등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지원 : 25개소 25백만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공공부문 우선 시행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추진  
 나드리콜 확대 운영 : 특장차 10대(103→113)증차, 개인택시 55대(45→100)확대  
 저상버스 도입 : 129대 도입('18년까지 운행차량의 50% 도입)  
 교통신호 등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160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100대)  
 횡단보도 턱낮추기 : 100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특별교통수단 운영 : 66대(버스16, 승합50)

### III.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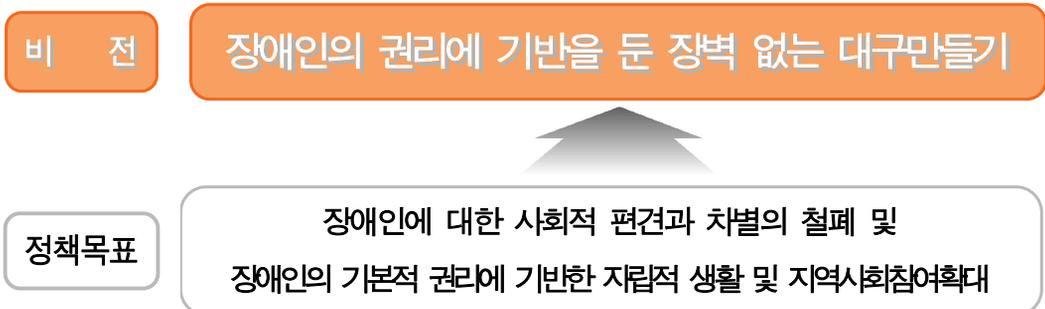
####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인권보장 시책의 구체화

##### 주요 추진사항

-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2011.5)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2012.10)
- 2012.10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12명 위원 위촉
- 2014.11월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및 발전방안 토의
-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실시(2014.7~12)
- 수행기관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한진 교수)
- 관련 문헌 및 정책분석, 자문 및 실무위원회(4회), 공청회(100여명)등
-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당사자 및 시민의견수렴
-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2014.11.24)
- 학계, 현장전문가, 장애인당사자, 공무원 등 100여명 참석
- 기본계획(안) 수립 예정(2015. 하반기)
-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2015.10)예정
- 장애인인권센터(가칭)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2. 대구시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안) - 학술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 1)기본계획(안) 비전 및 과제



## 2) 정책과제(6개 분야, 24개 추진과제)

권익보호와 차별시정(5), 접근권·이동권(3), 자립생활권(4), 건강권(3), 노동권(4), 교육문화권(5)

## 3) 대구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안) 추진과제

### 권익보호와 차별시정(5)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견표명 보장
- 정책의 수립·심의 시 장애인 참여 확대
- 장애인단체 지원·협력 체계구축
-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반 구축
-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정비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 장애인 인권침해·차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 배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강화
-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지표 마련
-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
- 장애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 발달·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인권정책 발굴
-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 장애인의 권리보장
- 장애 외국인 이주자의 권리보장

### 접근권·이동권(3)

- 장애인 권리 기반의 교통 환경 조성

교통수단의 보급확대와 서비스의 향상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 인프라 확대  
 도로인도의 통행·보행권 보장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확대  
 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인증제 확대  
 공공다중 이용시설의 편의시설의 확충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건축물의 무장애 인증제 활성화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종합지원대책 수립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 자립생활권(4)

시설화 방지 및 시설 내 인권보장  
 시설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설 거주인의 인권보장과 권한강화  
 집단 거주시설의 정책축소와 점진적 폐기  
 지역사회 전환지원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책임 강화  
 탈시설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과 긴급생계지원 확대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전환주거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와 권한강화  
 전환지원서비스 전담부서(인력) 설치(배치)  
 시설거주인에 대한 홍보·상담·교육·욕구조사 등의 정기 실시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주거·활동보조 지원 강화  
 소득지원정책의 확대·강화  
 주거지원정책의 확대·강화  
 활동지원제도의 확대·강화  
 장애유형별·연령별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와 정책개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모델 연구개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자립생활지원 모델 연구개발  
 장애청소년에서부터의 자립생활 전환교육 체계 연구개발  
 고령 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개발

### 건강권(3)

기본권으로서의 의료지원 보장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 강화  
 무장애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장애인 건강검진 강화·확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급여·전문성 확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급여 확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센터 내실화

### 노동권(4)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공공고용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시범 도입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장애인 고용평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대구 장애인 고용평등지수 조사 실시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  
 장애인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고용지원인력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시범고용 확대  
 장애 청소년·청년 직장 인턴십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고용확대  
 장애정도·유형별 고용지원체계 연구

임금평등조치

대구 장애인 임금 최저선 도입

사업주 인식개선과 지원

대구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연구

### 교육문화권(5)

기초교육 기회 확대

대구시 교육청 공동협력 사업으로의 통합교육 강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성인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성인 교육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저소득 장애인 평생교육비 지원

장애유형별·성별 맞춤형 교육

발달장애인 전환프로그램 확대

장애여성 교육지원사업 확대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접근권 강화

문화여가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시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장애포괄 원칙 수립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저변 확대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사회활동에서의 발달장애인 사고 예방과 지원체계 강구

장애인 당사자간의 자조모임 활성화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위한 다목적 시설 건립

## IV. 나가며

대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시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장애인인권센터 및 장애인 쉼터 설치와 같은 인권증진사업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작년 9월 장애인복지전담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 중심의 업무분장 이외에도 복지수요에 맞는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의 정신적 장애인, 인권분야, 탈시설·자립생활지원 분야 등의 업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의 인권문제는 복지의 한분야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장애를 포괄적 인권문제로 인식하여 대구시 모든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우리 모두 다함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토론1】

## 대구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토론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I.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실질적인 전면 시행의 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이듬해 4월 11일부터 시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① 장애인 등(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하여 ② 모든 생활 영역(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 모부성권, 가정·시설)에 걸쳐 ③ 누구든지(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④ 모든 유형의 차별(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⑤ 차별 발생 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가 민간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까지 모두 적용되는 해로, 사실상 법의 유예조치가 끝나는 해이기도 함.

## II. 그러나 의미가 무색한 7년, 법의 인지 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러나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상당수는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80%가 차별을 느끼고 있다(전혀 없다 0.8%)고 응답한 반면 70.8%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법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대구시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이 후, 2011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구성, 학술연구용역, 적은 예산 수준의 교육홍보사업 정도를 시행한 것 외에 뚜렷하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이 미비한 상황.

## III.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이 2008년부터 제기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과 조례 제정 요구, 2010년-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활동과 인권조례 만들기 추진단, 타 시도에서의 자치법규 제정 흐름 속에서 2011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 당시 장애계에서 제안하고 있던 안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담 부서, 장애인차별시정관, 권한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핵심적인 차별 대응 및 권리구제 장치에 대한 내용은 삭제됨. 그 결과 기본계획,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평이한 내용으로서의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그 후 대구시는 2013년 본 예산에 ‘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용역’이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연구는 분명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제6조(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하나의 예산에 모두 맡기려 하기도 함. 이에 420장애인연대 등은 연구의 성격에 맞게 그 목적과 주제, 과업의 범위를 설정해야 함을 강조. 더불어 3천만원이라는 목적에 불충분한 연구비의 책정은 기본계획의 시간 단위가 5개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성과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음을 우려.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에서의 장애인단체와 차이가 존재.

결국 대구시가 제안하는 내용과 예산의 부적합 문제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사양하고, 마땅한 사회복지 전문 민간 연구기관도 찾지 못한 가운데 2013년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그 예산마저 삭감당한 가운데 2014년이 되어서야 연구 착수.

#### IV.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Right Based on Approach)’ 장벽 없는 대구 만들기라는 비전은 그 동안 장애인의 ‘욕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배제함을 정당화 해왔던 관점을 극복했음. 개인의 욕구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의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제언했다는 것에서 연구는 매우 유의미함.

이에 따라 ‘권익보호와 차별시정’분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철폐’라는 목표에서, 접근권이 동권, 자립생활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문화권 분야는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목표에서 수립. 여기에서 탈시설을 포함한 자립생활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명기한 점은 타 시도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성과임. 그만큼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문제가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에 동의하며 여기에서는 기본계획의 성과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음. 더불어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접근/이동권, 자립생활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반 구축 부문에서 제시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정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 배치,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위원회 강화 등의 내용은 조례의 개정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장애계 현장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음.

중장기적으로 제시된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장애포괄 정책입안 원칙 적용, 장애아동과 장애여성, 소수(저출현) 장애인,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제안함으로써 추 후 1번째 기본계획 이 후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노력이 더욱 섬세하고 심도 있게 접근되어야 함을 지적.

## 접근권·이동권 보장

그 간 투쟁의 성과이자 권영진 시장 들어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은 역시 저상버스의 도입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개정 전)에 따라 2013년까지 시내버스 50% 저상버스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대(12%)에 머물렀던 도입률이 2014년 말 기준 231대(14.8%)로 높아졌으며, 2015년 129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 대구시는 2018년까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781대(50%)의 도입을 목표 중.

그러나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 특장차)의 경우에는 법정 대수 141대에 미치지 못하는 103대(이 외 일반택시 45대)에 머물고 있으며, 2015년 역시 9대의 추가확보만 예정하고 있어 조속한 법정 대수 확보가 필요함. 대구시는 2018년까지 특장차 140대, 일반택시 260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2006년 기본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 4월 말 개통 예정이며, 현재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무인운전, 순회관리제도를 통한 무인역사 시간대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개선·보완을 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인력 지원 미비의 우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더불어 3호선이 지상 모노레일 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에 차량 사고 시 비상대피에 대한 문제 심각하게 예상되고 있음.

현재 대구시는 3호선 전체 인력 396명 중 역사관리 인력을 118명(3교대), 6개역 당 1개 관리역(30개) 순회근무 배치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전문역무원이 역사 간을 순회하며 관리하게 됨. 이 외 공익요원, 질서안내원 등의 비전문인력을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 상주시킬 예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지원과 안전 관리에 있어서의 책임성 문제, 전문성 문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한편,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승강장과 객차 사이의 틈과 높이차(둘 다 모두 최소 8cm~최대 12cm 정도)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지적되었으며, 휠체어 사용자 좌석이 66cm\*70cm로 매우 협소하고, 거의 유일한 차량 내 대피방법인 비상건넌편의 경우에는 77cm 정도의 폭만이 확보되어 객차 내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안적 문제와 함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편의시설 확충, 의사소통 지원, 교통환경 조성 등의 정책에 대구시가 적극 나설 필요.

## 자립생활권 보장

대구시가 정식적인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분야임. 본 연구에서는 시설화 방지 및 시설 내 거주인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와 전환지원 인프라, 소득/주거/활동지원 중심의 정책 강화, 장애인의 상황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음.

권영진 대구시장은 탈시설화 추진을 위하여 7개의 정책공약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의 구체적인 형태로서의 탈시설화 연간 추진 목표인원, 개인별 지원 계획, 공적 전환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 소득/주거/활동지원 등 제반 정책의 예산확대 계획이 함께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권영진 시장이 체결한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7개 정책공약 >

장애인복지정책의 탈시설화 입장을 표명하고, (가칭)장애인지원과 신설을 통하여 탈시설-자립전환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대규모 생활시설의 (입소자 추가증원 없는)소규모화, 신규시설 설립금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생활시설 정책의 폐기 계획을 수립한다.

임기 내 전체 시설 입소자 20%의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한다.

(가칭)장애인지원과 내 탈시설-자립전환지원팀을 설치하고, 시설 거주인에게 주기적인 탈시설 홍보, 상담, 교육, 욕구조사, 지역자원연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한다.

탈시설-자립전환을 위한 전환주거(자립생활가정, 자립생활체험홈)를 확대하고, 공적인 전환지원서비스 체계를 만든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의 예산을 확대하고, 운영을 현실화 한다.

탈시설 초기정착금을 현행(1인당 5백만원)보다 확대하고, 관련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방안을 강구한다.

V. (가칭) 대구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에 관하여

2007년 7월 대구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가 개소되고 난 뒤, 2014년 상반기 기준 총 598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접수. 2007년 하반기 3건에 불과하던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149건으로 상승.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전반의 문제로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장애인권 감수성의 결여 등이 지적 되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별시정을 요청한 당사자들조차도 몇 개월씩 걸리는 진정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심하는 상황. 점차 법의 사문화 우려.

이에 대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지닌 법적 권한에 더하여 전문적이고 감수성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 장애인차별상담 접수 경로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 등을 동시에 해나가며 지역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차별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요.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인권센터에 직권조사, 대리소송, 법률지원 등의 강력한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필요요. 더불어 장애인 상가정시설 등에서의 폭력 피해자들이 긴급 분리되어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동시에 필요요.

반관반민간의 성격을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문 센터를 만든다는 방향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경계하여야 할 점은 운영주체 문제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운영주체가 민간이라고 하여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지는 않음. 인권센터가 단순히 교육과 홍보의 거점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조사체이자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논의가 운영주체에 매몰되지 않고 기능 중심으로 사고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에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함께, 실제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직권 조사/상시조사와 대리소송이 가능한지, 시설의 인권침해에 있어 직접적인 폐쇄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명하듯, 법률상 장애인인권센터 자체에 대한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민간에 위탁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서울지역과 다른 대구지역의 사실상 장애인 인권교육/홍보단체 이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선적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인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조사/권리구제, 교육/홍보 등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1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조사/권리구제에 무게를 두게 된다면, 상담의 창구를 다양화 하고, 장애인 인권 교육과 홍보의 인프라를 지금보다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한 민간 장애인단체의 차별상담 및 대응, 인권 교육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요.

【토론2】

## 대구시 장애인인권기본계획 및 대구시장재인복지에 대한 토론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의례적으로 토론회가 아니라 2014년 9월 우리 대구시에 장애인복지과가 만들어지고 이후 대구광역시의 장애인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오늘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어느 때 보다 뜻 깊게 생각한다.

대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복지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고,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곳이다. 또한 토론자가 대학시절 장애인인권확보를 활동했던 장애인대학생 동아리(푸른샘)가 1977년 처음 결성되고 이후, 첫 직장이었던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다음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던 것을 기억해볼 때, 대구에서의 장애인복지의 변화와 노력들을 통해 이루어진 지금의 이 자리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

### II. 제언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후, 2011년에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동 조례에 따라 제시된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에 다양한 평가와 토론은 의의가 크다. 본 토론문은 첫 번째 발제내용인 대구장애인인권

기본계획과 두 번째 대구시의 장애인복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덧붙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인권기본계획의 6개분야 총 24개 과제 중 자립생활보장에서의 추진방향에 장애유형, 성별, 연령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섬세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립생활 지원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듯이 덧붙여서 자립은 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인 만큼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립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 심리, 사회, 기타 영역에서 자립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자립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시설장애인의 무조건적 탈시설, 자립이 아니라 탈시설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립생활실현을 위한 소득보장, 활동지원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측면에서, 시설종사자 측면에서, 가족, 지역사회측면에서 자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자립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추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재입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어떤 영역보다 철저하고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동권 및 장애여성의 부분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대구시인권기본계획에서도 장애여성과 소수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언급이 되고 있으나 미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실천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구시의 2015년도 계획을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출산비용지원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지원서비스가 교육 및 출산 등 모성역할에 국한되어 있으며, 양성평등적인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대구시 여성장애인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다양하고 실제적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 지원(3개소 1,142백만원)에 대한 부분에 참가하여 대구에는 장애인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긴 하나 성폭, 가폭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일시 및 긴급보호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기존 피해자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종사자의 이해교육등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여성장애인 쉼터 및 일시보호소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좋으나 예산적인 문제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환경조성을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 기관별 장애인인권을 위한 공조체계를 만들어 연계서비스를 해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의 모성역할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위기가정 및 결손가정위주의 서비스를 해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을 확대하고 인력 및 예산지원을 통해 기존 각 구별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이주 외국장애인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센터 등도 함께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대구시의 장애인계획 중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 : '15. 상반기의 내용에 대해서 제언하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개념은 가족구성원중 한사람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가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서비스와 사업이 장애아동의 가정에 국한 되어 있다. 장애아동가족뿐만아니라 장애인부부가족, 장애인한부모가족, 장애인조손가족 등 다양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례제정 시 장애인가족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 학생 및 가족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특수학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과 장애인관련기관단체의 사업의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보다 합리적 예산배정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연계사업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대구시장예인인권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들도 자신들의 인권을 위한 역량강화와 적극적 참여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의 경우도 기존 일부 장애인단체나 기관에 편중되는 운영과 실천이 아니라 장애대중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홍보를 통한 대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토론3】

## 지역기반의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및 역할<sup>2)</sup>

김예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상임변호사

### 1. 들어가며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은 크게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접근권·이동권, 자립생활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문화권을 세부분야로 나눠서 구체적인 기본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인권센터는 첫 번째 분야인 권익보호와 차별시정의 단기목표로 설정되고 있으며 그 주된 업무범위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관리, 인권상담, 인권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범위라고 소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2014.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예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서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주된 목적을 둔 동 기본계획은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지원인프라 강화)로 세분화되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특히 그 첫 번째인 ‘권익보장’의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사실조사, 권리구제,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2015. 4. 10.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주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토론회 토론문

서울센터는 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사건 전문 상담전화 (1644-0420)를 운영하여 사건을 접수받고 그 중 장애인 인권침해의심사건 조사, 법률지원, 피해자 사후지원(원스톱서비스 지향), ② 서울특별시 관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피해자대리 및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및 심층조사수행, ③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일반인권교육,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사후대처방법교육 등 장애인 인권 전문교육 수행, ④ 기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인식개선 캠페인, 지침 또는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선 발제 중 제2발제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상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센터의 운영현황을 토대로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한다.

## 2. 시설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재가장애인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발제문은 장애인인권센터가 ‘지역내의 장애인 차별사건과 인권침해사건’에 기능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서울센터도 물론 시설사건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다. 시설사건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전수조사에 대한 심층조사는 물론 인지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사법절차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개입한 조사, 법률지원, 피해자 사후지원(원스톱서비스 지향)에 관하여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의 비율보다는 재가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경우는 관련법령상 공적 관리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런 체계가 미흡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매우 적은 일종의 사각지대인 점이 그 이유이다. 즉, 서울센터는 ‘지역기반의 P&A기관’이 ‘지역밀착형 인권옹호활동’에 역할을 잘 해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 3.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장애인인권센터 구축 필요

발제문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성격과 역할이 다르므로 오히려 차별화를 통한 장애인인권침해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 비해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크게 기여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사기관은 압도적인 계류사건수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을 인지하는 것이 현실상 매우 어렵고, 막상 가해자가 형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장애 관련 인권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다보면 다른 강력사건에 비해 소홀히 취급당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 및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행사로 많은 차별시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계점도 있다. 진정사건의 폭증 등을 이유로 실무상 사적(私的)사건이 진정되면 주로 각하, 기각, 조사중해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사건처리 방식은 장애인 일방을 위한 옹호자의 입장보다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결정문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입장에 가깝고, 설사 간혹 장애인 차별이 맞다는 시정권고결정이 나와도 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인권센터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판단기관의 역할을 한다. 동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판사'의 역할을 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차별행위를 넘어서서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sup>3)</sup>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옹호자('변호사')의

3) 물론 경우에 따라서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단순한 법률정보 제공의 차이를 넘어서서 사건에 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실무상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인데, 결국 센터가 개입하는 사건의 기준은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장애인인권센터는 ‘조사행위’ 자체를 당사자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적 진실발견 및 채증의 과정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을 내린 이후 피해자 지원 등 후속지원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인권센터는 가능하며 이렇게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당사자와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인권센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센터도 이러한 장애인인권센터가 판단기관이 아닌 ‘옹호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상담전화(1644-0420)·홈페이지·이메일·언론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을 접수받는다. 그 중 장애인 인권침해의 심사건에 대하여 조사(1차상담, 심층상담, 방문대면상담, 현장조사), 법률지원(소송, 자문, 공문에 첨부한 법률의견서 송부 등), 피해자 사후지원(원스톱서비스로서 가해자와 긴급분리, 피해자 컴퓨터의 인계, 의료지원,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 복지시스템 매칭 및 연계)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에도 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인권센터가 특히 더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헌신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 방향성을 견지하기를 제안드린다.

#### 4. 조직에 관한 의견

발제문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가 3팀 혹은 2팀 등을 제안하며 인력구성 등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성 혹은 업무분장은 서울센터와도 비슷하다.

서울센터의 주된 업무는 ① 상담을 통한 조사 및 구제<sup>4)</sup>, ②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입법운동, 매뉴얼발간, 제도연구논문게재 등) 및 정책연구(법령 등 모니터링 및 의견제진, 정책입안자들에게 구체적 정책제안), ③ 인권교육<sup>5)</sup>(장애인거주시설 조사 시 주의사항 및 체크

4) 개소 1년차인 2014년의 경우 2014.2.~2014.12.까지 657건의 장애인인권침해 사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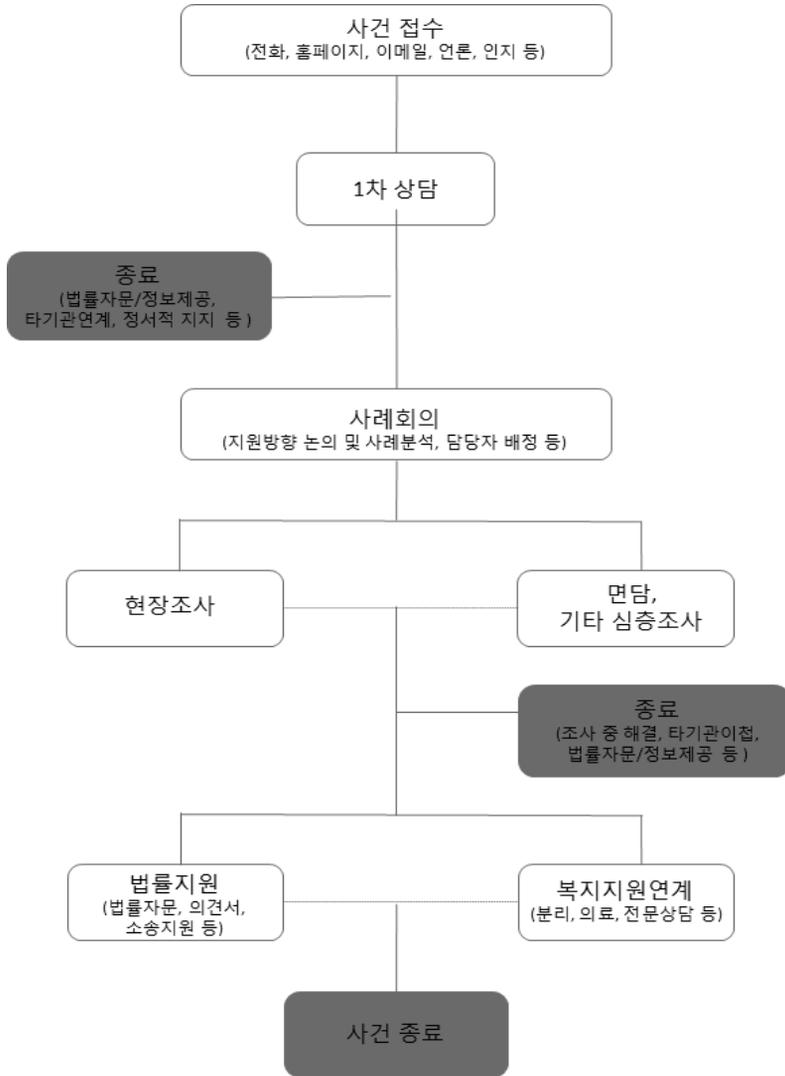
5) 개소 1년차인 2014년의 경우 2014.2.~2014.12.까지 약 8,300명의 학생, 공무원, 종사자, 당사자, 공공기관 직원, 특수지역(변호사 등) 대상 교육실시

항목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교육, 탈시설장애인 자기결정권 교육/ 새내기입학생 대상 장애인 이해 교육/ 장애인시설 거주인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 옹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의무사항 및 미준수 시 법령 및 사례교육, 장애유형별 응대방안교육 등) ④ 총무회계홍보사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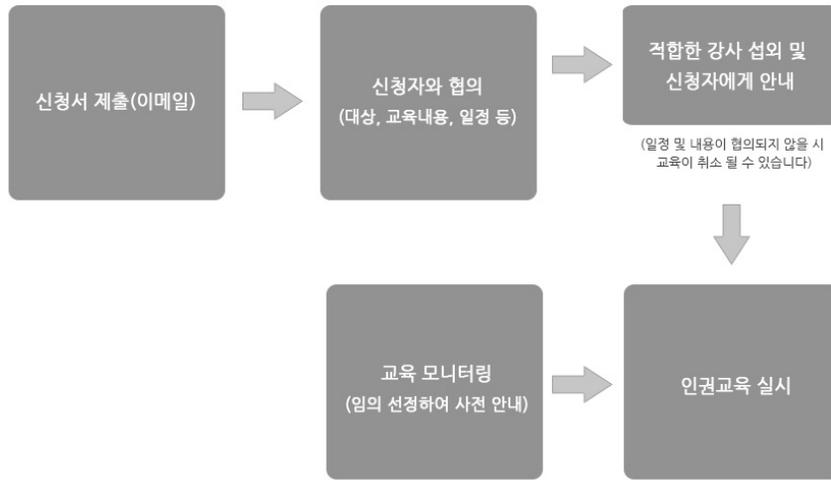
그러나 상담과 조사구제팀이 한 팀을 이루고, 교육팀 및 총무기획팀이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조사로 구체화하고, 이어 구제 및 피해자지원으로 연결되는 원스톱서비스를 이어가려면 상담팀과 조사구제팀이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센터는 교육사업이 기존의 교육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례를 접목하고 교육대상에 맞춰 매년 교육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등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데, 이에 투여되는 노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교육사업은 대상의 다양화, 내용의 내실화를 계속 고민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교육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참고로 서울센터의 상담 조사 구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다른 참고로 서울센터의 교육업무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상담조사구제업무와는 별도의 절차가 효율적이다.



## 5. 인력구성 관련 변호사채용의 필요성

인권침해사건에 기동성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법률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시설사건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 사례에 맞는 빠른 법률 자문 및 법률적인 판단이 사건의 초기방향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이에 서울센터는 시설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위임받은 법률적인 대리인으로서 전방위적인 권리옹호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권리옹호를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는 올바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센터는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송 뿐 아니라 신청대리 등 다양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하고 있고, 특히 소송 등의 절차로 가야 할 경우에는 헌법소송, 민사형사가사행정소송, 소년재판 및 이에 각 부수하는 보전절차, 집행절차, 소송구조, 국선대리, 피해자대리, 국선보조, 영장실질심사 등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해결을 위하여 소송 이전의 합의서, 의견서, 질의서, 신청대리, 진정절차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행정적 절차를 활용하는 법률지원으로 소청제도, 징계위원회, 공익제보, 행정심판,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등의 절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나 가사 소송대리는 지양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행청구소송과 같은 기획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활용하고 있다. ② 형사 피의자대리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등 제도적으로 구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양하나,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원인이 되어 수사절차상 심대한 방어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자대리를 수행한다. ③ 센터에서 하는 법률지원의 대부분은 형사 피해자대리이다. 초기상담, 채증, 선임계제출, 의견서제출 등 일련의 형사피해자 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등 법률조력인제도와 같이 특별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송수행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과 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이후 위임장이나 선임계 제출은 변호사 명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적절성과 센터 업무분담 고려하여 센터 법률지원단<sup>6)</sup>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 공동수행의 경우 사건의 대외비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의뢰인의 사전동의를 받고 공동수행을 의뢰하며, 사건진행의 모니터링 및 보안을 위하여 수시로 법률지원단과 회의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의뢰인을 배제하고 센터자체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 지 제도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현행 민사소송법상 병행형 제3자 소송담당<sup>7)</sup>제도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이러한 사항이 별도로 입법화되지 않으면 서울센터가 개개 사건에서 원고적격을 부여받기에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태라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는 이와 같은 개별적 법률지원을 통한 권리옹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의 경우 입법운동, 법률안에 대한 법률 의견송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6) 센터는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동 법인 소속 변호사 27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7) 제3자 소송담당 :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또는 권리관계의 주체와 함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구별됨. 법정 소송담당 중 병행형 소송담당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등 법정된 자만 가능함. 갈음형 소송담당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수행시 파산관재인, 유언에 관한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 등 법정된 자만 가능함.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지침마련 등 권리옹호를 위한 고유 업무범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제도개선 관련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위와같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의 근본적 권리옹호 및 발본색원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필수적으로 법률지원 및 법률연구가 요청된다. 센터에 상근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빠르고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으로 초기 사건의 방향 및 결론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구 장애인인권센터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권리옹호활동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6. 나오며

장애인인권센터를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인권옹호에 큰 기여를 하는 좋은 시도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인권옹호활동은 미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겠지만, 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단계에서 다음 몇 가지 점<sup>8)</sup>은 꼭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① 서비스 제공자(장애인 복지시설 등)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공공기구로 구성되거나 공적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 민간단체에 의하여 옹호가 이루어 질 것, ②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할 것, ③ 서비스 제공기관이 권리옹호제도를 인지하고 장애인(거주인)에게 입소시 공지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알려줄 의무, 신고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 등을 통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권리구제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권리침해 징후가 있을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할 것, ⑤ 피해자를 피해 상황 또는 가해자로 부터 분리하고, 보복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를 행할 수 있을 것, ⑥ 법에 의한 조사권한이 부여될 것, ⑦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인력에 의해 운영될 것, ⑧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 ⑨ 권리옹호기관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등이다.

8) 박숙경,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항상적 감시 및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하면 대부분 ‘도가니’에서 파생되는 여러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건을 떠올린다. 따라서 지난 2014년 이른바 신안염전노예사건처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게 여긴다. 장애인 인권운동의 큰 방향인 ‘탈시설 운동’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보다 재가장애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경우는 관련법령상 공적 관리감독체계(자치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런 체계가 미흡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살필 여지가 없는 일종의 인권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한 장애인인권센터가 최소 시도단위 이상 설립 운영되고 특히 대구에 잘 정착되어, 장애인 인권침해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기능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속히 확립되길 바란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광주)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 장애인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광주)

## 행사개요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일시: 2015. 4. 14(화) 14:00~16:30(광주)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5층)**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14:00~14:05	개회선언
14:05~14:20	♣ 기념사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축 사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박 향 ♣ 축 사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용목
	좌장: 이용근(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14:30~14:50	[발제1]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원칙 및 기준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14:50~15:10	[발제2] 광주지역 장애인 고용 및 고용지원 현황 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5:10~15:20	[토론1]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의 현황과 과제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0~15:30	[토론2] 한계로서의 장애인고용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5:30~15:40	[토론3] 꿈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꾸는 것이다(직업유지 관점에서) 황현철 광주장애인인권센터장
15:40~15:50	[토론4] 장애인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 정현욱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15:50~16: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20~16:30	정리 및 폐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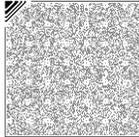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발제1]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원칙 및 기준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 제1】

##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원칙 및 기준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I. 장애인 노동권 이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는 이슈는 고용(employment)과 소득보장(income security)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이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정착으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생활의 주류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자립생활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줄 것이다. 장애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책무이다.

UN 장애인인권협약 제27조(노동과 고용)는 고용부문에서의 장애인 차별·차취의 심각성과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 시장·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로 노동권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환경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막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노동과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노동시장·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증진해야 한다.

(a) 모집,고용,고용의 지속, 승진 등의 조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형태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b)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호의적인 노동조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 고충거리의 시정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c)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장애인 일반저진 기술·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저진 훈련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 일자리를 찾고 얻고 유지하며 일자리에 복귀하는 등에 있어서의 원조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증진한다.

(f) 자영·기업경영의 기획, 협동조합 개발 및 창업의 기회 등을 증진한다.

(g)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h) ‘적극적 조치’프로그램, 장려책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한다.

(i) 작업장에서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j)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이 노동 경험을 습득하도록 증진한다.

(k)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 등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조, 제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광주인권헌장 제11조 ③에 “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촉진하고 취업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II.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왔다. 교육 및 훈련이나 재정자원에 대한 접근기회의 상실이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는 원인이 되는데 반대로 그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직장이나 고용주의 인식의 특성이 되곤 한다. 사회보호제도도 장애인이 고용을 벗어나 장애급부에 의존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 1) 접근기회의 상실

괜찮은 수입을 위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에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젊은 장애인들은 정규 교육에의 접근이나 기술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성이 더해가는 정보 기술 분야는 특히 그러하다.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교육수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장애인은 고용에의 물리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환경 장벽을 경험한다. 일부는 출퇴근을 위한 매일의 교통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입사면접이나 실제의 작업환경, 동료 근로자들과의 친목 모임 참여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들도 존재한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보접근성 문제가 더 큰 장벽일 수 있다.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금을 대한 접근 기회의 결여이다.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에게는 대부분 담보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많은 잠재적 대출기관이 그릇되게도 장애인을 대출 고위험 집단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신용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 2) 장애에 대한 오해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오해는 그들의 고질적 실업과 직장생활에서의 승진 기회 박탈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 태도는 편견이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믿음에 기인하곤 한다. 특히, 정신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조정 방법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오해들은 종종 비장애인 고용주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자신들에게도 널리 퍼져있다.

일부 장애인들은 자신의 취업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고,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됨으로써 구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구성원 등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하는 것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 3) 차별

고용주들은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에 혹은 그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곤 한다. 손상에 따라 편견의 정도도 다양한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크다. 정신장애인의 29%가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고, 42%는 직장이나 교육, 훈련에 지원할 때 자신의 상태를 숨길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 III.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 1) 사회적 인식개선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여 장애인고용을 강제하거나, 직접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교사나 공무원 진출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 중의 하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용자나 인사담당자(관리자)의 경우에는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 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장애인고용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2)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는 직업지원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애인근로자가 취업 후 직장의 사회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에 적응해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Anderson은 이러한 사후관리를 “장애근로자가 고용된 후 근로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근로환경을 장애인근로자에게 맞도록 조정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장애인이 일정과정을 거쳐 취업이 되더라도, 장애인이나 고용주가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므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과 사업주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후지원이라 하며, 최근에는 follow-along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결국 사후관리는 직업지원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지원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장기근속 장애인이 일정 %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 3)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고용과 관련한 상담·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이 각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중복영역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직업능력평가사, 직업훈련교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적 서비스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기업, 취업장애인, 미취업장애인 모두의 경제활동 강화, 고용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기관간의 정보교류 활성화와 상호연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센터-폴리텍대학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직업적 능력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의 진출이 가능한 첨단직종을 선정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신기술 및 정보 제공)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쪼록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한다.

## IV. 장애인고용 관련 주요쟁점

### 1)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법률상에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신규채용)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6%이다. 따라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을 6%로

강화하고, 모든 기관이 매해 6%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토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고 되어있다.(시행령 제25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또한6%에 근접한 수준으로 시행령에 담고, 향후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적용대상		연도							비고
		'91-'08	'09	'10-'11	'12-'13	'14-'16	'17-'18	'19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2.0%	3.0%				3.2%	3.4%	정원 기준
	근로자	미적용		2.3%	2.5%	2.7%	2.9%	3.4%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2.0%		3.0%	3.0%	3.0%	3.2%	3.4%	상시근로자 기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3%	2.5%				
민간기업					2.7%	2.9%	3.1%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

(단위: 개소, 명, %, '13.12월 기준)

구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의무고용률
계		27,349	7,499,665	153,955	2.48	
정부부분	공무원	313	836,367	19,275	2.63	3.0
	근로자	295	269,640	7,082	3.51	2.5
민간부분	공공기관	268	310,461	7,764	2.81	2.5, 3.0
	민간기업	26,473	6,083,197	119,834	2.39	2.5

## 2) 고용장려금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고용장려금의 지급 조건으로 장애정도와 성(性)뿐만 아니라 고용기간까지 고려하고, 실제 지급 시 단가뿐만 아니라 지급기간까지 달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로 경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고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축소지급하고 있다.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경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것이지,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 고
입사일 ~ 만 3년까지	300,000원	400,000원	400,000원	500,000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만 3년 ~ 만 5년까지	210,000원	280,000원	400,000원	500,000원	
만 5년 초과	150,000원	200,000원	400,000원	500,000원	

## 3) 중증장애인 인턴제

최저임금(현재 기준 월120만원) 이상 보장은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 인턴제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인턴기간	9개월 (1인 기준)	6개월 (인턴 후 취업자에 한해 6개월 추가 지원)
인턴급여	135만원 (1개월 기준) 최저임금의 105%	80만원(1개월 최대금액) 노동부75~80%, 사업주 자부담 20~25%
시범사업	직업체험과 역량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	예산전용의 문제가 있어 시범사업 불가 시험고용II 형태로 실시
확대방안	1차 : IL센터 중심 맞춤형 현장 취업 경험 및 최소한의 경력 확보 2차 : 장애인 단체 및 거주시설, 병원 등 일반시장으로 확대	본 사업 시작부터 일반시장으로 전면개방 실시
사후방안	인턴제 후 일반시장고용 및 사회연대고용제 도입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대체노동시장 형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확보	인턴제 후 일반시장고용으로 진입
예산출처	서울특별시 본예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인원	서울특별시 22명	전국 200명 정도

#### 4)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정부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비영리부문에 중증장애인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중증장애인공공고용제도 도입해야 한다.

고용책임은 해당고용기관, 임금지원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현재 기준 월120만원) 이상 보장, 정규직 고용.

중증장애인인턴제(1년) 종료 후 중증장애인의 고용대안으로서, 중증장애인인턴제 계획과 함께 사업 확대 시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과 직종, 유형 등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공공고용제 실시.(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사회적 기업, 발달장애인 등)

#### \* 참고문헌

광주인권헌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노동부(2015),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국가인권위원회(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5), 2015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동조합(2013), 장애인고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장애인재단(2012), WHO세계장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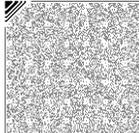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2]

광주지역 장애인 고용 및 고용지원 현황



【발 제2】

## 광주지역 장애인 고용 및 고용지원 현황

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I. 서론 : 새로운 10년의 한 가운데에서

통상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어제와 오늘을 88올림픽 이전과 이후, 장애인차별법이 제정된 전과 후로 구분 짓는다. 88올림픽에 맞춰 한국 사회의 전반을 국제적 기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장애인복지도 그 중에 포함되어 정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또한 올림픽 이후 치러진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도 장애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인식하게 하였고 주체로서의 요구를 당당히 내세우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 장애인들의 사회운동의 결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고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8년 4월 11일에 제정되었는데, 1988년 이후 장애인계의 수많은 노력들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만 7주년이 되는 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년의 한 가운데 서 있다. 88올림픽 이후 10년 만에 장애인차별법을 만들었다면 장애인차별법 제정 이후 10년, 다시 말해 앞으로 3년 뒤에 한국사회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더불어 장애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인류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듯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10년 터울이 아닌 더 빨리 만들어 낼 수 는 없을까?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과 무거운 의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오늘은 장애인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지역 장애인 고용 및 고용지원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는데, 아무쪼록 장애인들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직접적인 부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다. 이 법은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됐다.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 및 고용지원의 현황의 대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II. 본론

### 1. 장애인 고용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앞서 말한 것처럼 광주의 장애인 고용 및 고용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장 보칙 등 총 6장 8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부담 등을 담고 있다.

2조에서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해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3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고용촉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사업주·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의무를 규정한다. 더불어 사업주에게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기회 제공과 적절한 고용관리, 차별 금지와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를, 장애인에게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각과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토록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의 종류, 직업 지도 및 적응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과 보호고용, 자영업 장애인 지원, 장애인 근로자 지원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및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지원·우선구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장애인 실태조사 등을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상시 50명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에 대한 규정,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을 말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과 수행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5조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설치하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등의 출연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어렵지도 않고 우리 생활-특히 직장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문 내용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니 어려울 것이 라던가, 법은 법을 다루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공유물로 인식하는 등의 선입견으로 법을 잘 읽지 않는다. 이 법이 장애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결코 간과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깊어보았다. 물론 이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럼 점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한국법체계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법 조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시 시행규칙으로 이어져 실무에 적용시키는 단계로 내려간다.

이런 체계는 입법기술상 모든 것을 규정하기 어렵기에 전문적인 분야에 맡긴다는 의미도 가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상, 명확한 기준, 예외 사항, 실제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고, 법 28조에 2항에 나온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도 시행령처럼 구체적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서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

## 2) 광주 및 지역의 관련 조례 현황

법이 한국사회전반에 미친다면 지역에는 조례가 있다. 조례는 법이 정하는 바를 넘어서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법보다 더 세부적이거나 지역의 특성과 재량을 담아낸다. 광주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다. 두 조례 모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근거로 만들어 졌다는 것은 관련법이 개정을 하게 되면 조례도 앞서 말한 '넘어서거나 반대되는 경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개정이 돼야한다, 그 내용 또한 유사하다. 조례의 내용에서 먼저 목적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돼 있으며, 기타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장의 책무,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은 광주지역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선 구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를 비롯한 그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 또는 구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며, 관내의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시가 관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게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도 된다.

광주광역시가지고 있는 이 두 조례는 모든 자치단체가지고 있지는 않다. 광주시 5개 구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동구에만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동구와 광산구에서는 노인이 포함된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서구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제정돼 있다. 한편, 여기에는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생산품이 장애인 생산품인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을 일정 정도 이상을 고용하는 등(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얻은 회사의 제품이고,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의미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대상이 더 넓다.

두 조례 제정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광역단체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 충남, 전남, 경남 등 9곳이 있고, 기초단체는 서울에서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3곳, 대구의 동구, 달서구 2곳,

광주의 동구 1곳, 경기도의 남양주시, 군포시, 하남시 3곳, 충남은 천안 1곳, 전남의 목포시, 광양시, 영암군, 함평군 4곳, 경남의 거제 등 총 15곳에 제정돼 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남 등 4곳이 넓은 범위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실시하고 있고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례를 가지고 있다. 기초 단체에서는 서울의 중구·성북구, 광주의 동구·서구·광산구, 대전의 서구, 경기도의 수원시·안양시, 충남의 천안·아산·논산, 전남의 목포 등 14곳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서울의 용산구·노원구·양천구·강서구·동작구 5곳, 대구의 수성구, 인천의 연수구, 대전의 동구, 울산의 울주군, 경기도의 오산시, 충남의 서산시, 경남의 거제시 등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조례로 만들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은 기초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기에 조례 또한 기초자치단체에만 가지고 있는데, 인천 서구, 광주 북구·남구·광산구, 울산 울주군, 경기 부천시·고양시, 강원 태백시, 전남 곡성·강진·함평, 경남 창원 등에 있다.

< 전국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대구- 동구, 달서구 / 광주- 동구 경기- 남양주시, 군포시, 하남시 / 충남- 천안 전남- 목포시, 광양시, 영암군, 함평군 경남- 거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인천, 세종, 경기, 전남	서울- 중구, 성북구 / 광주- 동구, 서구, 광산구 대전- 서구 / 경기- 수원시·안양시 충남- 천안, 아산, 논산 / 전남- 목포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촉진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서울- 용산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대구- 수성구 / 인천- 연수구 / 대전- 동구 울산- 울주군 / 경기- 오산시 / 충남- 서산시 경남- 거제시

## 2. 법에 따른 정책들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대상: 15세~64세의 장애인

기간: 초기상담 이후 직업훈련 최대 1년

제한: 취(창)업 중, 실업급여 수급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취업성공패키지종료 또는 중단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경우, 대학교재학생 등

내용: 프로그램 참가신청이후, 1단계 참가활동수당 최대 20만원 및 취업후 6개월까지 근속하실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금 지급

###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개요: 3~7주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

대상: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체

제외사업체: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내용: 장애인-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일 17,000원),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개요: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500만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 초액을 부과

의무고용률: 국가·지자체(공무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3%

민간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7%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710,000원(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0명인 경우
781,000	852,000	923,000	1,166,220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 이행지원: 장애인 고용률 1%미만 기업에 대해 부담금 50%를 가산 징수하는 제도

### 고용장려금제

개요: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른 지원금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기간: 월별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경중남성	경중여성	중중남성	중중여성
입사일 ~ 만 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500,000
만 3년 ~ 만 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개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내용

구분	시설비용
지원내용	작업시설-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편의시설-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지원범위	시설 투자비 전액
지원한도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의무고용의 25%를 중증고용조건)
용자기간 대출금리	용자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사업주는 공단과 은행이 약정에 따라 정한 대출금리에서 4%를 차감한 금리부담

\* 광주지사는 2015년도 예산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

공단산하 직업능력개발원

구분		대상	직업능력개발원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양성 과정	일반 과정	컴퓨터응용기계	○	○	○	○	○
		디자인	○	○	○	○	○
		전자	○	○	○	○	○
		귀금속공예	○	X	X	X	X
		인쇄출판미디어	○	X	X	X	X
		건축	X	○	X	X	X
		외식	X	○	X	○	X
		정보기술	○	○	○	○	○
		의상	X	X	○	X	X
		실무작업	○	○	○	○	○
	IT융합	○	X	X	X	X	
	시스템제어	X	○	X	X	X	
	장애 영영별 특성화훈 련	시각장애	○	○	○	○	○
		청각장애	○	○	○	○	○
		정신장애	○	○	○	○	○
뇌병변장애		○	○	○	○	○	
지적장애		○	○	○	○	○	

구분		대상	직업능력개발원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향상 과정	재직자향상훈련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	○	○	○	○
특별 과정 및 재활 프로 그램	양성훈련지원프로그램		○	○	○	○	○
	공공부문 채용시험준비		X	X	○	X	X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	○	○	○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체험		○	○	○	○	○

※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학력, 15개 장애유형 구분없이 진학 가능  
 최대 정원 90명으로 연 인원 200여명 수료  
 수료자 중 절반 이상이 광주장애인임

## 2)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사업

### 일반형 일자리사업

지원기준 : 만 18세 이상 보조인 없이 업무보조 가능한 장애인  
 지원계획 : 170명 (동구25, 서구32, 남구27, 북구46, 광산구40)  
 지원내용 : 월 1,167,000원  
 근무시간 : 주 40시간 [월~금요일, 주 5일 × 8시간]  
 사업내용 : 행정기관(구,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배치하여 업무보조  
 총사업비 : 2,814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참여형 일자리사업

지원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활동 가능자  
 지원대상 : 244명 (동구42, 서구48, 남구26, 북구72, 광산구56)  
 지원내용 : 월 313,000원  
 근무시간 : 월 56시간(주14시간×4주)/격일제 등 탄력적 운영(시간제)

사업내용 : 공공업무보조(도서정리, 주차단속보조, 환경도우미 등)  
 총사업비 : 95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지원기준 : 특수학교(학급)재학 중인 보조인 없이 활동 가능한 장애인  
 지원대상 : 122명 (서구30, 남구16, 북구42, 광산구34)  
 지원내용 : 월 313,000원  
 근무시간 : 월 56시간(주 14시간×4주) / 격일제 등 탄력적 운영  
 사업내용 : 공공업무보조(도서정리, 주차단속보조, 환경도우미 등)  
 총사업비 : 47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지원기준 :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시각장애인  
 지원대상 : 45명  
 지원내용 : 월 1,000,000원  
 근무시간 : 주5일, 1일 5시간 [1일 최대 7명까지 서비스]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사)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  
 총사업비 : 646백만원(국비 80%, 시비 2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지원기준 :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대상 : 28명 (남구16, 북구12)  
 지원내용 : 월 731,000원  
 근무시간 : 월 25시간(日 5시간×5일)  
 사업내용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총사업비 : 303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3. 각종 통계 자료들

#### 1) 각종 통계

##### ○ 지역별 구인 및 구직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구인수			구직자수			구인배수		
	'14 4/4분기	'13 4/4분기	증감	'14 4/4분기	'13 4/4분기	증감	'14 4/4분기	'13 4/4분기	증감
서울	5,756	7,057	-18.4	1,613	1,861	-13.3	3.6	3.8	-0.2
경기	2,167	3,634	-40.4	2,842	2,546	11.6	0.8	1.4	-0.6
인천	419	762	-45.0	500	612	-18.3	0.8	1.2	-0.4
강원	334	624	-46.5	231	284	-18.7	1.4	2.2	-0.8
충북	204	480	-57.5	251	354	-29.1	0.8	1.4	-0.6
대전충남	1,114	1,282	-13.1	581	653	-11.0	1.9	2.0	-0.1
전북	213	629	-66.1	249	370	-32.7	0.9	1.7	-0.8
광주전남	665	1,060	-37.3	652	838	-22.2	1.0	1.3	-0.3
대구경북	1,095	1,319	-17.0	837	963	-13.1	1.3	1.4	-0.1
부울경남	2,469	2,471	-0.1	1,372	1,575	-12.9	1.8	1.6	0.2
제주	184	242	-24.0	127	167	-24.0	1.4	1.4	0.0
미분류	63	520	-87.9	41	230	-82.2	1.5	2.3	-0.8
계	14,683	20,080	-26.9	9,296	10,453	-11.1	1.6	1.9	-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1)

2014년 4/4분기 지역별 구인수는 1년 전 20,080명에서 14,683명으로 26.9%가 감소했고, 광주는 1,060명에서 665명으로 395명이 줄어 37.3%의 감소율을 보였다.

구직자수는 전체 10,453명에서 9,296명으로 11.1%가 감소된 반면, 광주는 838명에서 652명으로 186명 22.2%가 감소했다. 구인수를 구직자수로 나누는 구인배수는 전국 통계와 광주전남이 각각 1.9에서 1.6으로, 1.3에서 1.0으로 0.3씩 줄었다.

### 지역별 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P)

구 분	취업자수			취업률		
	'14 4/4분기	'13 4/4분기	증감	'14 4/4분기	'13 4/4분기	증감
서울	990	1,129	-12.3	61.4	60.7	0.7
경기	1,837	1,374	33.7	64.6	54.0	10.6
인천	345	377	-8.5	69.0	61.6	7.4
강원	155	222	-30.2	67.1	78.2	-11.1
충북	596	201	196.5	237.5	56.8	180.7
대전충남	438	464	-5.6	75.4	71.1	4.3
전북	164	210	-21.9	65.9	56.8	9.1
광주전남	491	431	13.9	75.3	51.4	23.9
대구경북	519	541	-4.1	62.0	56.2	5.8
부울경남	1,500	932	60.9	109.3	59.2	50.1
제주	151	124	21.8	118.9	74.3	44.6
미분류	185	244	-24.2	451.2	-	451.2
계	7,371	6,249	18.0	79.3	59.8	19.5

2014년 4/4분기 전국 취업자수는 1년 전 같은 분기의 6,249명에서 7,371명으로 18%가 늘었고, 광주는 431명에서 491명으로 13.9%인 60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률은 전국적으로 59.8%에서 79.3%가 높은 수치로 올랐고, 광주는 51.4%에서 75.3%가 되었다. 취업자 수는 작년 동 기간과 비교되는 것보다는 구직자 중 얼마의 인원이 취업을 하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보다는 현재의 %가 100%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 2013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항목	특수학교 졸업 후		특수학급 졸업 후		일반학급 특수교육 졸업 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대졸업생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서울	300	55	46	167	63	39	516	426	151	61.30
부산	102	11	77	61	21	8	151	198	42	71.61

항목	특수학교 졸업 후		특수학급 졸업 후		일반학급 특수교육 졸업 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진학	취업				
대구	55	14	91	17	76	16	153	133	111	67.76
인천	74	31	88	33	19	9	151	161	42	71.75
광주	27	11	74	23	14	3	103	124	21	61.29
대전	61	4	60	24	36	11	75	111	59	80.00
울산	30	1	41	19	39	10	43	73	63	78.21
세종	-	-	2	2	1	-	-	5	2	71.43
경기	136	20	240	238	117	46	316	783	261	58.60
강원	60	22	44	39	17	10	119	104	27	76.80
충북	94	20	29	32	30	14	112	96	80	76.04
충남	65	1	68	64	15	6	10	181	26	100.92
전북	51	20	35	19	25	8	134	83	51	58.96
전남	40	17	28	28	15	11	98	105	37	57.92
경북	127	4	28	13	17	13	156	83	45	71.13
경남	117	6	85	44	57	18	150	192	100	73.98
제주	19	-	10	18	8	6	55	33	17	58.10
전국	1,358	237	1,046	841	570	228	2,342	2,891	1,135	67.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 등 장애인이 각종 학교에서 졸업한 수에서 취업과 진학의 정도를 파악한 것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학교 수업을 받던 장애학생들의 졸업

이후 취업 및 진학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국적으로 67.21%이고 광주는 61.29%로 광주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의 비율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진학 2,974명과 취업 1,306명으로 진학을 한 졸업생이 2배가 넘게 많으며, 광주는 115명과 37명으로 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고교 졸업 후 취업보다는 진학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장애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진학인지 취업을 하지 못해 가는 진학인지는 새롭게 파악을 해 볼 일이다.

또, 전체 졸업자의 수는 전국 6,368명과 광주 248명인데 취업과 진학이라는 통계에 잡힌 숫자는 전국 4,280명과 광주 152명뿐이다. 나머지 2,088명과 96명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장애인 성인 교육 및 평생교육 예산

(단위 : 천원)

항목	장애성인교육 야학지원예산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예산	등록장애인수 (18세이상)	장애성인교육 1인당예산액
서울	220,000	199,000	391,232	1,071
부산	17,000	46,000	165,386	381
대구	90,000	54,700	112,670	1,284
인천	800,000	195,200	129,481	7,686
광주	160,000	75,000	65,812	3,571
대전	34,000	80,000	68,708	1,659
울산	50,000	40,000	42,277	1,904
세종	0	130,000	7,072	18,382
경기	305,000	78,000	488,187	785
강원	75,000	153,300	97,289	2,347
충북	1,760	84,600	90,787	951
충남	44,000	238,000	121,444	2,322
전북	33,000	40,000	128,846	567
전남	0	84,000	141,523	594
경북	0	53,000	164,697	322
경남	840,000	24,800	174,690	4,950
제주	50,000	60,000	31,394	3,504
전국	2,719,760	1,635,600	2,426,495	1,79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

학령기 장애인이 아닌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예산이다. 장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인기에 도 맞춤형 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취업교육의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비율

항목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총액	2013년 장애인 복지예산총액	직업재활시설지 원예산비율	직업재활시설 근무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비율
서울	21,347,762	424,121,415	5.03	3,374	6.32
부산	5,372,410	147,976,560	3.07	708	2.27
대구	8,450,346	177,190,226	4.77	838	4.18
인천	6,672,491	157,791,517	4.23	766	4.37
광주	5,318,824	117,725,698	4.52	566	4.87
대전	8,789,582	130,944,174	6.71	491	4.70
울산	2,404,232	64,216,551	3.74	241	5.53
세종	263,443	18,465,925	1.43	55	6.70
경기	3,743,481	428,220,875	0.87	2,046	3.95
강원	6,895,000	74,260,943	9.28	744	4.86
충북	5,011,063	61,892,955	8.10	634	5.01
충남	7,827,888	120,105,890	6.52	521	3.36
전북	4,568,483	156,811,033	2.91	498	2.09
전남	1,785,196	154,478,708	1.16	338	1.43
경북	10,713,302	135,547,037	7.90	170	0.63
경남	19,723,798	148,228,508	13.31	936	3.64
제주	4,714,237	75,357,089	6.26	325	6.75
전국	123,601,538	2,620,335,104	4.72	13,251	3.79

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자 비율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수 / 18세에서 55세까지의 등록장애인 수×100으로 산정했다.

## 2013년 지역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13년 고용률	'14년 고용률
전 체	26,741(100.0)	6,393,658	127,598(100)	2.41	2.39
서 울	8,095(30.3)	2,998,937	54,396(42.6)	2.21	2.06
부 산	1,666(6.2)	277,028	6,895(5.4)	2.99	3.01
대 구	962(3.6)	163,025	3,997(3.1)	3.05	3.1
인 천	1,180(4.4)	217,917	5,630(4.4)	3.06	3.06
광 주	549(2.1)	96,689	2,377(1.9)	3.07	3.11
대 전	606(2.3)	177,862	4,279(3.4)	2.83	2.8
울 산	859(3.2)	146,134	3,024(2.4)	2.40	2.4
세 종	71(0.3)	10,577	222(0.2)	2.53	2.53
경 기	5,357(20.0)	1,163,352	22,863(17.9)	2.34	2.31
강 원	466(1.7)	88,855	1,909(1.5)	2.73	2.79
충 북	841(3.1)	125,739	2,592(2.0)	2.68	2.68
충 남	1,168(4.4)	175,024	3,409(2.7)	2.39	2.4
전 북	733(2.7)	108,333	2,740(2.1)	3.05	3.09
전 남	737(2.8)	98,314	2,078(1.6)	2.39	2.38
경 북	1,320(4.9)	224,690	4,505(3.5)	2.44	2.41
경 남	1,937(7.2)	290,015	5,919(4.6)	2.40	2.4
제 주	194(0.7)	31,167	763(0.6)	3.39	3.41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는 2.7%이다. 전국 평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39%로 2013년도에 비해 0.02%가 낮아진 것으로 나왔고, 광주는 3.07%에서 3.11%로 0.4%가 늘어났다.

2013년 지역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단위: 명, %)

지자체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서울	2.22	67,413	3,036,640
부산	3.11	9,052	291,070
대구	3.01	5,417	179,967
인천	3.13	7,234	231,126
광주	3.03	3,127	103,185
대전	2.85	5,436	190,727
울산	2.43	3,715	152,891
세종	2.77	615	22,220
경기	2.37	29,000	1,223,634
강원	3.00	3,033	101,097
충북	2.72	3,737	137,385
충남	2.51	4,675	186,266
전북	3.08	3,692	119,884
전남	2.56	2,895	113,073
경북	2.55	5,890	230,993
경남	2.48	7,648	308,371
제주	3.38	1,175	34,769
총계	2.78	163,754	6,663,298

2014년 6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기초단체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단위: %)

지자체명	장애인 고용률(공무원)	공무원 아닌 일반 근로자
본청	4.88	2.43
동구	3.33	5.93
서구	4.29	4.59
남구	5.11	3.60
북구	3.67	3.62
광산구	4.43	4.48

광주광역시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2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률
2007	1,561	84,104	1.86
2008	1,845	88,263	2.09
2009	2,065	90,000	2.29
2010	2,790	94,196	2.96
2011	2,752	93,805	2.93
2012	3,003	101,197	2.97
2013	3,127	103,185	3.03

광주시 교육청(공무원) 장애인 고용현황

연도	적용대상 공무원(A)	고용 의무인원	구분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계 (B=C×2+D)	중증 (C)	경증 (D)	
2010	10,942	328	합계	167	14	139	1.53
			교원	88	8	72	
			지방공무원	79	6	67	
2011	11,168	335	합계	188	17	154	1.68
			교원	107	10	87	
			지방공무원	81	7	67	
2012	11,233	337	합계	187	16	155	1.66
			교원	103	8	87	
			지방공무원	84	8	68	
2013	11,394	342	합계	199	23	153	1.75
			교원	119	15	89	
			지방공무원	80	8	64	
2014	11,408	343	합계	217	26	165	1.90
			교원	135	17	101	
			지방공무원	82	9	64	

\* 장애인 고용률 = {(중증인원×2 + 경증인원)/적용대상 공무원 수}×100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

연도	적용대상 인원(A)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인원			장애인 고용률 (E=B/A×100)	고용부담금 (단위:원)
			계 (B=C×2+D)	중증 (C)	경증 (D)		
2010	3,246	74	9	1	7	0.27	492,764,850
2011	4,176	96	20	3	14	0.47	585,569,600
2012	4,354	109	33	7	19	0.77	582,315,250
2013	4,561	114	60	19	22	1.3	479,400,190
2014	4,436	120	91	35	21	2.0	313,739,220

## 2) 기타 통계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중심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작업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 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업장에서 만든 생산품 현황을 보면 강원 7, 경기 28, 경남 9, 경북 17, 광주 7, 대구 10, 대전 2, 부산 9, 서울 32, 울산 4, 인천 12, 전남 4, 전북 11, 제주 10, 충 남 4, 충북 10곳으로 광주는 16개 시도에서 12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또 취업 교육을 위해 민 간에 널리 퍼져있는 직업훈련학교 및 학원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민간 훈련기관을 보면 2015년 서울 5개, 부산 3개, 대구 2개, 인천 2개, 광주 1개, 대전 1개, 울산 1개, 경기 4개, 강원 1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곳, 경남 2곳으로 나타났다.(1월 22일 기준)

광주는 상무지구의 (주)아미네스능력개발원만이 유일하게 존재했고 웹관리, 인터넷 전문가 과정 을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열풍에 맞춰 장애 인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2015년 2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은 총 229개가 설립되 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13, 경기 65, 경남 9 경북 2 광주 4 대구 14 대전 10 부산 3 서울 75 세종 2 울산 2 인천 11 전남 2 전북 4 제주 2 충남 7 충북 5개였고, 이 중 장애인을 고용 하거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9개뿐이었다.

그들은 강원도에는 장애인 직업훈련, 체험사업을 하는 꿈터사회적협동조합과 재활치료를 하는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이 있었고, 경기도에는 장애인부모들이 모여 만든 다누리장애통합사회 적협동조합, 뇌병변 장애인을 지원하는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노인돌봄과 장애인지 원을 하는 성남만남돌봄센터가 있다. 서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베레쉬트지식나눔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전통휠체어 관련 곰두리사회적 협동조합, 충북 차미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이 넘기 어려운 높은 문턱이 있는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마찬가지로 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III. 결론: 기초부터 확실하게

광주지역 장애인 고용 및 고용지원 현황에 대해 법적인 부분과 각종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봐왔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장애의 유형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나 취업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 상 경력이 단절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평생학습과 재취업 등의 기회가 더 열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장애인 운동과 장애인 정책에서도 유행 아닌 유형이 있다. 그 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몇 이상의 사람들이 좋아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새로운 자연·사회과학적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 앞서 말한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 학습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와 유행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지금껏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의 편리함, 접근성 그리고 차별철폐 위주였다면 장애인도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직업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 고용과 취업에 있어서도 맞춤형, 생애주기별 학습이 빨리 녹아들어야 한다.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취업에 있어서 사업적인 접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의무고용율도 맞추지 못해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는 중앙집중적 사업 흐름과 광주지사의 관할이 전남 8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고용과 취업에 있어서의 현상이 어떠한지, 장애인들의 욕구와 바람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광주지역 장애인 고용의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광주만의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내자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뛰는 관계자와 취업을 희망하고 잇는 장애인 모두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초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토 론1】

##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의 현황과 과제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헌법과 장애인 평등

우리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 기타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미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로 국한하여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sup>1)</sup>.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조항인 제34조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헌법의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헌법 제11조가 성별 기타 사유 등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장애로 인한 차별도 금지되는 것은 당연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차별금지의 내용이 헌법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헌법의 입장이 국내 법질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방법론, 법문사, 2005, 504면.

장애인에 대한 헌법 조항의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아온 여성의 노동에 대하여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피력한 것과는 대조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독일 기본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하여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조항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독일 내의 장애인들은 법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지위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독일의 기본법과 서독 분방의 헌법들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기본법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사회보장의 형성을 위한 조항을 반복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1950년 베를린 분방헌법 제12조 2항이 “신체장애인 (Koerperbehinderten)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독자적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sup>2)</sup>.

반면에 장애인에 대한 강력한 배려를 명시한 것은 과거 동독의 헌법이였다. 1949년 구 동독의 헌법은 제16조 제3문에서 노동의 불가능으로 인한 생계불능을 언급하고 있다<sup>3)</sup>. 또한 1974년 구 동독 헌법 제36조는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넘어서 장애인의 점차 증가하는 물질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보살핌 (Betreuung)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의무가 확장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sup>4)</sup>.

이후 동·서독이 통일 되고 일부 서독지역의 분방 헌법의 개정의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 조항의 새로운 제정과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작센주의 분방헌법 제7조 제2항은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삶의 조건의 동등한 가치를 실현할 공동체의 의무를 확인 한다”

2) 전제 조문은 “여성, 연소자 그리고 신체장애인은 노동관계에서 특별한 보호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하여 여성, 연소자 신체장애인을 하나의 보호영역으로 규정하였다.

3) 1949 구 동독 헌법 제16조 3문은 “노령, 노동불능, 실업 그리고 기타 생의 변화 (Wechselfall des Lebens)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부양을 위하여 공화국은 통일되고 광범위한 보장체계 (Versicherungswesen)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1974년 구 동독 헌법 제36조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노년과 노동불능의 경우에 사회의 보살핌 (Fuersorge)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동조 제1항)” 나아가 “이 권리는 노인시민과 노동무능력의 시민의 점차 증가하는 물질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부양과 보살핌 (Versorgung und Betreuung)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으며, 부란텐부르그의 분방 헌법에는 교육체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장려를 구체적 국가의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제29조 3항), 해고보호 (Kuendigungsschutz) (제 48조 4항), 그리고 제45조 1항에서는 장애와 노동불능의 경우 사회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독자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장애인기본권에 비교할 수 있는 차별금지조항은 핀란드의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다. 즉 1995년 개정된 동법 제5조 1문과 2문은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 성별, 연령, 출신, 언어 종교, 신념, 외관, 건강 장애 또는 기타 개인(Person) 관련한 사유로 용인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차별되어서는 않된다”<sup>5)</sup> 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헌법 제7조 1항 제2문은 “공화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취급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라고 하여 독일 기본법 제3조 3항 2문의 규정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sup>6)</sup>.

또한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하고 제25조 1항에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직, 질병, 불구, 배우자의 상실, 노령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이 장애인의 인권을 일부 언급하고는 있으나 충분히 반영되거나 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2006

년 독자적인 국제 [장애인권리 협약] 성안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었으므로 당사국의 의무로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준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된다.

5) Die Verfassungen der EG-Mitgliedstaaten, Beck-Textausgabe, 4.Aufl., 1996, 참고.  
6) Ebenda.

## II. [장애인권리협약]의 근로와 고용의 의미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와 고용)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동조 제1항). 또한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하여 당사국이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a)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b)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할 것, (c)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d)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e)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을 비롯한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할 것 (f)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할 것 (g)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할 것, (h)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을 비롯한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27조 제2항은 특별히 장애인이 노예 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동 조항에 따라 협약비준국인 우리나라는 당사국으로서 ① 장애인의 모집부터 채용 및 승진 고용연장 등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 ②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지급원칙 ③ 일반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 등에 있어서의 접근권의 보장 ④ 장애인 근로자들의 단결권 보장 ⑤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의 보장 ⑥ 적극적 조치를 통한 장애인 고용의 촉진 및 구체적으로 ⑦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III. 국내 법제의 현황

장애인의 근로와 고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법의 조치들은 다양하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차별금지법이라 함), 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등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 포괄적 차별금지의 원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제공 의무의 단서조항으로 제11조 제1항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관련 규정이라는 조건부과를 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3항 제1호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부여하고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가 될 소지가 있다. 여성 장애인 취업촉진 정책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에 표준사업장에 용자 및 지원 시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우대하는 조치만 있을 뿐 일반적인 여성장애인 취업촉진 정책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해고된 장애인의 재취업 촉진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을 통해 비장애인까지 포함한 규정이 존재하다(동법 제21조) 인력재배치나 훈련으로 전환할 경우 장애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장애인의 재취업 촉진에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 직업교육 및 훈련 등에 있어서의 접근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 나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

이와 같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취업을 위한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러한 정보와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에 참여에 장애인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면 동 규정은 장애인의 일반적인 고용은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 권리협약]이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규정을 접근권과 연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3) 적극적 조치를 통한 장애인 고용의 촉진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4항). 또한 동법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적극적 조치의 의무사항은 장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시정을 위한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물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에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일반적인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의무 이상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외에 주체적으로 채용과정에서의 [적극적조치]를 취할 의무에 관한 사항은 동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이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집단에 해당하며 현재에도 여전히 고용에 있어서 열악한 현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고용촉진 노력 이외에 적극적 조치를 통한 고용이 보장되어야 실질적 평등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 4)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의무고용부담금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며, 특히 중증 장애인 고용율은 15.8%에 그쳐 공공부문이 경증장애인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IV. [장애인 권리협약]에 비춰본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내법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아직까지 온전한 노동권의 구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협약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법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b)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명시적인 국내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전 직무 복귀나 비공식 경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조치나 해고 및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 조치에 대한 언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장차법] 제11조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에 대한 배려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자격제한으로 인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자격은 국가에 의해서 부여되거나 공인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자격증의 승인이나 취득을 위한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법률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sup>7)</sup> 이는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판단 없이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적인 시험과정이나 자격검증과정이 있어, 그러한 과정이나 기준에 의해서 자격승인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를 다른 장애와 별도로 특별한 자격결격 또는 면허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7) 변호사(변호사법 제8조) 의사, 약사, 의료기술자, 의료보조인력(의료기법 제6조), 이발사, 이용사 및 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5조), 조리사 및 영양사(식품위생법 제54조), 위생사(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설기계조정사(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주조사(주세법 제19조), 집달관(집행관법 제21조),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조),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2조),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문화재보호법 제23조) 동력수상레저기구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수렵면허(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 등의 자격 또는 면허의 제한 또는 결격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토 론2】

## 한계로서의 장애인고용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I. 우리나라의 현황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의 사회참가 촉진과 함께 장애인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의 경중과 장애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이 기준으로 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손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혹시 장애인고용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저임금의 복지고용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장애인근로자 중 정규직이 36.8%였는데 이는 비장애인의 정규직 비율이 66.9%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상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공공기관의 고용률이 2.5%미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30대 대기업 계열사 610곳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468개 사업체로 76%에 달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취업자중 경증장애인의 비율은 83.4%으로 월등히 높았으나, 중증장애인은 16.6%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인 71.1%, 감각장애인이 20.6%인데 반해 정신장애인

5.0%, 내부 장애인은 3.0%를 점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 보면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정신장애인과 내부 장애인에 비해 신체장애 및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한편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중증장애인은 높은 실업률을 경험함과 동시에 취업이 된 경우라도 일반고용 보다는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호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 II. 정부의 노력

정부는 현재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년차를 맞이한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더 좋은 장애인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제공, 장애인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대기업 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을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은 취업알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구직상담, 정보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취업을 위한 서비스 일뿐 취업이후의 사후 관리에 소홀 한다는 한계 때문에 고용의 유지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김성희 외, 2010)

## III. 장애인고용과 사회

장애인들은 신체 일부의 손상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거나 참여에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취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취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것은 최저생활이 현실적으로 보장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고용형태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미취업의 중증장애인의 83.4%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연금이나 최저생활비가 보장 된다면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수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사 형태를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통계를 가지고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장애인취업에 접근하고 있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장애인고용은 사회참가와 빈곤으로 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에 대한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장애인고용은 사회참가의 의미보다는 빈곤탈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장애인고용에 접근해야 한다.

이석원 외(2012)은 장애인의 장애특성 즉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장애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인지 여부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애인고용공단(2010)의 조사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취업현황률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고용이나 노동을 연구해온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의 연구들이 타당했음을 증명하는 연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으로 성공을 했지만 유지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 일까?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사건들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이 사회로 부각되면 ‘일자리창출’을 위해 또 노력하고 또 실패를 반복한다. 토론자는 이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니 했지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과, 장애인의 빈곤탈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왜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사회참가와 풍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아름다운 말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노동시장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투입대비 생산이 저조하다는 업적주의와 능력주의의 평가 잣대를 대고 장애인고용이나 취업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고용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신체적으로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손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능력이 부족한 것은 장애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장애인의 노동능력이나 더 많은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한계가 분명히 따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장애인노동이나 고용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발표자가 오늘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단 한가지 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것에는 사회참가보다는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즉 공공부조로서 먼저 경제적 안정이나 최저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과 노동에 대한 조사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고용이나 노동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공공부조로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낸 모순된 논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표자가 일본에서 경험한 어느 장애인 작업장의 모습을 서술하면 이 원고를 마치고자 한다.

일본의 K시에 있는 장애인작업장(빵공장)

자폐증이 심한 A의 일은 하루 종일 커다란 냉장고의 문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깨끗이 냉장고 문을 닦다가 지겨워지면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닌다. 이때 참견하기 좋아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다운증후군 B는 돌아다니는 A테리고 와서 냉장고 문을 닦아야 한다고 행주를 건네주면서 일을 시킨다. A는 한 동안 냉장고 문을 닦고 지겨워지면 다시 돌아다니고 B는 그런 A를 데리고 와서 또 일을 시킨다. 하루 종일 반복한다. 그러는 사이에 냉장고 문은 언제나 깨끗하다. 또한 C는 빵을 굽기는 쟁반에 묻어 있는 하얀 밀가루를 닦는 일을 한다. 뇌병변장애인으로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쟁반을 닦고 있는데 가끔 졸기도 한다. 조는 C에게 일안하고 왜 졸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다운증후군인 B이다. 남을 도와주고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B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졸고 있는 C를 깨워 쟁반을 닦게 하고 깨끗해진 쟁반을 굽기는 일을 한다. 빵공장의 매출이 상당한 이 공장에서의 이 풍경은 특별한 일상이 아니다. 자폐가 심한 A, 손도 불편하지만 쟁반을 닦을 수 있는 C, 그리고 애정 가득한 다운증후군의 B는 자신들 보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적은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빵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 있다.(기여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의 의미 또는 장애인 노동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 가능한 일본이라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일본도 아직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고민하고 있으며, 고용정책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한다. 다른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장애인의 노동으로 풀지 않고 공공부조 안에서 풀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밝혀 두고 싶다.

**\* 참고문헌**

- 김성희 (2010)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결정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이석원, 허수정 (2012)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p. 113~1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2010 장애인통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토 론3】

## 꿈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꾸는 것이다 (직업유지 관점에서)

황현철 광주장애인인권센터장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직업으로 답을 한다. 우리는 꿈을 직업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직업은 몇 개나 있을까? 각국의 직업명 비교를 위해 한국의 『한국직업사전(2011)』 DB, 미국의 『2010 Census』 직업목록 DB, 일본의 『직업분류 직업명 색인, 2011년 제4회 개정판』(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한국의 직업명은 11,655개이며, 미국은 30,654개, 일본은 16,433개이다. 과연 장애인인은 수많은 직업군에서 몇 개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꿈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꾸는 것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사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답은 고작 20여개에 머물렀다.

### I. 장애인의 직업유지 현황

직업재활의 최종목표는 직업의 획득이 아니라 그 직업을 유지하고 노동활동을 지속시켜 나가느냐가 직업재활의 중요한 기준이다. 직업유지는 개인에게는 생활안정과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직업을 통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노사공여의 이익제공, 연대성의 강화 등 사회발전에 함께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고용된 이후에도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내부의 고용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동향(2014), 전국장애인실태조사(201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14),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2014)에 의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6%, 고용률은 37.0%, 실업률은 6.6%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3.0%, 60.8%, 3.6%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실업률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실업률은 3.5%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 5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7년 1개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7개월 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9년 4.88년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5.52년까지 늘어났다. 20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8년에 불과하였다(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67개월). 또한 비장애인과 이직·이직을 비교해보면 비장애인은 19.2%인 것에 반해 장애인은 70%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장애인들이 빈번하게 이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발적 이직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변민수 외 2011). 이러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저임금과 실업상태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자료를 재구성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표 1> 에서 보면 전체 실업자수가 64,333명이며, <표 2> 연도별 취업자 수를 보면 최근 3년정도만 합하여도 전체실업자수와 비슷하다. 이는 남정휘(2014)의 연구와 같이 1년 이내 퇴사자가 46.1%로 장애인의 노동상태가 불안하며 잦은 이직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에 대한 취업이 아닌 단순 취업이며,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장애인의 선호직종과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449,437	970,600	906,267	64,333	1,478,837	39.6	6.6	37.0
남 성	1,420,291	745,663	702,144	43,519	674,628	52.5	5.8	49.4
여 성	1,029,146	224,937	204,123	20,814	804,209	21.9	9.3	19.8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인구	42,453,000	26,762,000	25,811,000	951,000	15,691,000	63.0	3.6	60.8
남 성	20,764,000	15,445,000	14,915,000	530,000	5,319,000	74.4	3.4	71.8
여 성	21,689,000	11,317,000	10,895,000	422,000	10,372,000	52.2	3.7	50.2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

〈표 2〉 연도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수 현황(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구인수	321,472	67,753	80,408	81,567	91,744
구직자수	195,923	40,638	43,154	43,913	68,218
취업자수	86,438	24,397	21,218	18,448	22,375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2011~2014년 재구성

## II. 장애유형별 직업유지 요인

남정희(2014)에 의하면 장애인의 직업유지의 요인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고용 환경 요인, 고용차별 특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장애요인 등이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유지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직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유지 기간이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가구소득 중 공사적 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취업가능성은 낮아지고 기초생활 비수급자가 취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급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보장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장애요인으로도 경증장애인이 직업유지 기간이 길었으며, 신체장애인이 감각장애인보다 직업유지 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 요인으로는 교육수준과 자격증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단순노무 등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고용환경 요인으로는 임금수준과 고용형태인데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길었고 정규직 또는 상용근로자가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고용차별요인으로는 차별경험과 고용차별관련 제도로 차별경험은 취업 및 직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의 편의제공 등은 고용증가 뿐만 아니라 근속기간 유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용차별 관련 제도는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가 있는데 의무고용제도의 경우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나 차별금지제도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 1.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이주희, 2008)

취업 전 취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준비와 훈련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라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현실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후에도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대인관계기술과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훈련 이전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및 동료의 이해와 지지가 가족이나 전문가들의 지지보다 직업유지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 수 있도록 고용주 및 직장 동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청각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이형렬, 2007; 황현철, 2010)

직업재활전문가(수화통역사)의 지지와 직장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직업유지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장내 열악한 직무와 임금이 직업유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장애인의 평균임금이 142만원이고 청각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25만원 수준이다. 이는 대다수의 청각장애인이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술의 직업

능력개발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유보 및 적합직종 개발 등이 필요하다. 유보 및 적합직종으로 는 우체국에 청각장애인을 일정 비율 우선 채용하여 비규격 우편물 직인 작업, 분류작업, 배달 업무 등의 직무 배치. 공무원 특별채용 또는 제한경쟁 시험을 통해 체육시설 및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청사관리, 도서관 사서 등의 적합 직렬에서 청각장애인을 일정 비율로 우선 임용. 자동차 관련 산업체와 연계하여 자동차 정비 및 조립 기능인력에 대한 맞춤훈련을 실시하여 고용. 청각장애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규모 체인점형 제과제빵 및 구두수선, 원예업 등에 대한 창업 실시. 특히, 창업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처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다른 장애 유형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3. 발달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임경원, 2005; 최민식, 2009)

장애특성과 직업능력을 고려한 실제적 개별화 고용계획서 작성을 통한 직업능력 강화와 일반근로자들의 지지가 직업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가족, 직업재활기관, 사업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고 특히, 입사초기에 작업에 대한 인지와 적응에 있어서 협력기관들과의 연대와 신뢰 관계는 장기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소비적 활동으로 근로를 통한 소득창출과 소비활동을 경제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회기술 향상, 스트레스 해소, 여가활용 등과 함께 직업유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

### 4. 시각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김영일 외, 2011)

고용주들의 시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준다. 시각장애는 모든 직무에 있어서 무능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은 업체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 및 잠재적인 동료근로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재활기관과 사업주의 맞춤형훈련 중개를 통한 취업, 시각장애인 취업 인턴제 실시, 일반적인 전산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직장내 멘토 제도, 시각장애인취업자 간담회 등을 제시하였다.

## 5.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변용찬 외, 2004; 염희영,2004; 이상욱 외 2002)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서비스가 취업알선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 및 평가, 철저한 직업평가, 사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제공 및 개선, 사업장과 관련된 환경 조성이 필요하였다.

## 6. 신장(내부장애)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최성이, 2007)

신장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환경 요인이었다. 특히, 복막투석을 위한 투석액 교체를 위한 청결한 공간 마련(소음이 없고, 세균감염의 위험이 없는 독립적인 공간), 직장과 가까운 곳에 긴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와 직장동료들의 신장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특히, 잦은 투석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의 문제, 힘든 일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이해하는 것을 직업유지에 필요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일제 보다는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근무조건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 특성상 의료비 지출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의료비를 충족하지 못해 직장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공공부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 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III.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사례 중 장애인의 고용관련 진정사건이 다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 실제 직장내 장애차별경험이 있거나 편의제공이 되어 있지 않아 직업유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편의제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건물 유형별 편의시설 평균설치율은 67.9%(적정 설치율 평균설치율의 60.2%)로 관광휴게시설이 80.8%로 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장이 52.6%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위주의 편의시설로 되어 있어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내부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등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최저임금 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 수급권이 단순히 장애인의 소득을 보충하려는 역할에서 벗어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근로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직업재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수급권의 탈락과 유지는 직업의 선택과 고용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먼저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의욕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직업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급권자가 근로활동을 통한 급여상실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일정기간을 시범근로기간으로 두어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자격기준보다 많아지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소득공제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촉진 및 유지시킬 수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직업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단계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급여에서 탈피한 후에 수급자격을 다시 취득하고자 할 때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황현철, 2011).

셋째,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의무고용률은 3%이다(2015년 기준 정부, 3%, 민간 2.7%). 최근 정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9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 민간의 경우에는 3.1%까지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장애인구의 증가속도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3항에는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인구는 2013년 12월 기준 약 2,50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8%정도이다. 또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 출현률이 5.61%(2005년 4.59%)로 장애인 등록률 93.8%로 장애인 수 2,683,477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5% 정도로 상향하여야 한다.

넷째,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유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성별과 장애유형별로 직업유지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지원, 직종개발, 인적자본증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참고문헌

고재훈 외(2014).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종미 외(2014).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영일 외(2010).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인순 외(2013).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남정희(2014).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직업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변민수 외(2011). 2010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변용찬 외(2004). 경기도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직업재활연구.

변용찬 외(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엄희영(2004).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상욱 외(200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이주희(200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형렬(2007). 청각장애인의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임경원(2005). 자폐선 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 공주대학교 대학원.

최민식(2009). 장기근속 지적장애인의 직업유지 특성 탐색.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성이(2007). 신장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 시과학대학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6).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황현철(2011).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황현철 외(2010). 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

【토 론4】

## 장애인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

정현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하지만 그 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실업율은 비장애인들의 그것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높다. 2013년 장애인 고용율은 전국 평균 2.35%에 그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2.7%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소수의 장애인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 하고, 아니 노동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 한 채 그저 얼마 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만으로 삶을 꾸려가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소득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보장 정책이 빈약한 현 상황에서 장애인은 이 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사회취약 계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발표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된 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의 장애를 부정하며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 헤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을 날마다 하며, 지역사회와 일절 단절한 채 집 안에서만 생활했었다. 그러다 알게 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미약하나마 일을 하며 나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여 지역사회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냥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까지 조금씩 키워가며 살아가고 있다. 물론 어쩌면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립생활센터의 일과 관련된 공익활동들 외에는 다른 장애인들의 노동 현장에 잘 모를뿐더러, 현재 본인은 자립생활센터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한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만났던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들이 있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발표자는 그동안 만났던 많은 장애인들과 노동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며,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리 할 수 있었다.

## I. 장애인 노동의 문제 - 장애인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첫째, 노동으로 인한 국민기초수급자의 탈락의 문제이다.**

본 발표자 역시 자립생활을 알기 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처음 장애를 가지게 된 후 10여년 동안 당연스레 그래 왔었던 것처럼 국가에서 주는 국민기초수급비와 장애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 장애를 가지고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일을 하며 여타의 비장애인처럼 세금을 내며堂堂한 삶을 살기에는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장애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일을 시작 하게 되면, 비장애인과는 달리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수급권자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선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급자 신분일 때만 주어지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그만큼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1원만 많아도 수급권자에서 탈락되어 생계급여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 하고,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할 만큼의 돈만 벌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땅에서 장애인 뿐 아니라 여러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들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1**

이00 (척수장애1급)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학비나 병원비, 그리고 보장구지원 등이 국민기초수급자일 때는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를 포기하지 못 하고 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둘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 된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이고,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장차법)이 시행 되면서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다. 장애인들이 취업에성공 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 화장실이나 자동문과 같은 이용 편의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특성에 맞춘 작업대 등 업무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취업이나 일에 있어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 사례2

김OO (뇌병변장애 1급, 사회복지과 졸업)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곳의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건물 접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동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서 취업을 포기해야 했던 적도 있었고, 또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가끔 자세를 변경하거나 쉬어야 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셋째, 차별적 인식의 문제이다.

즉 “장애인은 일을 못 해!, 장애인이 무슨 노동이야!” 라는 사업주를 위시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오래되고 강력한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이다.

### 사례3

장OO (뇌병변장애 1급, 특수교육학과 졸업)

“광주시교육청 2014년도 중등교원임용고시에서 특수(중등)과목 중증장애인 부적격 판정“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가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언어적·비언어적 소통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직을 수행하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여 탈락 시킴”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노동을 하며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여전히 사회적 제약이나 차별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개선 노력과, 장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장애인들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울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러 제도의 정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의 노동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활동은 꿈만 같을 것이다.

## II. 장애인 노동의 다양성 - 장애인 노동현장에도 블루오션은 있다!

앞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노동 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 해 있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하며 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발표자가 몸담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예로 들어 보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 포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존의 복지 수혜자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200여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존재하며 단체들은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상근직 및 비상근직으로 최소 2~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동료상담가 및 인권강사 등 장애인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처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또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노동의 현장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서 예로 들은 자립생활센터 외에도 여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툇게이트, 각종 제조업, 백화점과 마트, 한의원 등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곳에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 사례4

광주드림 2008.12.22. “장애 편견을 갖지 마세요” 기사 발취

문OO (시각장애 1급)

: 시각 장애인인 문OO 씨는 한의원에서 수기치료사로 일한 지 3개월 쯤. 문 씨는

시각 장애가 있지만 수기치료 일만큼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다. “환자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OO (뇌병변장애 1급)

: 뇌병변 장애를 가진 황OO 씨는 5년 전부터 하남산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다. 황씨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맡은 일에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황 씨는 “일을 하기 전과 일을 하게 된 후의 생활은 180도 달랐다” 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III. 장애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시민권 확보와 전면적 사회변혁을 통한 생활적 독립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넓은 뜻으로 볼 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즉 노동의 개념도 포괄한다. 고용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득의 주요수단으로서 생존과도 직결되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것은 각 장애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보장해 줄뿐만 아니라 자아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래서 직업의 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며, 인간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일반사람들이 말하는 생계수단 그 이상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성취를 통하여 삶에의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 직업생활(노동)은 국민으로서의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이다(헌법 제32조).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직업생활도 고유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할 수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의 정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제한들로 인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으로부터 소외되어 삶의 질은 낮아지고 사회적 약자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된다면, 이는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복지선진국을 지향한다면 장애인연금제와 같은 소득보장정책의 체계가 지금과는 달리 확실히 갖추어져야 한다.

사실 이렇게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소득보장정책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의 노동이 유연성을 갖게 되어 고용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해야만 각 장애인의 개별적 사항을 고려한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이 선명하게 확보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어야만 고용이 실제로 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정부가 전력을 다할 것이므로 고용지원정책이 확실하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은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또한 중증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급기야 과거에는 전혀 노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근로를 통한 능동적 사회참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생계수단으로서의 고용의 의미도 담고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실현할 때, 그 때서야 비로소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고용지원정책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이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친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대전)

##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일정 (대전)

### 행사개요

일시 : 2015. 4. 10(금) 14:00 ~ 17:00

장소 :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2층)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4:00~14:05	개회선언 - 류인덕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14:05~14:10	기념사 -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10~14:15	축사 - 백춘희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14:15~14:20	축사 - 구자권 (대전광역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사회 - 이경준 교수 (충부대학교)
14:20~14:40	[기조발제]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 등'에 대한 시대의 요구 - 교육권과 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과장)
14:40~15:40	[첫번째 주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장애인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 ·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 ·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및 보조기구 등 정당한 편의 이현수 교수 (영동대학교) 나운환 교수 (대구대학교) 최명진 회장 (대전장애부모연대) 김민태 인권옹호관 (경기도교육청)
15:40~	휴식 및 장내 정돈
15:50~16:50	[두번째 주제]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정당한 편의제공 ·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 시 정당한 편의 · 관광지 이용 교통시설 (시티투어버스 등) 이용 시 정당한 편의 최윤영 교수 (백석대학교) 이용규 교수 (우송대학교) 두오균 소장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미정 소장 (다사리 자립생활센터) 이현미 사무관 (대전시 문화예술과)
16:5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	폐회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기조발제]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 등'에 대한 시대의 요구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장



##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 등’에 대한 시대의 요구

### 교육권과 문화 향유권을 중심으로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첫 번째 주제인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받게 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학생들과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 때, 제대로 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더욱더 중요하고 절박한 현실 문제일 것임.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적·물적 측면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임.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은 장애학생들 당사자·학부모와 동료 학생들, 교육 당국 및 일선 교사들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에서 교육전달체계의 개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 확충 등 많은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아주 복잡한 것임.

장애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지원 인프라를 개선·구축하는 것을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할 것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계를 두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 적용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역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존에 교육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던 관련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음. (대전 중고교 특수학급 모니터링, 대전지역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 발전방안 토론)

국가인권위에서는 2013년도에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 교육차별 실태와 문제점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되었는데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현장과 법적·제도적 지원체계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두 번째 주제인 “차별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지난해 개최한 장차법 시행 기념 토론회(제주지역) 발표자료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등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3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실시, 3)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행·재정적 지원, 5) 복지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음.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기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제로는, 1) 열악한 물리적 환경 및 시설, 2) 이동수단의 문제, 3) 정보접근의 문제, 4) 관광지에서의 편의제공 문제 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2) 숙박업소·음식점에 대한 관광약자 이용가능 여부에 따른 인증제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3) 이동환경 개선(렌터카 이용시 300대 이상 보유 업체는 장애인용 차량 의무 보유토록 제도화, 제주시티투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 등), 4) 정보접근성 개선(여행 관련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등), 5) 복지관광센터의 운영(조례 규정대로 조속히 실제 운영할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후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임.

최근에는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지역 관광문화상품도 많아지고 지역 축제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 거주 장애인과 찾아오는 관광약자를 위한 숙박·편의시설 및 음식점 등 인프라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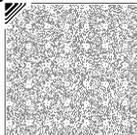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교통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 제공 문제와 지역 장애인들도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문제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

참고자료(1)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1. 12.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고자료(2) 장애학생 지원체계 발전방안 토론회  
대전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2009. 12. 대전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참고자료(3)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의 배경 및 과제  
(2014. 4. 장차법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제주지역), 도의회 박주희 위원)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제1주제]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현수 영동대학교 교수 (교육영역에서의 과제)

나운환 대구대학교 교수 (한국법에서의 교육권보장과 쟁점사항)



##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나운환 대구대학교 교수

### 한국에서의 장애인의 교육기본권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치료 지원, 보조인력 제공, 각종 교수,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통학차량지원, 통학비, 통학 보조인력, 기숙사, 교육정보접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장애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 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차별 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 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으로 정하는 사항
-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교육권에서의 행·재정적 지원과 정당한 편의 내용

행·재정적 지원의 범위: 영아에서 전공과의 교육과정과 교육관련 서비스

행·재정적 지원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당한 편의내용: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장애인 교육권의 쟁점 사항

### 행·재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념

###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학교운영상의 필요(necessity) 혹은 합법적인 학교 운영상의 정당한 이유(legitimate justification)

### 차별 판단기준

사실상의 차이 존재

차이에 따른 차별적 취급이 정당한 목적에 맞을 것

당해 사항에 관해 차별적 취급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차별적 취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범위내에 있을 것

### 차별 기관과 입증책임

법원과 판례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 차별당한 자

차별부정 혹은 정당한 사유: 상대방이 입증

### 적용예외에 대한 논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실질상 불가피한 경우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제2주제]

차별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최윤영 백석대학교 교수 (문화생활에 대한 의미와 향유할 권리)



# 차별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최윤영 백석대학교 교수

## I. 문화생활! 누릴 수 있는 권리 !

문화는 단순히 좋은 책을 읽고 저녁 식사에 어울리는 적당한 와인을 주문할 줄 알며, 슈베르트의 음악이나 피카소의 그림에 친숙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문화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이다.

문화는 이상과 신념, 가치와 전제의 총합이며, 삶을 살아가고 해석하기 위한 전체 계획을 구성한다. 문화의 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Romanowski, 2001).

첫째, 우리가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삶의 질서와 정확성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셋째, 개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실존에 관한 확실성을 부여해 준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경험과 기대를 형성하며, 새롭거나 예기치 못했던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문화에 속해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행동을 지시하는 공통된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가, 여행, 관람 등 문화와 같은 주요 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사회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주류화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 참여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어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민권의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경제적 문제와 편의시설과 교통편 및 장애인이용 여가시설의 부족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여가활동을 원활하게 향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장애인에게 여가활동은 단순히 기본적 인권보장과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기능 향상을 꾀하는 권리 기반적 접근이 요구된다.

## II.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으로 2006년 12월 13일 제 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접근권, 자립생활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권리보장이 더욱 취약한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25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 여가시설의 확충, 욕구에 따른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충 등,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 < 논의 점 >

1. 레크레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등 문화생활에 대한 향유권이 있는가? 없다면 아니 부족하다면 어떤 사회 구조적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가?

2.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에 문화 향유권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장애인의 보편적인 문화향유권의 위치와 기존 문화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3. 문화와 여가생활은 경제활동과 그 생산력으로 파생되며 근로나 노동이후에 부차적으로 향유하는 생활인 것인가? 문화를 특정한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

4. 문화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역할과 당사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장차법시행 7주년 기념 대전지역 토론회  
주요내용(요약)



## 장차법시행 7주년 기념 대전지역 토론회 주요내용(요약)

### 기념사 : 이경숙(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 상황을 조망하고 그동안의 장애차별 시정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앞으로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완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이 한단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대전인권사무소 주관 토론회의 경우 ‘정당한 편의에 대한 같은 의미 다른 생각’이란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권부분과 문화향유권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데 문화 여가 생활이 보편화된 요즘,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또한 가족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당한 편의는 무엇이고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함. 또한, 교육권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임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점검하고 논의하고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이를 줄여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램.

### 축 사 : 백춘희(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우선 대전지역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가 개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편의에 대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함.

**축사 : 구자권(대전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토론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시 등 관련공무원들과 시민, 단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고갔으면 좋겠고 이벤트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토론회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함.

**기조발제 : 이석준(장애차별조사 1과장)**

첫 번째 주제인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받게 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학생들과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 때, 제대로 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냐는 문제는 더욱더 중요하고 절박한 현실 문제일 것임.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적·물적 측면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은 장애학생들 당사자·학부모와 동료 학생들, 교육당국 및 일선 교사들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에서 교육전달체계의 개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 확충 등 많은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본 토론회에서의 현장감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함.

두번째 주제인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교통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 제공 문제와 지역 장애인들도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문제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주제발표 1: 이현수(영동대학교 교수) - 교육권에 대해**

장애아동의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장애인의 삶의 전반과 사회통합에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임에도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을 향유할 권리로부터 차별받아 왔음.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립과 공교육을 통한 다양성의 확립과 장애아동 개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의 다원화를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7년이 되었지만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많은 성과와 달리 교육영역에서 차별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이기에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을 맞아 그동안 장애인 교육부에서 교육자 및 학부모들이 인식개선과 시설 개선, 관련 법령이나 정책 등 관련 제도의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특수교육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와 14조의 교육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실행한 조치라 할 수 있음.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장애영역과 정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자료 지원, 장애 특성에 맞는 환경 구성, 보조교사지원, 취업 및 전환교육 등의 개선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원만한 사회통합이 되었으면 함.

**토론자 : 나운환(대구대학교 교수)**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없이 정당한 편의에 대해 이를 기본권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 또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데 이는 기관의 ‘장’마인드에 따라 달리 적용 또는 해석될 수 있음.

**토론자 : 최명진(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토론자 나운환 교수님 의견에 동감하며 장애인 교육권에 있어 ‘장마인드’가 중요함에 대해 기본권에 어떤 부수적인 사유가 있을 수 없음에 대해 공감하며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마인드가 있는 장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현실적으로 정당한 편의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그보다 더 문제시되고 있는 차별요소로는 언어적 폭력행위를 들 수 있음. 학교 관계자들도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처능력이 없거나 마인드 부족으로 활동보조 등 편의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마인드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교육권보장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토론자 : 김민태(경기도교육청 인권옹호관)**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할 일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적으로 생각함. 공공기관에서의 평가는 실적에 따라 승진기회는 물론 기관 및 기관장의 평가에 까지 이르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권을 위한 평가리스트를 작성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당사자 또는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건의를 한다면 투자대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법 관련 제도 개선 및 발전방향, 실행 방안에 대해 당사자 및 관계자,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함.

**주제발표 2: 최윤영(백석대학교 교수) - 문화향유권에 대해**

사람이 어떤 문화에 속해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행동을 지시하는 공통된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즉, 한 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가, 여행, 관람 등 문화와 같은 주요 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사회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주류화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 참여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어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민권의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 접근권, 자립생활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권리보장이 더욱 취약한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25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 여가시설의 확충, 욕구에 따른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충 등,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토론자 : 이용규(우송정보대학 교수)**

본인은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통해 장애인 대상 체육지원 봉사활동 등을 주로하고 있는데

문화 여가 생활 등에 있어 정보접근권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장애인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성에 있어서의 배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토론자 : 두오균(대전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문화생활향유권관련, 최근 각 지역마다 관광정보센터를 통해 문화 여가 생활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여가 문화활동과 더불어 체육활동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접근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정당한 편의또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여가 문화활동영역에 체육활동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함.

**토론자 : 이현미(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사무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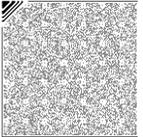
대전시는 장애인의 여가 문화활동지원을 위해 문화 여가시설 점검 등 시설적인 측면, 저상 셔틀버스운행 등 다양한 이동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토론을 통해 당사자 등 다양한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 많음을 인식하게 되었음.

**토론자 : 정미정(충북다사리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 당사자로서 문화생활 향유권과 관련, 정부에서는 예산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장애인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불편하면 바꾸고 하는 것들이 장애인들은 노력해도 어렵게 이뤄지거나 그나마 실현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이 안타까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바뀌지 않는 한, 비장애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변화는 더디게 다가올 것임.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경기)

#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경기지역)

## 행사개요

일시 : 2015. 4. 7.(화) 14:00~16:00

장소 : 성남시한마음복지관 2층 한마음홀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14:00 ~ 14:10	10`	개 회 내빈소개	[기념사] 이경숙(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이석준 대독(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축사] 원미정(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14:10 ~ 14:30	20`	장애 당사자 체험사례발표1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편해지면 달라져요 : 시내 이동을 중심으로 - 김유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장애 당사자 체험사례발표2	여행을 떠나다 : 시외 이동을 중심으로 - 김영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14:30 ~ 14:55	5`	좌 장	김정열 센터장(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20`	발 제	장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 및 개선방향 - 이도건 집행위원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14:55 ~ 15:40	5`	좌 장	김정열 센터장(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10`	토 론 1	장애인 이동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배용호 사무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10`	토 론 2	경기도 교통약자 주요정책 - 이동욱 주무관(경기도 교통정책과)
	10`	토 론 3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10`	토 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적 이행을 위한 과제 :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을 중심으로 - 박윤근 팀장(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15:40 ~ 16:00	20`	질의응답 및 폐회	질의응답시간 및 폐회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당사자 체험사례 발표]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편해지면 달라져요 : 시내 이동을 중심으로

김유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여행을 떠나다 : 시외 이동을 중심으로

김영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편해지면 달라져요

### 시내 이동을 중심으로

김유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위원 김유현입니다.

이번 뜻 깊은 2015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습니다. 저의 10대의 이동권은 꿈이었습니다.

10대 때, 제일 하고 싶던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16살 때, 여의도 교회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처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일 외에는 외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나갈 엄두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 때문에 제가 나갈 때마다 따라 다닐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방안의 개구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전동휠체어가 한국에 보급되기 전이어서 누군가 수동휠체어를 밀어줘야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저의 20대의 이동권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10대를 지낸 저는 20대를 시작했고 교회의 비장애인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하철 탈 때는 여의도에 지하철 개통이 아직 덜 돼서 영등포역에서 수동휠체어를 밀어서 여의도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때에는 수동휠체어를 발로 땅을 차서 후진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에 교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막는 겁니다.

경찰 왈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죄인처럼 파출소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혼자 다녔다고 호소하고 소리 질러도 안 보내줬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이 달려오셔서 경찰과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왜 감금해놨냐고 장애인 혼자 다니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하시며 경찰과 대판 하시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그 친구 덕분에 많은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중교통 이용했고 삶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일반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 등 정말 많은 것을 타고 많은 곳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20대 중반에 정말 큰 환경의 벽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흥시에는 지하철역도 멀고 친구들이 저를 데리러가고 데리러오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에 있어서 다 포기하고 몇 달을 의욕이 없이 지나다가 친구가 그림과 답답해서 도저히 못 견딜 같아서 부모님과 단판을 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번만 가까운 전철역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오는 건 제가 오겠다고 했고 그 시점부터 일반 버스를 혼자 타기 시작 했습니다. 갈 때는 전철로 가서 삼일동안 있다가 버스타고 오는 겁니다. 친구들이 버스 의자에 저를 앉히고 휠체어를 접어서 의자와 의자 사이에 끼워서 안 굴러가게 해서 태워서 보내주면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때 집에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 기사와 실랑이하고 또 어느 날은 승객과 실랑이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니까 익숙해 졌는지 대수롭지 않게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에 익숙해지면 비장애인들도 우리에게 익숙해지겠구나! 그러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저의 30대의 이동권은 끝이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저에게 전동휠체어가 생기고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고 비장애인들에게 저를 노출시켰습니다. 한번은 어느 전철역에 내려 리프트를 타기 위해 역무원을 호출하고 리프트를 탔습니다. 그런데 역무원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역에 오지마시고 다른 역으로 가세요. 이 리프트는 수동휠체어용 이라서 다음번에 태워주기 곤란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미처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갈 시간이 돼서 떠나고 집에 와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코렐일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필코 저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 했고 그 후에 그 역에 갔는데 역장이 달려 나와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 했습니다.

저의 집은 교통편이 안 좋습니다. 시흥시에서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네 번, 그것도 5시가 막차라서 그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야 합니다. 차 시간을 놓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갈 방법이 있지만 다른 장애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저의 한가지방법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서 7킬로를 전동휠체어로 달리는 겁니다. 이 길은 차도만 있는 구간이 3킬로가 되는데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서울에서 일이 끝나면 소사역에서 저상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러나 저상버스라는 것이 자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반에 한대씩인데 리프트가 고장 나면 세 시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한 겨울에 세 시간을 기다리려면 고역이고 나오기 싫어집니다. 시흥시에는 이렇게 이동권이 낙후 됐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얼마 전에 셔틀버스 간담회를 가서 증차를 이야기해서 운행시간을 늘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장애인 분이 “그것은 무리한 거라고 아시아 국가에서 복지가 최고라고 기사 월급이랑 기름 값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있구나! 하고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장애인마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비장애인들을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도 많아지겠지만 뜯어고칠 것은 고치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겠습니다.

30대 초반 저는 장관이라는 세상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많은 권리와 그것을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찾아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저의 행동이 정당해졌습니다. 전에는 전철을 타면 모자를 꼭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후에는 얼굴을 뿔뿔이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익숙해졌을 뿐……. 이동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바뀌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장애인들이 더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행을 떠나다

## 시외 이동을 중심으로

김영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작년 가을이었다. 동료상담 강의를 위해서 강원도 동해읍 옥계면에 있는 모 여성수련원에 가게 되었다. 나는 안산에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동휠체어로 가야하였다. 사실, 전동휠체어를 탄 나로서는 안산에서 강원도 동해읍 옥계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약 2~3주 전부터 교통편을 알아보기 시작 하였다. 먼저 전철을 알아보니, 안산 한대앞역에서 4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 동대문역에 내려서 1호선 전철로 갈아타고 청량리역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려서 혼자 도움 없이 갈 수 있었다.

청량리 기차역에서는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랬더니 공익요원이 나와서 안내를 하였다. 청량리에서 강원도 동해역까지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려고 잠시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에 공익요원은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휠체어탄 장애인이 탑승하게 될 경우 기차역마다 준비되어 있는 리프트를 끌어다 대기 시켰다.

잠시 후에 열차가 들어오고, 미리 역에서 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승무원은 다른 손님들은 다른 문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하고서 3호차 문에 리프트를 고정시켰다. 그리고 나를 리프트로 열차에 탑승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동해역에서 내릴 때도 도우미를 요청해 놓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무사히 열차에 탑승한 나는 전철 안에서 보던 바깥 풍경과는 좀 다른 열차 차창 밖의 경치를 보면서 지루하게 약 6시간 만에 강원도 동해역에 도착하였다.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역전 광장에 나와서 또 다시 특별교통수단인 일명 장콜을 기다렸다.

동해읍에는 그 당시 전동휠체어가 탑승 할 수 있는 차량(장콜)이 지체장애인협회 동해지회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1대가 있었다. 그래서 출발 약 2주일 전부터 나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서 어렵게 예약해서 옥계면에 있는 목적지까지 가기로 하였다. 강원도에는 저상버스는 물론 교통약자 이동콜센터가 없는 상태였다.

군것질을 좀 하면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장콜이 와서 이십여 분 걸려서 동료상담 강의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동의 여러 과정을 약 8시간에 걸쳐서 마치고, 동료들과 1박 2일의 유익하고 즐거운 동료상담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동료상담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장콜 기사님이 동해역보다는 묵호역이 출발지에서 가깝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 숙소에서 조금 벗어나니 동해의 푸른 바다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사님께 중간에 내려달라고 했더니 고맙게도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묵호역 쪽으로 바다를 보면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줘서 사진도 찍고 눈 호강을 하면서 묵호역에서부터 다시 역순으로 안산까지 올 수 있었다.

휠체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장애인들은 꼭 가야하고, 또는 가보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하여도 이동수단 즉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게 현실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상버스가 전혀 도입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이 있다. 특히나 교통약자들 중에 특별교통수단(리프트나 슬로프형 장콜)이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전국 어디에나 살고 있는데, 콜 개념의 차량이 한 대도 운행되지 않는 지역 역시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지자체들은 일단 법정대수 만이라도 빨리 도입하여 운행해 줄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면 휠체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인근 지역까지 운행하는 광역적 개념의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보통 특별교통수단(장쿨)은 시 경계 때문에 목적지 즉 전철역이나 기차역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운행 해주지 않는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중간에서 휠체어장애인을 내려놓고 간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 인지 묻고 싶다.

오늘날 극소수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행하는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계를 벗어나 바로 근처에 있는 대중교통(전철, 기차)과도 연결시켜 주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말이다.

끝으로, 이동권은 생존이다. 자신이 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단, 단 한사람도 없다. 그 장애가 어떤 장애일지라도 장애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장애가 나와 다른 개성일 뿐이라고 인식되어질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의 삶은 풍요로와 진다고 생각한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장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 및 개선방향  
이도건 집행위원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실태 및 개선방안

이도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1. 여는말 — 로망이 되어 버린 ‘장애인의 이동’

26년 전 KBS에서 방영된 TV만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만화 주인공 아이캔처럼 ‘에어스타’ 타고 하늘을 자유로이 날고 싶은 로망을 한 번 쫄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꼭 그 세대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이동은 인류가 역사를 만들며 가져온 인간으로써의 본질적 욕구이며 인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질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만화만큼은 아니더라도 디지털화 된 승용차가 자동 주행을 하고 개인용 비행장비로 하늘을 날아 이동하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연구<sup>1)</sup>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 지역의 대다수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여가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동 환경에서 여전히 배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차별적 교통정책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차별 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변화를 여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10,182대<sup>2)</sup> 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비율은 고작 12%. 본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특별교통수단 역시 경기도내 31개 각 시·군의 다른 기준과 절대량의

1)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5

경기도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4개소 183명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43%의 장애인이 한 번도 저상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이용자의 이용횟수는 월 4회에 머물며,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은 1시간 10분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차별적 환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5년 1월 1일 기준.

부족으로 장애인은 인근지역은 물론 경기도내 지역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다.

“저상버스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다.”

“운전기사가 슬로프 작동법도 모르더라.”

“특별교통수단은 예약하지 않으면 탈 수가 없다.”

장차법에서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제19장)의 관련 법률로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지도 벌써 11년이 되었지만 11년 전 장애인들에게 행해지던 차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장차법 시행 7년이 지난 현재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상 속에서 버스를 타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26년 전 에어스타를 타는 로망처럼 남아 있다. 현재 경기 지역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살펴보고 이제는 장애인의 ‘이동’이 로망이 아닌 현실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 2.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현황

이동편의시설 중 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 1) 이동권 보장의 법적 근거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차법(제19조)과 더불어 2004년 제정된 이동편의증진법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009년 제정, 이하 경기도이동편의증진조례) 및 각 시·군에서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를 그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장차법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장애인 동반 보조견 및 보조기구에 대한 거부 금지, 교통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기관의 교육·지도 의무, 운전면허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은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 사고 이후 조직화된 장애인중 연대 투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리를 법률에 명시(제3조)하고,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등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기관(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사업자(운수업자, 교통수단체작업자 등) 역시 교통약자가 이동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 등을 확보·개발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이동편의증진조례는 법에서 정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저상버스 도입시 인센티브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예산 지원 등이 명시 되어 있다.

각 시·군의 조례에는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시·군에 위임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각기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제정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장차법에서부터 시·군 조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법제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 2)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일반적 현황

2013년 기준 경기도 장애인 인구는 506천 명이고, 그 중 1·2급 중증장애인은 21.5%인 108천여 명으로 확인 되며 그 중 중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는 전체의 67% 가량인 66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지역 장애인의 차량 이용 외출은 월 평균 10.1회로 파악되었으며, 횟수는 월 5회 미만이 45.1%로 가장 많고, 20회 이상 30회 미만 19.8%,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6.5%, 5회 이상 10회 미만이 9.3%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II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 서비스를 향유하는 집단에서의 통계인 만큼, 시설 거주자 등 전체 장애인의 차량 이용 등 이동권 현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① 저상버스 이용

경기도내 거주 장애인의 57%는 저상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저상버스 도입률이 11%에 불과한 반면 이용 경험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저상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 욕구가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가 28%, 오래 기다려야 해서가 15.9%, 잦은 고장 9.8%, 운전기사의 불친절이 13.4%로 나타났는데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못하는) 이유의 67.1%가 차별적 환경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상버스 이용 횟수로는 0~5회가 69.3%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장애인이 전체 대중교통수단을 1주간 0~5회 이용하는 비율 17.6%<sup>3)</sup>와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차별적 환경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버스이용은 극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저상버스의 월 평균 이용은 4.5회로 나타났다.

###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

경기도내 거주 장애인의 86.4%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저상버스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특별교통수단이 대중교통수단의 보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 경험이 없는 이들의 이유로는 예약하기가 어려워서가 33.3%, 원하는 시간 이용 불가 23.3%, 직원의 불친절 6.7%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횟수별로는 1회 이상 10회 미만이 5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이용이 17%,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6.3%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 횟수는 8.1회/월로써 저상버스 보다는 이용 횟수가 높으나, 10회 미만 이용자가 67%에 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대다수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일반적인 학교교육, 취업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2012

### 3) 교통수단 운행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시설 뿐 아니라 시설접근권, 보장구 등의 편리한 이용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논의 보다 우선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경기도의 도입 및 운행현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저상버스

경기도의 전체 노선버스는 10,183대로 이중 1,274대가 저상화 되어 운행 중에 있다. 저상버스 도입은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저상버스 도입은 의무가 아닌 우선면허권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으로 되어 있을 뿐인 반면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추가연료비, 수리비, 노선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은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기피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마땅한 견인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까닭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11년째인 현재까지도 경기도의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2%에 머물고 있다. (서울22%) 경기도는 2014년부터 저상버스 운행 대당 연간 2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나름의 보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해당 정책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도입대수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호응은 그리 크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경기도 비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이 78.7%<sup>4)</sup>에 이르는 반면, 장애인은 22%(휠체어 이용자 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물론 버스의 대체수단이라 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률이 48%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으나 경기지역 대부분의 특별교통수단이 사실상 즉시이용이 불가능하고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근본적으로 버스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미루어 장애인이 저상버스 부재에 따른 이동권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장차법 등에서 명시한 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 배제·분리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선, 전체 유형의 버스에 대한 저상화 내지는 보조견 및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동반한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차량 보급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써 버스의 저상화, 즉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정부의 지난 저상버스 정책은 첫째, 전체 노선 및 전체 유형의 버스에 대한 장기

4)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2012

적으로 포괄적인 접근권 개선에 목표를 두지 못하고 부분 적으로 이루어진 점, 둘째 민간 버스 운송환경에 대한 도입 의무 사항을 만들거나 효과적인 견인책을 만들지 못한 점, 셋째 도입 이후 운행에 대한 어떠한 연계 정책도 실행에 실패함으로써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마무리 시점인 현재까지도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불과 16%에 불과하다. (2013년말 현재 16.2%)

버스 저상화 정책의 문제점	
포괄적 관점의 부재	전체 버스의 저상화(접근가능) 계획의 부재 (심지어 초기 도입된 버스의 노후화 대체 계획도 전무) 광역, 마을, 중형 버스 등에 대한 저상화 버스 모델 개발의 진행이 없었음.
견인책의 부재	민간사업자의 강제 이행 제도 미비 손실금 보전 등의 실질적인 대책 미비
연계정책 부재	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 교육 과정 미비

표 126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주요 문제점

도입연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계	도입비율
도입대수	1,081	127	57	1,274	12%

표 127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현황 (2015.3.31. 현재) 경기도 제공 / 2015년 111대 추가 도입 예정

기 도입된 저상버스 마저도 경사램프 등 핵심장비가 고장 난 채 수리하지 않고 주행하거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경기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정책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경기도의 올 해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111대(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이런 추계로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달성마저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광역간 이동을 담보할 2층저상버스의 도입을 금년부터 이행하기로 하여(2015년 중 25대 도입 예정) 장애인의 광역간 이동을 담보할 초석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이 정책 역시 장기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태이다. (광역 버스 2,000여 대 중 3년 내 300대 도입 예정)

## ②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시장과 군수는 법에서 정한<sup>5)</sup>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 교통수단이다. 경기도에는 2014.7. 현재 법정대수의 약 75%에 해당하는 417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시·군이 각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행함에 따라 그 운행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경기도내 전체 특별교통수단은 2015년 말이면 법정대수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평군 등 일부 도시는 예산을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경기도내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행시간, 이용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동지원 차량의 이용대상은 지자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군은 장애 1~3급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까지 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은 반면, 성남군은 이용대상은 유사하지만 휠체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 1급과 2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진단서나 신청서등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요금체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요금은 거리제한이 없거나 1km, 2km, 10km를 기준으로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적용하고 있다. 예약방식은 예약콜과 즉콜을 병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천은 예약을 받지 않고 당일 즉콜만 이용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운행시간은 기관에 따라 최소 8시부터 24시까지, 최대 24시간 운행하는 지역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운행지역의 경우는 용인의 경우 수도권 전역의 제한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치료를 목적으로 관외와 관내를 운행하는 하남지역 등 각 지자체별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규모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sup>6)</sup> 이처럼 각 지자체별 개별 기준에 따른 운영은 근접지역 이동 등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문제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이용자의 이용제한을 들 수 있다. 일부 시에서는 이용자의 예약 취소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사용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인권 침해적인 운행기준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6)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5

특별교통수단 정책의 문제점	
통합적인 기준 부재	시군단위의 각기 다른 규정으로 인한 혼란 종사자 교육 등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무

표 128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문제점

경기도는 2012년부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의 10%만을 지원하는 지금의 지원 규모로는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는 201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표준안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운행시간, 이용범위 등을 제시하였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전면적인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지역 개별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간·광역간 이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 중에 있다.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의 연결 전화번호를 통합하고, 지역간 이동시 효율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설치 추진 중이다.

### 3.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그간의 과정들

#### 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

2005년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2008년 까지도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은 불과 성남 등에서 운행 중이던 십여대가 전부였다. 같은 생활 권역에 있는 인근 지역의 이동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법에서 의무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던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이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그러한 고민 속에 도출된 것이 바로 ‘광역이동지원센터’ 개념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이동을 담보해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2009년 제정 된 조례에는 당시 연대회의가 요구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가능성을 여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사진1. 2009년 연대회의의 활동가들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례 내용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 2) 2011년 경기도 조례 개정 투쟁

조례가 제정된 후 2년이 지난 2011년에도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전역에 법정대수의 10% 미만이었을 뿐 아니라, 그 도입 계획도 불분명했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기도는 어떠한 재정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단)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의 요구안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그 내용으로써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경기도의 도입비 및 운영비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 교통약자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예산상의 이유로 요구안에 대한 어떠한 성실한 답변도 내어 놓지 않아 공투단은 연일 김문수 도지사 그림자 시위, 장애인 생존권 장례식, 버스타기 행사, 기어서 수원역 건너기 등의 퍼포먼스와 시위와 함께 87일간의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동시에 진행된 조례 개정 과정을 통해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일부나마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입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근거도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국비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던 저상버스 사업 이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한 교통약자 정책예산은 0원에서 36억 원으로 소액 증액된 것이 당해 투쟁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사진465. 2011년 5월 공투단 활동가들이 이동권 보장 등과 관련한 요구안을 거부한 경기도청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

### 3) 2012-2013년 경기도 시·군 순회 투쟁

2011년 투쟁을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대한 일부분의 정책적 전환은 유도했으나 근본적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변화를 꾀하기는 법적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었다.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것은 시장 준수였고, 도의 부분적인 지원정책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까닭에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2012년-두 바퀴로 가는 세상 공동투쟁단, 2013년-함께가는 세상 공동투쟁단 (이하 모두 순회투쟁단)이 꾸려져 경기도 시·군 순회 투쟁을 진행했다.

순회투쟁단의 이동권 관련 주요 요구는 부분적이며 근시안적인 버스 저상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100%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의 즉시 확보 및 2016년까지 200%를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 즉시 이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외에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용시간·이용요금·운행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2012-2013 순회투쟁의 대상도시는 수원을 비롯 14개 도시로 순회투쟁 이후 2011년 9.8%에 머물렀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2014년 7월 현재 75%가 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거점도시의 도입률은 97% 이르렀다.

도시명	용인	화성	고양	수원	부천	김포	이천	포천
운행대수	44 (125)	24 (109)	48 (111)	44 (102)	38 (100)	16 (114)	13 (107)	11 (100)

표129 2016년까지 200% 법정대수 도입 약속 도시, 2014년 12월말 도입현황 (도입률) / 포천은 2018년까지

구분	두 바퀴로 가는 세상	함께가는 세상
거점도시	수원, 오산, 평택, 김포, 안산, 광명, 군포	화성, 부천, 용인, 포천, 이천, 고양, 의왕, 평택, 김포 (2012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곳은 재방문)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저상버스 100% 저상화 추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도입 (지역간 이동 보장 등 추가) 저상버스 100% 저상화 추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표130 경기지역 시·군 이동권 투쟁 ‘두 바퀴로 가는 세상(2012)’ ‘함께가는 세상(2013)’을 통한 이동권 관련 합의 내용



사진468. 2013년 순회투쟁단이 '전동200 출범식'을 마치고 수원역 광장 앞을 행진하여 9개 도시 순회일정을 시작하고 있다.

#### 4) 광역이동지원체계 구축

2014년엔 2011년 투쟁시 합의 되었던 경기도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예산이 수립되고, 경기도내 이동지원센터의 광역 연계를 위한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어 각 시에 공유되었다.

##### <2013년 순회투쟁단 제시 내용>

##### ■ 최소기준 ■

- (1) 운영 주체 : 시·군 직영 또는 시설공단에 위탁
- (2)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 (3) 이용 방법 : 즉시이용 및 예약이용 가능
- (4) 이용 요금 : 대중교통요금(버스) 이하
- (5) 지역간이동 : 제한금지
- (6) 이용대상자 : 1,2급 중증장애인
- (7) 운전자교육 :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인식개선교육 10시간 의무 이수

##### <2014년 경기도 시·군 표준조례 명시 내용>

#####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 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은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해야 한다.
-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및 인접 지역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표 131 2013년 순회투쟁단이 해당 시·군 및 경기도에 제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과 표준조례의 명시 내용

더불어 저상버스의 현실적인 운영조건 개선책으로 저상버스 운행 손실금 보전 예산이 책정(31억여 원) 지원되었고, 버스이용자의 광역 이동을 위한 2층 저상버스가 시범 운영되기도 하였다.

## 4.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

### 1) 국가 정책 변화

2001년 오이도역 추락사 사고 이후 조성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물인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지만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정부의 예산 배정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까닭에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전향적인 변화 의지를 법률에 담아내지 못한 까닭도 있다. 강력한 규제 조치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확보를 담보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2017년으로 완료되지만 당초 5개년 계획에 명시했던 목표대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율은 상당히 낮다. 특히 기도입된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대체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3차 제4차 계획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버스 저상화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첫째,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각 유형별 버스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차량 개발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고, 대·폐차 되는 모든 버스를 저상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특별교통수단은 그 공익적 성격에 더욱 부합하여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운영비의 국비 지원과 이동지원센터 기능의 통합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버스의 저상화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하는 바,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강제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정부의 보조가 이행된다 한들 사업자는 지속적인 사업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특별교통수단에 있어서도 각 시군 등에서 혼란 속에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간 연계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 2) 경기도 정책 변화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장차법에도 엄연히 교통행정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간 경기도는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힘들다.

10%대의 도입률에 머물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 운영 현황과 제각각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센터 운영을 통한 비효율은 그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부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 ① 교통약자 관련 부서의 신설

현재 경기도의 교통약자 업무는 각기 분산되어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전체 인구의 25%가 해당되는 교통약자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 교통정책과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저상버스 도입, 기타 도로환경 개선 등 총괄적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담당해낼 부서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2015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에서 31개 시군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의 신설은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 ② 버스 저상화 정책의 적극 추진

작년 광역버스 입석대란 사태로 관심이 모아진 2층저상버스는 현재 경기도의 교통복지 정책 중 중요한 이슈가 됐다. 경기도는 광역노선의 2층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도자체 예산을 대당 2억여 원씩 투입하여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당 1천5백만 원의 자체 예산도 지출하기 힘들다며 2014년엔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자체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면이다. 이유가 어쨌든 2층저상버스가 새로운 교통복지 아이템으로 등장해 장애인의 광역간 이동 보장은 물론이고 시내버스에도 적용가능한 대안이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당면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와 함께 저상화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생색내기식의 정책은 근본적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 ③ 특별교통수단의 통합 관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보조수단으로 여겨져 도입되었던 특별교통수단이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자가용 이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sup>7)</sup> 적어도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에게 이미 한 축의 대중교통수단이 된 것이다. 특별교통수단이 자가용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이 이용되게 된 데에는 저상버스 등의 기존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할

7) 연구결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 30%, 특별교통수단 29%, 버스 14%, 지하철 및 경전철 12%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5

수 없는 환경도 한 몫을 했겠지만, door to door 서비스가 불가피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인 까닭도 있을 것이다. 저상버스의 도입과는 별개로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이 향후에도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남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경기도는 현재 산재해있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효과적인 도내 특별교통수단 관리 기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용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자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정을 정립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는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질 관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현행 10% 수준의 운영비 보조금을 30%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도 시급하다.

#### ④ 종합적 교통약자 정책의 수립·이행

장애인의 이동권이 차별 없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뿐 아니라 여객시설, 도로 등의 이동편의시설과 시설접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이러한 통합적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교통정책은 대단위의 예산이 집행됨은 물론 그 효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민전체로 파급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예산 운용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종합적인 관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이동편의시설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나가기 위하여 민과 관이 함께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 5. 닫는말 — 차별을 철폐하고 로망을 현실로

치열한 고민과 투쟁 속에서 장차법, 이동편의증진법과 같은 소중한 법률들을 만들어 냈지만 이 제도를 실제화 하고 세상을 법의 정신에 입각해 변화시키는 일은 또한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장차법 시행 7년 기간 진행된 경기지역의 이동권 투쟁과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 철폐의 실천활동들이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이동의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차별 금지의 원칙에 부합되지 못한다. 저상버스 도입비율 1/3, 특별교통수단 1·2급 장애인 200당 1대 등과 같은 수치는 어쩌면

동정과 시혜의 마지노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들로 인하여 장차법 시행 7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크게 신장되지 못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 주민-장애인의 이동권은 결국 경기도가 담보해야 한다. 31개 기초지자체, 중앙정부의 정책을 핑계로 광역자치단체로써의 역할을 방기한 7년 동안 수많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삶이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평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할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작금의 여러 통계적 상황들은 장애인에게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매우 먼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로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인류가 걸어온 길이고 시민사회가 만들어온 길이다. 저상버스, 지하철, 자가용, 자전거... 모든 이동수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누리는 로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 참조문헌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5  
대중교통 현황조사, 국토교통부, 2013



【토 론1】

# 장애인 이동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배용호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현재의 대중교통정책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대중교통정책의 재검토 및 개선을 위한 논의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의 참여에는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 한국보고서 심의에 대한 권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위의 권고는 우리나라의 이동권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위원회는 첫째,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재검토할 것, 둘째 장애인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셋째, 이 모든 논의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의 참여에는 장애유형, 정도, 성별을 고려할 것 등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저상버스 정책처럼 시내버스에 국한하지 말고,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는 물론이고, 일반 택시, 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저가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와 선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상버스(시내버스)와 특별교통수단에 집중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온전한 이동권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이용방법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에서 정한 이동권의 의미와도 같은 맥락이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조(이동권))

셋째, 계획의 수립은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이동권 정책은 또 다시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다.

## 1. 이동권 정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1) 접근권 정책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접근권(Rights to Accessibility)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접근권 보장 정책 안에서 함께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접근권 정책 안에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 이동권, 정보접근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접근권 정책 안에서 이동권 정책이 수립되어야 건축물이용, 이동, 정보접근이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도 나뉘어 있고, 관련 부처도 나뉘어 있으며, 정책도 따로 수립되고 있다. 여기서 모든 문제는 발생한다.

### 2) 모든 이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동은 교통수단에 의한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이다. 따라서 보도의 정비부터 시작하여 보행권이 보장되고,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에 대한 접근 보장,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자가운전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보장되어야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될 수 있다.

### 3) 모든 이동은 장애인의 이동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005년에 제정되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이 사라지고 있다. 처음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교통약자를 언급했지만, 201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이 삭제되고 “교통약자”로만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 으로는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법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약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4)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발제자는 현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이 저상버스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실제로 민간 사업자인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저상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버스 등 교통사업이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인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도시 사, 시장, 군수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법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상버스 도입만 의무화하고 의무 연한 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 지만 현재처럼 정부가 계획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5개년 계획만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 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여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5)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상버스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 정부의 의지부족이지만, 저상 버스의 높은 가격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가 상용화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일반 버스와 저상버스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저상버스가 국내 표준화로 기술개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버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정부의 예산만

늘릴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가격 정책은 문제가 없는가? 우리는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맺는 말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권리이며 인권의 문제이다. 이것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화 또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이동권은 접근권 정책 안에서 유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토 론2】

## 경기도 교통약자 주요정책

이동욱 경기도 교통정책과 주무관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10년 55대에서 현재 475대 운영으로 420대 증가

‘10년 55대 → ‘11년 130대 → ‘12년 243대 → ‘13년 391대 → ‘14년 475대

도비지원 : 4년간 77억원

(‘12년 17억원, ‘13년 11억원, ‘14년 15.7억원, ‘15년 33.4억원)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각 시군 센터를 연계하여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콜번호 통합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

‘14년 추경에 6.5억원 확보,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완료 및 보안성 검토 추진중

### 저상버스 운행

도입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업체 독려 및 운영지원금 지원 추진

‘10년 756대 → ‘11년 892대 → ‘12년 1,081대 → ‘13년 1,218대 → ‘14년 1,275대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도내 설치되는 교통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구 분	장애인수(1·2급)	법정대수(대)	운영대수(대)	부족대수(대)
합 계	111,654	558	475	-
수원시	8,533	43	48	-
성남시	8,418	42	42	-
고양시	8,584	43	48	-
부천시	7,614	38	41	-
용인시	7,039	35	44	-
안산시	6,426	32	26	6
안양시	4,692	23	17	6
남양주시	5,409	27	0	27
의정부시	4,308	21	22	-
평택시	4,416	22	22	-
시흥시	3,269	16	10	6
화성시	4,424	22	24	-
광명시	3,257	16	20	-
파주시	3,950	20	10	10
군포시	2,373	12	12	-
광주시	2,912	14	9	5
김포시	2,737	14	14	-
이천시	2,490	12	13	-
구리시	1,711	9	0	9
양주시	2,343	12	7	5
안성시	2,341	12	0	12
포천시	2,159	11	11	-
오산시	1,776	9	9	-
하남시	1,480	7	5	2
의왕시	1,175	6	2	4
여주시	1,705	9	0	9
동두천시	1,350	7	7	-
양평군	1,770	9	8	1
파천시	530	3	0	3
가평군	1,654	8	0	8
연천군	809	4	4	-

※ 법정대수 : 2012년 장애인수 적용함

【토 론3】

##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 1. 장애인이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함)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동권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제11조)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다.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sup>8)</sup>의 이동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상의 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조문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차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장차법 제3조 제16호). 따라서 장차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도로, 보도,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하여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와 동일한 취지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호).

요컨대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와 장차법 제19조 제1항은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는 조문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기본원칙이 된다. 따라서 이동편의증진법의 다른 조문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와 장차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2. 저상버스와 관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문제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외에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 및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저상버스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와 장차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버스),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위와 같은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위와 같은 기본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으로 구분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그런데 제1차 및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시내버스 일반형을 전제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타 유형의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의 문언에 의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의 저상버스가 ‘ 시내버스 일반형’(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제6조 제2항 제5호).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모든 교통수단에 시내버스 일반형 외에 기타 유형의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시외버스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장애인의 광역간 이동 및 시외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타 유형의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저상버스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두 차례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및 장차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고 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단위: 대, %)

구분		총계	2011 현재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상버스	누적대수	-	3,899	4,802	6,214	8,061	10,473	13,493
	보급율	-	12.0	14.8	19.1	24.7	32.2	41.5
	당해연도 도입대수	9,594	-	903	1,412	1,847	2,412	3,020

또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저상버스의 연차별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단위: 억원, 년)

구분	연차별 사업비					
	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고보조	4,565	420	673	881	1,150	1,441
지방자치 단체	5,038	483	740	968	1,264	1,583
총액	9,602	903	1,412	1,849	2,414	3,024

《저상버스의 연차별 사업비》

그런데 국토교통부 201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저상버스도입보조’금액이 2014년 378억원에서 2015년 340억원으로 오히려 38억원이 감소하였다. 2014년 예산안상의 378억원과 2015년 예산안상의 340억원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기재된, 저상버스의 연차별 사업비 국고보조 항목의 금액(2014년 881억원, 2015년 1,15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제시한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이 그대로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동편의증진법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관련법률의 개정

발제자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즉, ‘버스의 저상화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하는바,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강제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정부의 보조가 이행된다 한들 사업자는 지속적인 사업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근본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간사업자, 즉 이동편의증진법상의 교통사업자<sup>9)</sup>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점이 예상된다. 교통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교통사업자에 대한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발제자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하여 ‘각 시군 등에서 혼란 속에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간 연계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요금, 운행구간 등이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적인 운영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기준이 다르면 장애인들이 근접지역을 이동하더라도

9)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제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의 통일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이동편의증진법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도 단위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시장이나 군수 및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6조 제2항, 제3항)<sup>10)</sup>, 장애인이 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1)</sup>

#### 4. 공익소송의 제기

관련 법률의 개정운동과 함께 관련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는 것도 장애인이동권의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송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이동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고, 법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이동권 및 이동편의증진법, 장차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하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단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과거에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지하철 환승역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함에 따른 시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지하철역사 내의 장애인용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을 설치함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시외버스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보장이 되지 않는 데 따른 장애인이동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바 있다.

2014. 3. 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원고로서 국토교통부, 지자체,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10)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1) 조현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 주요 내용”,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자료집, 30면.

국토교통부 등이 시내버스 일반형 외의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버스회사가 시내버스 일반형 외의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장차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장애인이동권에 관하여 폭넓게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14. 3. 제기된 장애인이동권 소송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적극적 조치를 구한 것이다. 앞으로도 장차법상의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토 론4】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적 이행을 위한 과제

###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을 중심으로

박윤근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팀장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운동 역사의 기록은 1984년부터 시작된다. 김순석(당시 34세 지체장애 1급) 열사는 ‘도로의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을 하였고 그의 죽음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낸 최초의 항거였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직능대표 장애인 국회의원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는 각 당 비례대표 앞 순위에 장애인계 인사가 포진하였고 그 추세는 지방의 기초단체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중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복지는 폭풍 성장했고, 장애인은 정치적, 사회적 중요 집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이 되었다. 이제 장애인은 우리사회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집단이자 영향력 있는 대상으로서 자리 잡았으며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끊임없는 장애계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가장 큰 변화이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로써 인권에 기반을 둔 발전의 시작임을 알렸다(2014, 이정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법원에서는 조정이나 합의권고 결정으로 차별이 시정된 적은 있었으나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판결이 단한차례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2014년 7월에 서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시정명령 판결이 내려졌다(2014, 법률신문).

이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물리는 형태로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고자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실천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을 향유하기위한 가장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시설물의 접근과 이용에서의 차별은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발제문의 경기도 장애인 교통수단 운행현황 및 문제점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2014년 7월 경기도가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을 마련, 31개 시·군에 통보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장이라고 공감한다. 무엇보다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뿐 아니라 시설 접근권, 보장구 등의 편리한 이용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등 당연한 주장이며 지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토론문은 발제문의 제도적, 학제적 관점이 실천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관점으로써 재해석하여 교통수단을 통한 공간적 이동의 의미가 아닌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접근성 측면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1. 외면당하고 있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014년 10월 경기도내 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지자체 31개 중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이행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총 12곳으로, 19곳이 최소한의 법정대수 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운영되지 않는 곳도 7곳이나 된다. 이는 법정대수 558대 중 417(74%)대만이 운행 중이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너도나도 감시자가 되어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발굴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력을 쏟아 붓고 있는 현실에서 왜 장애인의 가장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이동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장면하나, 오산시에 살고 있는 뇌병변장애 2급 고등학생 양중희(가명, 17)군은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양중희(가명, 17)군의 담임교사 장순분(가명, 33)교사는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3번씩이나 특별교통수단을 갈아타고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동안 낮선 도로위에서 대기시간도 모른 채 막연하게 특별교통수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실을 듣고 양중희(가명, 17)군을 봄 소풍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학창시절 또래 친구들과 추억을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경우 소풍에서 학생을 제외시킨 담당교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학생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 하지만 장애인 인구가 5,000천여 명이나 되는 남양주에서는 이조차 꿈같은 이야기 일 것이다. 그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인접 지역 간·광역간 이동을 담보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전화번호 통합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특별교통수단이 1대조차 도입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상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는 과제가 분명하다.

## 2. 발달장애인과는 거리가 먼 이동권

흔히들 Universal Design, Design for all 이라하는 생활속에서의 공간디자인이라고들 한다. 장애인 이동권이라 하면 신체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의 Universal Design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2015년 현재 장애인 복지환경은 어떠한가. 장애인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문자 해독능력과 적절한 상황이해 능력의 제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일상생활 속 산재해 있음에도 발달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폐성 장애인 전대진(가명, 9세)군은 숫자를 알지 못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있는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엘리베이터의 승강기를 누르지 못해 늘 계단으로 이동하거나 체육시간이 있는 날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 각 층별 동물의 그림과 같은 울음소리가 나는 음향안내기를 설치하자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지적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접근권·이동권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에 발달장애인의 접근권·이동권의 주제로 논의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관련 관계법령상 뚜렷한 조항이 있는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영국·일본·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모든 문서의 의지리드 버전을 제작이 보급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간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시혜적 전달과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실태를 넘어 이제는 권리를 증진해주는 차원에서 관련 자원들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3. 인권지향적 서비스 개선운동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우선적으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여건들의 수단적 확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복지 서비스만이 아닌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때이다. 수많은 인터넷에 도배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00% 달성’, ‘장애인 법적대수 늘려야 하는 등의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 장치를 구비·보완되어야 한다는 누구나 아는 진부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실생활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의 분출되는 욕구를 모두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른바 실천적 의지만으로도 일상생활 속 편의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 할 것이다. 즉 완전한 수요에 따른 공급도 있어야겠지만 범용적인 사회적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로는 첫째, 2014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민간 기업이 개발·보급한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Application”은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정보들을 활용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해 누구나 손쉽게 편의시설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특별교통수단의 막연한 대기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너도나도 장애인 이동권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여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문제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으며 경찰, 검찰, 인권센터, 장애인 관련 단체 등 누구라 할 것 없이 인권문제를 발굴<sup>12)</sup>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정부출연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센터가 설립 되는 추세로 보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문제는 더욱이 뜨거워 질 것이라 생각한다.

12) 2014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44개의 시설에서 63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생 8개 시설은 수사의뢰 되었으며,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종합적으로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이처럼 일상생활 속 깨진 점자블럭, 작동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음향안내기, 청소도구로 가득한 장애인 화장실, 승강장을 지나치는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을 저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장애인만이 아닌 밀접하게는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 나아가 시민 누구나 감시가자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하는 방법은 발제문의 결론처럼 장애인의 차별이 철폐되고 로망이 현실로 되는 밑거름이라 할 것이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제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

## 행사개요

일 시 : 2015. 4. 24(금) 17:00~19:00

장 소 : 제주벤처마루 앞 광장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세부일정

구분	시 간	(분)	내 용
여는 무대	17:00 ~ 17:10	(10)	[문화공연] 제주청소년연합 댄스동아리 팀
인사 발씀	17:10 ~ 17:25	(15)	[사회자] 인사 [기념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축 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파트 I	17:25 ~ 17:40	(15)	[문화공연①] J-Band, 청춘, 흥관수 합동 [자유발언대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나의 작은 바람
파트 II	17:25 ~ 17:40	(15)	[문화공연②] J-Band(장애인당사자 음악팀) [자유발언대②]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이동권은 기본입니다
파트 III	17:25 ~ 17:40	(15)	[문화공연③] 노래패 청춘 [자유발언대③]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자립생활 환경을 구축하라
파트 IV	17:25 ~ 17:40	(15)	[문화공연④] 흥관수(장애인당사자 가수) [자유발언대④]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파트 V	17:25 ~ 17:40	(15)	[문화공연⑤] J-Band(장애인당사자 음악팀) [자유발언대⑤]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바라며
발표	18:40 ~ 18:50	(10)	중증장애인 5대 요구안 발표
닫는 무대	18:50 ~ 19:00	(10)	[문화공연] J-Band, 청춘, 흥관수 합동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지역에 말하다”

장애인 당사자 자유발언대



【 자유 발언대① 】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나의 작은 바람

임혜성 장애인활동가

저는 태어날 때 난산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때부터 부모님의 정성과 보살핌 속에 학습지 등으로 한글도 배우고 퍼즐 놀이도 배우며 모든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초·중·고를 다니며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등학교를 도와주셔서 학교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이나 학교행사가 있을때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짐이 될까봐 못가는 현실이 저에게는 늘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들수록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이 가슴속에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셔서 저는 언제나 방에 있었고, 그런 체계는 책과 컴퓨터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밖으로 외출한다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에 이후의 일상생활은 너무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세상으로 떠나시면 난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내 꿈은 뭔지? 난 꿈조차 꾸지 못하고 살아야하는 걸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자신을 괴롭혀 속상한 마음에 울고 싶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홀쩍 커버린 나를 목욕시킬 때, 신변처리할 때, 차에 태울 때, 힘들게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죄송스럽고, 큰 딸인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된 듯한 죄책감이 많이 들고 스스로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인 생활에 지쳐있던 그 해,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다보니 더 많은 욕구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에 138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지만 곧 중증장애인인 저에게는 턱 없이 모자란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누리고 있는 문화생활, 여가생활, 사회활동을 소풍가듯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필요한 시간외의 활동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모님과 저는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모자라 활동보조인이 가시면 급한 상황이 생길때는 부모님에게 응급전화로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부모님이 허겁지겁 집에 오실때도 많습니다.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 두시고 오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미안함이 가슴 한구석에 미어 집니다.

어서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되어 누구나 누리는 일상, 사회생활을 걱정없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 자유 발언대② 】

##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이승훈 장애인인권학교 강사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할 수가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서는 제가 가고자하는 곳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대중교통을 저는 거의 이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택시, 버스는 저같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애인콜택시, 장콜이라고 불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은 리프트가 달린 특장차로 휠체어를 탄 상태로 승차할 수 있어 이전 그간 가보고 싶었던 곳에도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약 5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현실은 저의 이런 바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차량도 부족하여 예약 변경도 힘들어서 예약을 하고나면 철저하게 예약한대로 제 일정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을 때나 외출을 할 때에도 그 전날 차량을 예약하고 그 예약시간을 꼭 지키지 않으면 귀가할 수 없었습니다. 만남 중에도 차량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더구나 10시 이후로는 차량이 다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와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동료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티비나 언론을 통해서 복지 복지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통합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지금 이 실태가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왜 22시가 되기 전에 귀가를 해야합니까? 왜 그때 그때 이용하지 못하고 전날 미리 예약을 해야합니까?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독려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장쿨(교통약자지원차량)을 24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 쿨, 당일 배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상버스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 저와 같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물론. 장애인만이 아닌 노인,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진출·활동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 때가 바로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 발언대③ 】

##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

김명선 장애인활동가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만 축약해서 짧고 굵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정규교육과정을 청각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14년간의 정규교육과정 중, 단 한 차례도 수화통역서비스나 대필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업 기간 내내 친구들의 노트 필기를 빌려 보면서 힘겹게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어떠한 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기에 학업과정은 늘 남들보다 더디고 힘든 현실이었기에 결국 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소리만 가득한 교육현장을 떠나 사회로 나오니 학창시절의 어려움보다 더 힘든 장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록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 역시 기본적인 이동권이 많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컨대, 버스에 자막이 없어서 내리는 곳을 놓칠까봐 신경을 곤두 세워야하는 것은 예사이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저의 발음이 좋지 않아 가고자하는 목적지를 말할 때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천천히 말하거나 가끔 종이에 직접 써가며 기사 분께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런 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 속 이동이 이렇다보니 여행 역시 힘이 듭니다. 예전에 우도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우도관광버스 기사분이 우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버스운행시간도 말씀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듣지 못해서 설명 끝났을 때 다시 기사 분께 개인적으로 여쭙보았고, 그 분도 의사소통이 힘이 드니 대답을 종이에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총무업무를 맡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전화통화를 하지 못해 다른 동료 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느끼며, 또 가끔 의사소통에서도 어긋난 적이 있어 오해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은행에서도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혼자 자유롭게 민원을 보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생겨 실수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글씨를 써주거나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전화통화도 부탁을 해야만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었다면 제 삶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누리는 부분,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들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은 차별이며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영상물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면 과연 어떤 출판, 영상 사업자가 이 조항을 지킬지 의문이며 현재도 한국영화를 볼 때 자막을 마치 선심 쓰는 듯한 듯 별도의 자막버전을 두고 있어 평소 비장애인과 어울려서는 영화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깝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장차법이 아무리 장애인들의 문화소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 조항을 만드는데 그쳐 정작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서비스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말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서비스화, 편리화 되어가는 것에 비해 장애인들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생활보장에 관한 발전은 아주 더디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피하고 적대시하기보다는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준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닌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은 세상, 전체 장애유형의 장애인들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유 발언대④ 】

##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 - 문화 ·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보이지 않는 유리벽, 그것이 차별입니다.**

김태우 장애인활동가

갑작스런 사고로 중도장애를 입었지만 문화생활에 대한 향수는 더욱 강해져 수년 전부터 꾸준히 글쓰기를 해왔고 지금은 직접 쓴 책을 몇 권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하기에 글쓰기를 할 때는 내 장애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문화생활, 특히 영화나 공연을 보기 위해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가게 되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예술 시설에 가면 장애인 석은 항상 맨 앞이나 맨 뒤에 마지못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리해 있기 때문입니다. 연극은 무대에서 가까운 곳에서 관람을 해야 생생한 느낌을 체감할 수 있고 영화는 중간이나 뒤편에서 보아야 자막을 보며 편안하게 영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하는 공연장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기가 힘듭니다.

한 번은 제법 규모가 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을 찾아 왜 장애인 관람석이 맨 뒤에만 있냐고 중간이나 앞자리로 해달라고 했더니 구조 변경이 쉽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법적기준은 준수하고 있고 맨 뒷자리도 괜찮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으며 모멸감까지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유명한 금난새 지휘자가 지휘하는 공연이 있어 큰 기대감을 갖고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크고 만들어진지 오래지 않은 그 공연장에서도 내가 앉은 장애인관람석은 공연장 뒤편 출입문 쪽에 있어 공연 내내 산만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걸 공연을 보러 온 것인지 뒷문을 지키러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전에 비해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리벽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관공서나 은행 앞을 지나가다 보십시오. 경사로가 있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경사로입니까. 영화관과 공연장에 있는 장애인 관람석은 무늬만 장애인 관람석이지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 지적을 하면 항상 예산과 규정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은 장애가 없으니까, 자신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이 바로 차별이고 인권침해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만이 기본권이 아닙니다. 문화에 대한 향유도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장받지 못할 때 우리는 차별을 느낍니다.

【 자유 발언대⑤ 】

##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 성인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바라며

홍길훈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학생

전체 장애인 중 43.3%가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국가교육에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저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학력주의 사회에서 노동할 기회를 얻는데도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법이 마련되기 전 학령기에 해당했던 장애인들은 특수교육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용기만으로 일반학교에 다니려고만 시도했을 뿐이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장의 권고, 편의시설의 미비, 특수교육적 교수방법의 부재, 통합교육적 교육철학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학교로부터 사실상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공교육 체제가 60년대 이후에 자리잡은 이래로 거의 30여년 이상 동안 장애인들은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대안도 없이, 공교육 체제로부터 소외되어야 했고 더욱이 학령기를 벗어나버린 성인중증장애인은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떨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라는 곳은 일정한 단계의 교육 수준에 도달시키는 형태의 학습 욕구 충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 등, 다양한 문화 양식을 제공해 주는 역할은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학교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해, 학교가 제공했던 문화 양식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한 성인장애인의 경우, 이를 충족시켜줄 기회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나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면 또래 집단이 아닌 문화적 격차가 있는 집단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그러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경험을 강요받아야 합니다.

성인장애인도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향유하고, 이를 경험으로 사회적 인간으로 변모해, 주체적 삶을 실현할 권리를 분명 갖고 있다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매우 당연한 사실인 만큼, 이들의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주지역의 상황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제주지역에는 안타깝게도 장애인이 마음 놓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혹은 평생교육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제주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운영하는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협소한 공간에서 자원봉사 선생님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지에 사는 동료들은 등교, 하교에 4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배제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교육의 현실에 한숨만이 절로 나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처럼 민간부문이 도맡아 오고 있는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무려 43.3% 이상의 장애인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열악한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결코 타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정책을 맡고 계신 각 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는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성인장애인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력 미 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히 바랍니다.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중증장애인 5대 요구안



## 2015 중증장애인 5대 요구안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을 시설과 골방에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우리는 차별의 벽을 허물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원한다!**

364일 소외된 삶과 단 하루의 조명, 이것이 ‘장애인의 날’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차별은 모든 곳에서 존재한다. 높은 보도블럭, 계단형 버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통로와 문, 보이든지 말든지 그냥 진행하는 학교수업, 말로만 떠드는 공공행사, 그리고 동정어린 시선과 귀찮다는 표정까지 우리 사회 대부분과 우리들 마음에 차별이 존재한다.

전체 인구의 6~7% 남짓이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마주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많은 장애인들은 어디에서 사는가. 골방에서, 시설에서, 그리고 복지단체의 작은 공간에 갇혀 살고 있다.

함께 살자. 하루만을 기념하지 말고, 모든 날 동안 함께 어울려 살자. 가두어 두지 말고, 우리가 걷는 이 거리에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평등을 실천하자!

평등한 제주지역사회를 위해 장애인차별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는 요구한다.

##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문제점】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사회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생존권적 요구임.

현재 전체 장애인 250만명중 약 2.4%, 1,2급 등록장애인의 11%에 해당하는 약 6만여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논리로 매우 제한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제주도내 등록장애인중 1,2급 장애인 수는 7,622명이나,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추가시간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404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중앙정부 지원 기준 1일 최대시간은 약 12시간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전국 모든 광역 시도에서 추가지원을 시행중이며 전라남도의 경우 월 330시간의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있음.(최중증 장애인 인정점수 400점 이상)

제주지역은 2011년부터 20시간을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5년 현재 까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제주지역 활동보조 이용자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이며, 독거인 경우에는 최중증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우리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최중증독거장애인에 대해서 1일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추가시간에 대해서 등급과 시간을 확대하라.

## 2.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문제점】

### 2-1. 제주특별자치도내 저상버스 관련

현재 제주지역 전체 인구의 약 30%이상이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현재 제주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나 대체 교통수단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제주지역 저상버스는 총 9대, 특별교통수단은 40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비율을 지역 시내버스의 30%까지 보급하기로 함.(2013년 기준 도내 시내버스 대수 177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11대 도입이후 현재까지 저상버스도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중 2대는 폐차하여 현재 9대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저상버스인 경우 운행하려는 버스의 1/3을 확보하여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문제임. 이와 더불어 버스정류소, 도로단차 해소등 정류소 인프라 개선과 장치사용미숙의 문제해결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 2-2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관련

현재 제주지역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법정대수는 40대로 충족하고 있으나 실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인데 반해 법정대수 기준은 1, 2급 중증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어 실제 법수대수 기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현실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07시~22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활동시간을 07시~22시로 제한하는 문제 발생.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하다 보니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보행가능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기존 택시회사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를 분산시켜 이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영을 확보해야 함.

### 2-3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접근권 확보

인도부와 인도부를 연결하는 경사각이 차이가 많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고발생위험이 있음.

경사각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의 보행권을 확보하여야 함.

보도에 설치되어 보행에 장애를 주는 설치물을 제거하여야 함.(변전함, 구조물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기준에 맞는 블라드(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의 블라드 제거가 필요함.

## 우리의 요구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전체 시내버스의 30% 확보하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확보와 차량운영의 이원화 방안 마련하라.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하라.

### 3.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 【문제점】

현재 세계적인 장애인복지의 흐름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장애인을 주류사회에 맞추도록 지원하여 치료 후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재활’에서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부여하는 ‘자립생활’로 변화되었음.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명문화가 이루어졌으나 형식적인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주지역 역시 2009년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 또한 형식적인 수준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체계적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택(31.5%), 생활비(22.5%), 일자리(13.1%), 활동보조(12.3%)로 드러남.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생활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는 없으나 서울시의 경우 자립생활 체험홈 25가구, 자립생활가정 15가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인당 800만원의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제공하고 있고 2017년까지 15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제주지역 역시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초기정착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주거서비스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야 함.

#### 우리의 요구

탈 시설 장애인을 위하여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라.

탈 시설 및 가정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 4.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

### 【문제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는 지역 주민과 집단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몇 년간 장애인당사자의 대한 성폭행 및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폭력 등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소홀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지역사회의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낮은 인식수준에서 비롯됨.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가칭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장애인차별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가칭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등 실제적인 효력이 없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당사자의 과반수로 구성,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부의하고 조사권 발동을 명할 수 있는 인권보장위원회가 포함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함.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전담할 기구로서 현실적으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로서 설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함.

단순 상담의 수준을 넘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권센터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함.

공무원 및 민간단체에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교육을 실시.

장애인 인권침해 대부분이 시설 및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우리의 요구

실효성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라.

## 5.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 【문제점】

평생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에 사회를 이끄는 주요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 지원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에 대한 양극화 현상 해소와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교육자원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가 시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의 의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 유형별, 학과 과정별, 생애주기별 등 다양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함.

제주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함.

이마저도 공간이 협소하고 안정적이지 못해 다양한 장애성인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정적 재정지원과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해소시키고 교육에 대한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장애인평생학습시설 설치 및 운영이 시급.

## 우리의 요구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야간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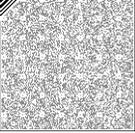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부록 I]

장애차별 진정사건 관련 통계자료



# 장애차별 진정사건 관련 통계자료

##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4.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진정건수	18,792	10,456	8,336
	2013. 12.	비율(%)	100.0	55.6	44.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진정건수	4,269	3,616	653
	2008. 4. 10.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진정건수	14,523	6,840	7,683
	2014. 12.	비율(%)	100.0	47.1	52.9
	2008. 4. 11.~	진정건수	1,111	526	585
	2008. 12.	비율(%)	100.0	47.3	52.7
	2009. 1.~	진정건수	1,685	960	725
	2009. 12.	비율(%)	100.0	57.0	43.0
	2010. 1.~	진정건수	2,681	986	1,695
	2010. 12.	비율(%)	100.0	36.8	63.2
	2011. 1.~	진정건수	1,803	917	886
	2011. 12.	비율(%)	100.0	50.9	49.1
	2012. 1.~	진정건수	2,549	1,209	1,340
	2012. 12.	비율(%)	100.0	47.4	52.6
	2013. 1.~	진정건수	2,496	1,184	1,312
	2013. 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진정건수	2,198	1,058	1,140
	2014. 12.	비율(%)	100.0	48.1	51.9

##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4.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합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1~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장애 진정 건수	8,336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40
월평균	53.1	13	1.7	1.5	4.5	10.1	9.7	21.3	16.7	67.2	60.4	141.3	73.8	111.6	109.3	95

###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4.12.31.)

(단위: 건, %)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및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7,683	2,439	1,527	548	943	944	61	332	889
	비율	100.0	31.7	19.9	7.1	12.3	12.3	0.8	4.3	11.6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4.9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5	8.1	24.2	0.9	5.4	5.4
2012	건수	1,339	492	192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3	6.5	10.6	17.3	1.0	3.5	10.1
2013	건수	1,312	380	299	71	251	114	7	50	139
	비율	100.0	29.0	22.8	5.4	19.1	8.7	0.5	3.8	10.6
2014	건수	1,140	402	290	93	112	104	13	55	71
	비율	100.0	35.3	25.4	8.2	9.8	9.1	1.1	4.8	6.2
등록 장애인 구성비 <sup>1)</sup>	인원 (천명)	2,501	1,309	253	253	255	197	17	95	122
	비율	100.0	52.3	10.1	10.1	10.2	7.9	0.7	3.8	4.9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2. 12.(보건복지부)

##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4.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7,683	507	434	4,705	1,187	545	1,022	544	1,114	293	441	965	631
	비율	100	6.6	5.6	61.3	15.4	7.1	13.3	7.1	14.5	3.8	5.7	12.6	8.2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5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6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40	94	66	676	180	62	142	108	165	19	61	123	120
	비율	100	8.2	5.7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5

##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 분		2001.11.25. ~ 2008.4.10.	2008.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2013. 1. 1. ~ 2013.12.31.	2014. 1. 1. ~ 2014.12.3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2008.4.~2014.12.)
합계	전체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40	7,683
	월평균	8.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5.0	94.9
고용	전체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507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6.3
교육	전체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5	434
	월평균	1.6	7.0	4.1	4.6	5.2	8.0	3.8	5.4	5.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4,705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58.1
사법·행정/참정권	전체건수	-	55	42	39	80	93	71	61	441
	월평균	-	6.3	3.5	3.3	6.7	7.8	5.9	5.1	5.4
괴롭힘, 기타	전체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3	1,596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3	19.7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4.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 계	지체	시각	뇌병 변	청각	지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7,683	2,439	1,527	548	943	944	61	332	889	
고용	507	176	51	40	83	37	9	31	80	
교육	434	62	71	44	47	146	4	10	50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1,187	403	196	142	74	203	11	49	109
	보험·금융	545	136	90	52	86	88	6	49	38
	시설물 접근	1,022	706	152	49	15	13	-	3	84
	이동 및 교통수단	544	278	80	41	18	32	4	2	89
	정보통신·의 사소통	1,114	32	631	17	304	24	3	1	102
	문화·예술· 체육	293	56	24	16	55	114	-	7	21
사법·행정	294	60	65	12	35	63	4	15	40	
참정권	147	55	26	2	3	4	-	2	55	
괴롭힘 등	965	241	52	91	197	172	11	115	86	
기타	631	234	89	42	26	48	9	48	135	

## 2.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 가. 고용 영역(2008.4.11.~2014.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지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합계	합계	507	198	70	51	12	15	115	3	43
	비율	100.0	39.1	13.8	10.1	2.4	3.0	22.7	0.6	8.5
	공공	169	90	7	25	9	3	16	2	17
	민간	338	108	63	26	3	12	99	1	26
2008	합계	41	19	5	6	1	-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	1	1	1
	민간	23	8	4	4	-	-	7	-	-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4	23.2	1.4	1.4
	공공	20	11	-	5	1	-	2	-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	11.0
	공공	30	11	-	8	3	1	4	-	3
	민간	52	16	12	5	-	2	11	-	6
2011	합계	64	23	10	4	1	-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	26.6	1.6	12.5
	공공	14	8	-	-	-	-	2	1	3
	민간	50	15	10	4	1	-	15	-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	9.8
	공공	34	18	4	2	1	2	4	-	3
	민간	48	15	6	3	-	3	16	-	5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	16.0
	공공	29	15	1	4	1	-	2	-	6
	민간	46	13	9	2	-	1	15	-	6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	4
	비율	100.0	40.4	11.7	11.7	3.2	5.3	23.4	-	4.3
	공공	24	16	1	4	2	-	1	-	-
	민간	70	22	10	7	1	5	21	-	4

#### 나. 교육 영역(2008.4.11.~2014.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 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434	63	51	77	35	82	25	101
	비율	100.0	14.5	11.8	17.7	8.1	18.9	5.8	23.3
	공공	292	27	28	39	24	79	19	76
	민간	142	36	23	38	11	3	6	25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	4	5	-	1	2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	-	-
2011	합계	62	10	6	7	1	3	-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	56.5
	공공	43	6	5	1	-	3	-	28
	민간	19	4	1	6	1	-	-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	-	5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	-	2	-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3	3	6	8	1	10	5	10
	민간	23	3	4	9	1	-	3	3

### 다.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4.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4,705	1,187	545	1,022	544	1,114	293	441
	비율	100.0	25.2	11.	21.7	11.6	23.7	6.2	100.0
	공공	2,019	568	46	469	322	416	198	-
	민간	2,685	619	499	553	222	697	95	-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
	민간	258	87	84	60	13	9	5	-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62	211	6	181	71	269	24	-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3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
2013	합계	706	154	55	128	49	307	13	71
	비율	100.0	21.8	7.8	18.1	6.9	43.5	1.8	100.0
	공공	175	52	7	39	28	45	4	-
	민간	531	102	48	89	21	262	9	-

구 분	재화·용역							사범·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2014	합계	676	180	62	141	108	166	19	61
	비율	100.0	26.6	9.2	20.9	16.0	24.6	2.8	100.0
	공공	223	67	8	48	43	48	9	-
	민간	453	113	54	93	65	118	10	-

###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4.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965	19	27	23	149	119	556	72
	비율	100.0	2.0	2.8	2.4	15.4	12.3	57.6	7.5
	공공	122	6	2	4	21	5	71	13
	민간	843	13	25	19	128	114	485	59
2008	합계	42	-	-	3	5	7	26	1
	비율	100.0	-	-	7.1	11.9	16.7	61.9	2.4
	공공	2	-	-	-	-	1	-	1
	민간	40	-	-	3	5	6	26	-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	-	4	-	12	1
	민간	87	-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	21.0	15.2	47.6	8.6
	공공	19	-	1	-	4	1	12	1
	민간	86	4	3	-	18	15	38	8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0	10.8
	공공	17	1	-	-	2	-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	2	1	-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비율	100.0	1.6	2.4	4.9	13.8	16.3	54.5	6.5
	공공	18	2	-	2	4	2	8	-
	민간	105	-	3	4	13	18	59	8

###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4.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937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7

####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04.11.~2014.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기간 (차별아님/ 사실아님)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간)	합계				
합계	7,284	3,719	2,587	336	2	306	1,943	1,132	3,516 (2,355)	17	30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증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구성비 (%)	100.0	100.0	100.0	13.0	0.1	11.8	75.1				
			69.6					30.4			
			51.1						48.3	0.2	0.4
2008년	347	156	92	14	-	11	67	64	190 (116)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5.2	-	12.0	72.8				
			59.0					41.0			
			45.0						54.8	0.3	-
2009년	716	355	209	8	-	47	154	146	351 (236)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3.8	-	22.5	73.7				
			58.9					41.1			
			49.6						49.0	0.6	0.8
2010년	1,101	417	262	28	1	56	177	15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0.7	0.4	21.4	67.6				
			62.8					37.2			
			37.9						60.2	0.5	1.4
2011년	952	566	361	124	-	32	205	205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4.3	-	8.9	56.8				
			63.8					36.2			
			59.5						40.0	0.1	0.4
2012년	1,508	890	701	116	-	20	565	189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16.5	-	2.9	80.6				
			78.8					21.2			
			59.0						40.8	0.1	0.1
2013년	1,563	807	643	29	-	79	535	164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4.5	-	12.3	83.2				
			79.7					20.3			
			51.6						48.3	-	0.1
2014년	1,097	528	319	17	1	61	240	209	560 (452)	4	5
구성비 (%)	100.0	100.0	100.0	5.3	0.3	19.1	75.2				
			60.4					39.6			
			48.1						51.0	0.4	0.5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상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4.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증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7,284	3,719	336	2	306	1,943	1,132	3,516 (2,355)	17	32
	비율(%)	100.0	100.0	69.6				30.4			
				51.0				48.3	0.2	0.4	
고용	건수	480	163	7	-	34	20	102	313 (248)	4	-
	비율(%)	100.0	100.0	37.8				62.2			
				34.1				65.1	0.8	-	
교육	건수	414	198	10	-	35	113	40	213 (177)	-	3
	비율(%)	100.0	100.0	79.7				20.3			
				47.7				51.6	-	0.7	
재화·용역	건수	4,441	2,695	276	2	165	1576	676	1,733 (1,217)	9	4
	비율(%)	100.0	100.0	74.9				25.1			
				60.7				39.0	0.2	0.1	
사법·행정 /참정권	건수	419	214	23	-	4	135	52	204 (130)	-	1
	비율(%)	100.0	100.0	75.7				24.3			
				51.0				48.8	-	0.2	
피로힘 등	건수	1,530	449	20	-	68	99	262	1,053 (583)	4	24
	비율(%)	100.0	100.0	41.6				58.4			
				29.3				68.8	0.3	1.6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및 이행 현황(2008.4.11.~2014.12.31.)

### 1) 적용법률에 따른 인용(권고) 사건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권고 사건 수	336	7	10	276	23	20
국가인권위원회법	16	1	2	7	2	4
장애인차별금지법	320	6	8	269	21	16

### 2) 각 부문별 권고이행률 비교

(단위: 건)

구 분	총계 (권고건수)	권 고 이 행 상 황				권고이행률 (%)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검토중		
합계	합계	336	302	21	5	8	95.3
	공공부문	147	133	8	4	2	94.5
	민간부문	189	169	13	1	6	95.9

\* 권고이행률 산정식 = {이행+(일부이행×0.5) / (전체권고건수-검토중)} × 100

\*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공립학교, 민간부문은 주식회사 등 법인 및 단체, 사립학교, 개인을 의미함.

\* 이행: 위원회에 정식 통보되지 않았으나,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용처리함.

\* 검토중 : 권고수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중.

## 4.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표 16> 직권조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이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붙임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4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4)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하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연 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 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 “20.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4)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 고용보장 지원체계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 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 붙임2. 장애차별 진정사건 위원회 권고현황(2008.04.11~2014.12.31)

### □ 고용영역(7건)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 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권고	2009.8.28.	불수용 (시정명령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 권 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 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지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의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 서 경고조치할 것 권고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 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 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 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1.9.2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경0889400)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2014.10.21	검토중

□ 교육 영역(10건)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 권고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 권고	2008.12.22.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복지시설에 포함시킬 것 권고	2008.12.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2.1.10.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 권고	2012.6.13.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진정0181100)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03진정0876000)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	2014.8.20.	검토중
16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정0309200)	00학교장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	2014.11.17.	검토중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7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14.12.16	검토중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276)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 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전자문자인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 권고	2008.8.27.	수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21	권고 (위원회 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축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 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 권고	2008.10.1.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 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 권고	2008.12.3.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 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 권고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 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25	권고 (위원회 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 권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권고	2009.9.18.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 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 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권고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 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 권고	2010.7.1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 012 등 2건)	00은행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 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 카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할 것 권고	2010.8.9.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 231 등 2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 ·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 기를 새로 설치할 것 권고	2010.8.9.	수용
2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 700)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 도록 할 것 권고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 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 권고	2010.8.9.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 700)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 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권고	2010.8.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정0291 000 등 2건)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 권고	2010.8.25.	수용
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 552 등 6건)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 555)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34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 560)		2010.10.20.	일부 수용
35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 563)		2010.10.2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 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 리적으로 개정할 것 권고	2010.10.2 0.	수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 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1.1.6.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 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 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성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 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 지 않도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 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한다.	2011.4.26.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 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 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 고	2011.4.26.	수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 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 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 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 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 비전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 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 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변영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 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 권고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 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 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 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 권고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 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 시할 것 권고	2011.5.17.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 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 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6.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6.30.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49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 권고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 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 권고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51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 애인이 0000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 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 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1.8.22.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에 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 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 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 권고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 인 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 이동편 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 대할 것 권고	2011.8.22.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 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 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 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 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 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 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 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 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 립·시행할 것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 0)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1.11.28.	수용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 0)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1.28.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 53900)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5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 500)	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 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 에게, 진정 인에 대한 공제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 와 90일 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 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 권교육 권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제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5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 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 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할 것 권고	2012.3.23.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접수사 할 것과,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 권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 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권고	2012.5.1.	수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 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 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권고	2012.5.1.	수용 (90건) 일부 수용 (2건)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 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장 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 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 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6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는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 권고 국도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지층(2층 및 3층)에 거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66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2012.7.18.	수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 권고 국도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2.7.18.	수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	시각장애인 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경0699900)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 처리지침 제18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무적 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경0188500)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 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 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 권고	2012.8.22.	수용
71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경0012500)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 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 권고	2012.11.29.	불수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경0782400)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 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 록 할 것,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 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설치할 것 권고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 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 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경0653600)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홈페이 지를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차별금지법」제21 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 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 할것과정당한편의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 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 0 등 3건)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화통 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 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 을 권고	2013.4.3.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도 및 안내설 비 설치와 수영장내 탈의실내 사물함헬 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 기 등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공, 시각 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 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 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 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00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 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 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경0618000 등 6건)	00구청장과 00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에게, 시각 또는 발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교재 제공,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 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접이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 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경0618800)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 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000시네&000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82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경0073700)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경0388500)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 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사업무를 담당 하는 관련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 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 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위 한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 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 조를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 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식 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 92700)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 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 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 터 이용 제한 (13진정09 51100)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 체어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 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 행 실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4.10.21.	검토 중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 13000)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 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검토 중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 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 차 0000728)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 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 권고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 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08.8.8.	수용
89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 애인에 대 한 휠체어 분리 (08진 차 0000874 등 2건)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 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 권고	2009.8.31.	불수 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인 구속 수 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 차 0000664)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 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 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 할 것 권고	2010.1.15.	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11)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권고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1.5.4.	일부 수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 과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 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철저히 하 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 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 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권고	2012.7.4.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 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 출 것 권고	2008.12.3.	수용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 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12)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 권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08.12.3.	수용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줄 것 권고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 괴롭힘 영역(20)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 권고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0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2010.6.3.	수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10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10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권고	2010.12.17.	수용
10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할 것 등 권고	2011.1.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 한 시설장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 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6.	수용
106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 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 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 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10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 뢰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 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 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 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 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 권고	2011.6.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장의 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 (11진정0440 300)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 하고 학대한 피진정인 고발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 관리·감독 소홀 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 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 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1.10.	수용
10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 100)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 진정인 고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 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권고	2011.11.10.	수용
1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 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 300)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 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 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 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 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 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헌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경0306 100)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헌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 권고	2012.2.13.	수용
1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경0586 400)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수용
1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 요 및 금전착취 (12진경0202 800)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요청	2012.6.13.	수용
1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 정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2진경0519 200)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정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 등 권고	2013.6.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 400)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 000)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11.12.	수용
11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 200)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 요양병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1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 500 등 2건)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00요양원에서 발생한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고발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원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00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간호사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검토 중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부록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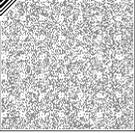
시, 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개최(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개최(안)

## I 추진배경 및 토론회 개요

### 추진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7주년 기념토론회(4. 8.)」 세션 2에서 ICT환경변화와 장차법 개정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논의한 바 있음  
 7주년 기념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정보문화의 달”인 6월에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6. 12.) 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음  
 7~8월 외부전문가 자문단(T/F) 운영 후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참고】 중장기 계획과의 관련성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

성과목표 II-2 :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

추진과제 : 장애유형별 접근권 보장 강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년)

전략목표 I :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목표 I-6 : 장애인 접근권 보장

주요 추진과제 : 정보접근권 보장(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 II 주요 논의사항(안)

###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재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모바일 분야를 큰 주제로 하되, IP TV 분야를 작은 주제로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시간관계상 기타 주제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고 발표자료에 담는 것으로 대체함.

### 큰 주제 :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 논의

장차법 시행 후 7년 간 IT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 못한 사항 미국의 21세기통신법(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년))의 내용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법의 개정 및 보완방향 검토

모바일 접근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간의 수용성이 낮으므로 관련 규정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무화할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함

모바일 접근성 지침, 웹 접근성 지침 개정 및 상위 법령 관련 쟁점사항

### 작은 주제 : <IP TV 정보접근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책적 개선(안) 논의

기존 진정사건의 기각 사유 및 현재 변화된 상황(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CJ헬로비전의 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타 주제 : 제한된 시간에 모두 논의할 수 없으므로 선별적으로 검토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의 개선, 사용성 측면의 평가 비중 확대

장애인 정보접근성 인증·평가, 검증 분야의 전문영역 구축 및 제도화 필요성

시·청각 장애인의 전문직업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접근약자 디지털 접근성 평가사(가칭)’ 등 전문분야 자격증 도입 등

당근과 채찍의 조화,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접근성 준수 제품 우선 구매제 등)

### 토론회 후원 및 홍보 협조 : 전자신문사

**소요 경비 : 약 700만원 내외**

**토론회 자문단(T/F) 운영**

법령 개정(안) 및 정책적 개선(안)에 관하여 사전 검토 등 준비(5명으로 구성)

(붙임)

1.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개요
2.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개정법률안 현황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의견

<붙임 1>

##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개요

주 제 : 시·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차법 등 개정방안

주 최(공동)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회의원실(미정)

일 시/장소 : 2015. 9. 1.(화) 14:00~17:00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참 석 : 장애인단체 등 100명 내외

후 원 : 전자신문사(ETNEWS)

시 간		내 용
14:00~14:30	(30분)	축사 및 인사 말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장애인단체장, 국회의원(미정)]
14:30~16:10	(100분)	좌장 : 이석준 과장(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발제자(1명) :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토론자(3명) : 이성일 교수(성균관대) 안동한 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봉섭 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 발제자(1명) : 강완식 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토론자(2명) : 이재찬 차장(CJ헬로비전) 김정호 이사(엑스비전테크놀로지) * 발제자의 발표는 2명, 각 20분 이내 * 토론자의 토론은 5명, 각 10분 이내
16:10~16:50	(40분)	참석자 종합토론(20분 내외) 방청석 질문(답변 포함 20분 내외)
16:50~17:00	(10분)	폐회

<붙임 2>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개정법률안 현황

(’13. 1. ~ 현재)

발의자	제안/개정	명칭	제안/개정 요지	비고
국회의원 김우남 의	2015. 7. 8.	국가정보 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웹접근성”을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으로 모바일 앱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 정부가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포함을 명시.	상임위 계류의안
국회의원 이노근 의	2014. 6. 9.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항 후단에 “영화상영관 장애인 관람석 위치” 문구 신설	상임위 계류의안
국회의원 최동의 의	2013. 6. 25.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① 국가, 지자체는 정보통신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이 가능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함(제8조제3항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②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③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큰 문자·점자 또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신설)	상임위 계류의안
국회의원 최동의 의	2013. 5. 20.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3항 중 “화면해설 등”을 “화면해설, 한국어 더빙 등”으로 개정	상임위 계류의안
국회의원 최동의 의	2013. 1. 7.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4조 “점자자료”를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개정 등	2014. 1. 28. 개정 2015. 1. 29. 시행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35호, 2013.8.13.,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숙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5.·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 - - - -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 - - - - - - - - - - - - - .</p> <p>5.·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④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⑥ (생략)</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 - - - - -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 -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35호, 2013.8.13.,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p>
<p>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①·② (생략)</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 - - -</p>

<붙임 3>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의견

(장애인 정보접근권 단체간담회 2015. 6. 12. 국가인권위 회의실)

### 1. 모바일 앱 중심으로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적·제도적인 재정비 필요성

플랫폼과 앱 개발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함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전자 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대상을 웹 사이트만 명시하고 있고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 웹 사이트 이외의 접근성 관련 차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웹 접근성에 준하여 차별 행위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을 개정하여야 함.

또한 현재 관련 법은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법’은 제조업자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생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 (차별행위)

① (생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생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2.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영역 확장의 필요성

접근성 개념을 콘텐츠에 국한된 영역에서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고, 접근성 측면의 장애인 개념을 고령자 등으로 확장할 필요성 있음.

스마트폰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2월 현재 약 4천 106만명이 스마트폰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고 banking, 쇼핑, 예매 등 모바일 정보화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준수가 미흡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약자의 모바일 이용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음.

위 1의 의견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대상으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대상에는 ‘웹 사이트’만 표시되고 모바일 앱 등 나머지 전자정보는 명문화되지 않아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서비스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접근성 준수에 대한 의지 및 시장의 해석이 모호함.

따라서 관련 법 및 시행령에 전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의 명문화가 절실히 필요함. 또한 그나마 현재 접근성 준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웹 사이트도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콘텐츠 위주의 점검으로 잘못 인식되어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이 필요함.

접근성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보다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확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표현하거나 일반 도서에 대하여 독서가 불가능한 한 경우를 독서 장애로, 학습을 수행할 수 없어 학업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경우를 학습 장애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통신 이용이 불편한 사람을 ‘정보접근약자(가칭)’로 개념을 확장해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관련 표준 추세로 보면 장애인이라는 독자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관련 ISO 국가표준 등에서 표준의 서문이나 목적 등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美, 21세기통신법(“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년)”)이 주는 시사점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은 장애인 등이 통신환경이나 비디오 환경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전자정보를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이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통신중계 서비스,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 등을 직접 명시하고 있음.

특히, 접근성 준수 이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 조달, 유지, 보수, 사용되는 모든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웹 사이트만 명시하고 그마저 직접적인 강제 사항이 없고 위반 시 처벌 또한 쉽지 않은 국내법에 비교하면 장애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그 차이가 클 것임.

더불어 이 규정에서 참고해 보아야 할 것은 서비스 제공자 및 운영자 뿐 아니라 서비스 제조사

및 개발자 등도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 진출 등을 제한하는 일종의 보호 장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정도임.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재난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재난망 운영과 관련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망 운영 및 계획 현황을 보면 장애인 재난 등에 대하여는 주파수 할당 등 관련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받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함.

### 3.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개선, 사용성 측면의 평가 비중 확대, 장애인 당사자의 평가 참여 제도화 필요성

컨텐츠, S/W 업데이트가 수시 이루어지는 데에 따른 접근성 편차 최소화

현재 웹 접근성 인증 심사 시 한 사이트에 대해 장애인 3인(전맹, 저시력, 지체/뇌병변) 이상 핵심 과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시 인증기관 즉시 취소 등 강력한 견제 조항이 없어 형식적인 장애인 사용성 심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해외의 사례를 보면, 접근성 인증 및 관련 제도 개선이 사용자(단체)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이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정부 주도로 지침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사용자 단체에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일부 지침 및 인증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접근약자의 사용성 보장이 주가 아니라 개발·관리·심사 편의에 편중되어 개정되고 있음.

최근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 개정되었으나 지침 작업 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학계·개발업체가 주도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보접근약자의 사용성이 이전 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지침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주요 개정내용의 반대이유

명도대비 기본 약화

필요대상 : 저시력 시각장애인, 고령자, 색각 장애인 등

기존내용 : 텍스트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내용 : 화면 확대가 가능하면 명도대비는 3:1로 낮출 수 있다.

반대이유 : 콘텐츠의 명도대비와 화면확대는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하는 것과 명도대비를 낮추는 것은 연관이 없음. 현재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확대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확대가 가능한 콘텐츠’의 전체 조건은 전체 콘텐츠의 명도대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 기준인 4.5:1로 제공된 콘텐츠도 확대 기능 이용을 하더라도 고령자와 장애인의 정보 인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음.

3:1의 예	4.5:1의 예
명도대비의 예제입니다.	명도대비의 예제입니다.
명도대비의 예제입니다.	명도대비의 예제입니다.

## 적절한 링크 텍스트 제공

필요대상 : 전맹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

기존내용 : 링크의 용도나 목적을 주변 맥락과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개정내용 : 주변의 맥락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반대이유 : 링크에 대해 ‘표, 계층정보, 선, 폰트’ 등 주변 맥락을 제공하더라도 듣는 것으로만 의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주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좁은 시야의

저시력 장애인 역시 주변 맥락을 확인하여 링크의 용도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됨. 링크 텍스트가 잘 제공되어 있으면 사이트에 처음 접근하여 구조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빠른 이동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기존 지침을 유지해야 함.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기준 약화

필요대상 : 뇌병변 장애인, 상지장애 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기존내용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페이지 시작 등)에서 새 창 또는 레이어 등 형태로 정보나 기능을 전달하지 않아야 함.

개정내용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페이지 시작 등)에서 새 창을 열어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야 함. (레이어 형태는 권고)

반대이유 : 레이어 형태의 팝업도 새 창 형태와 동일하게 장애인, 고령자 등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된 상황이며, 오히려 새 창 형태보다 정보접근 및 이용이 더 어려운 방법임. 왜냐하면 레이어 형태의 팝업은 화면을 가리고 있고, 키보드만 이용 시 초점이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등 뇌병변 및 상지장애 뿐만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까지 원하는 정보 확인이 매우 불편하며 레이어 창 닫기 등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음.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 건에 대해, 해당 진정 내용에 대한 사용자 입장의 점검이나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자동점검 프로그램’ 결과만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있어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 기댈 곳이 없는 실정임.

웹 접근성 인증제도가 돈 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차별 받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약자를 대변하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하여야 함.

## 4. 중앙정부, 장애인 단체, 전문가 등 긴밀한 협력 필요성(정책협의체계 구축 등)

정보접근성 문제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 그 토대를 갖추었으나, 그 이후 관련 업무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이관되고 소속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인력감소 및 예산 삭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정부 및 장애인 단체, 전문가 등의 협의 및 연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 등에서 하루 속히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처 및 담당부서를 정하여 정책포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 사례

웹 접근성 국가 표준 지침 등 접근성 관련 주요 지침들은 대다수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 접근성은 장애인 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지침 마련 및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의 사례

RNIB(왕립시각장애인협회)가 주도 하에 실제 장애인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항목들과 웹 접근성 가이드 라인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인증을 하고 있음. (정부 인정 인증제도)

199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2004년 10월 이후부터 자국 내 모든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명시

#### 미국의 사례

NFB(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도 하에 웹 접근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접근성 문제를 소비자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연방정부 인정 인증제도)

1990년 미국 장애인법 및 1998년 미국 재활법 508조에 의해 규정

## 5. 당근과 채찍의 조화,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접근성 준수 제품 우선 구매제 등)

경제논리를 극복하고 시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미국의 재활법 등과 같이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접근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면 관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물우선구매 제도 등에 용역 부분을 추가하고 인증심사 등 관련 용역을 정부 발주 기관 등이 우선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관련 법의 목적과 같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직업을 가지기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있어 ‘웹 접근성 평가사’라는 전문 분야의 직업인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됨. 양성된 평가사는 이후 정보 접근성과 관련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에 이직을 할 수 있음.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장애인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고령 사회로 변화하면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음. 접근성을 준수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 공하는 부가적인 수준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미 글로벌 기업 등에서는 이에 대응한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제품 중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접근성을 잘 지키고 있으나 국내 시장에는 동일 제품에 대해 접근성 기능이 빠져 있어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9.]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나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

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회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울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등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 ③ 삭제 <2010.5.11.>
- ④ 삭제 <2010.5.11.>
-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2365호, 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훈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 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1.5.19.>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5.19.>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8.>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1.5.19.>

**부칙**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91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3.3.23.>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2013.5.22.>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5.22.>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 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5.22.>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2.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물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 <개정 2013.5.22.>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2조의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제목개정 2013.5.22.]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인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 제5장 연차보고 등

**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1.1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제47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9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삭제 <2013.3.23.>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1. 중앙행정기관 : 매년 4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 : 매년 7월 31일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제5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3.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 및 조정의 상대방에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의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9.]

**제6조** 삭제 <2013.3.23.>

**제7조** 삭제 <2013.3.23.>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 삭제 <2013.3.23.>

**제9조의2** 삭제 <2013.3.23.>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4.4.29.>

**제11조** 삭제 <2014.4.29.>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3.23.>

③ 협의회의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현황등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의 도입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기반 조성
2.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교육, 컨설팅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3. 그 밖에 민간 분야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 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다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민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간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협의체의 의장이 정한다.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5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 중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 및 기관 간의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의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의 목적 및 사유
2.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및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계획
4. 그 밖에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로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공동으로 중요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전문기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지식정보자원 관리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3.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유통 및 통합 업무에 대한 지원
4.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자 부여 등 분류체계 구성 업무의 지원
5. 지식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지원

6.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지원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3. 지원받으려는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내용 및 규모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및 최근의 활동실적
3.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을 위한 해당 시책사업 및 활동의 사회적 수요와 파급효과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터넷중독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망과 추진전략
4.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와 개발
5.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6.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중독 대응방안
8.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제목개정 2013.11.20.]

**제30조의2(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매체 및 콘텐츠 관리의 적절성
3. 인터넷중독 진단 방법 및 상담센터 등에 대한 안내의 적절성
4.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여부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마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교육·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30조의8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중독 현황 및 사례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2. 웹사이트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등의 관리·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

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2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5(인증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 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폐업·휴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6(수수료)** 인증기관이 품질인증 신청인에게 받는 수수료의 기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7(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판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8(웹접근성 품질인증표시 및 홍보)**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②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개발·생산 사업자: 해당 정보통신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 개발·보급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정보통신제품 또는 콘텐츠의 개발·생산·제공 실적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2. 개발·생산·제공·보급하려는 정보통신제품, 콘텐츠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계획, 콘텐츠의 제공계획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①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8.3.>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6. 삭제 <2009.11.26.>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인증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에 관한 이용자 위해 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8조(실태조사)** ①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정보화 지원 실태
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에 대한 중독 실태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 성과
7.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보유량 및 디지털화 현황
8.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9. 그 밖에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9조(지표의 개발·보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그 밖에 국가정보화,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표

**제39조의2(그린인터넷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린인

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1. 그린인터넷인증 신청서의 접수
2. 그린인터넷인증 심사
3. 그린인터넷인증서의 발급
4. 그린인터넷인증마크 이용에 대한 관리

[본조신설 2013.11.20.]

**제40조(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先導) 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 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 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6.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43조(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조정 요청 및 심의)** ① 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 간의 협약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조정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약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약 조정요청서에 합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11.20.]

---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

[인 쇄] 2015년 8월

[발 행] 2015년 8월

[발행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조사 1과)

[주 소]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전 화] (02)2125-9965 [FAX] (02)2125-0924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 화] (02)2278-1990 [FAX] (02)2278-1992

---

ISBN 978-89-6114-427-8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